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정	2016. 12. 22
개정	2017. 03. 17
개정	2020. 08. 24
개정	2020. 11. 12
개정	2021. 06. 12
개정	2021. 11. 13
개정	2022. 06. 24
개정	2023. 06. 22
개정	2025. 07. 04
개정	<u>2026. 06. 10</u>

제 1 장 총칙

제1조(설치근거) (사)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정관 제42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연맹
2. 시·도회원단체 및 지회, 재외한인산악연맹, 전국규모연맹체, 대한산악연맹 교육원 및 그 회원단체 (이하 “연맹 관계단체”라 한다)
3. 연맹의 임원 및 연맹 관계단체의 임직원(직원은 포상 관련조항에만 적용된다)
4. 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
5. 연맹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43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연맹 표창에 관한 사항
4. 대한체육회 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징계 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의 결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6.06.10.>
 - 가.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의 임원
 - 나.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
 - 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7. 산악종목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제17조의 임원 심의 및 재심의 <개정 26.06.10.>
9. 연맹과 연맹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 운영 등)의 조정·중재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11. 주무 정부부처(이하 '주무부처'라 함)장관이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에 요구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6.06.10.>
12.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에 요구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6.06.10.>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연맹 회장이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체육회와 협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계기관 및 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선임하고, 기관별 추천인원은 체육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6.06.10.>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정관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 8 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의 2(경비의 지급) 연맹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 2(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토의내용·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법제 및 포상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연맹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 제3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맹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는 연맹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연맹의 최종 결정이다.

제13조(포상대상) ① 포상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산악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포상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체육회 표창, 연맹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5조(연맹 표창의 구분) ① 연맹의 표창권자는 연맹의 장으로 한다.

② 연맹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③ 연맹 정기표창에는 우수산악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은 매년 정기대의원 총회시에, 대한민국의산악상 표창은 산악인의 날에 시상한다.

④ 정기표창 외에도 연맹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로 표창 및 시상할 수 있다.

⑤ 그 외 국내 산악종목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⑥ 표창 수여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포상은 연맹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체육회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다만,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맹의 장이 체육회에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체육회 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체육회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든 표창은 기본적으로 각 시·도연맹, 재외한인산악연맹, 전국규모연맹체 또는 각종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결정한다.

⑥ 연맹은 연맹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심의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의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의를 심의·의결한다.

1. 전국규모연맹체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

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 ②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체의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따라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 신청서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출 요구한 서류
- ④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 ④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연맹은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의요구)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연맹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심의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가 연맹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조사 및 징계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연맹 산하 전국규모연맹체 및 시·도회원단체는 정관 5조

및 5조의2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 및 시·도회원단체 스포츠 공정위원회(이하 “연맹체위원회”라 한다)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징계 의결의 요구) ① 연맹은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 중에서 징계 사유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록
2.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3. 관련 규정, 지시문서 등의 징계 근거자료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 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 소란 행위,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인권침해, 괴롭힘
9. 선거 관련 비위행위
10. 징계 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② 연맹 정관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맹 임원 및 시·도회원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5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연맹, 시·도회원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별도의 조사위원 또는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연맹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연맹 위원회가, 시·군·구체육회 및 시도회원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시·도 위원회가 관할한다. 해당 시도회원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회원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체육회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시도회원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 1. 연맹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 2.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⑧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회원 시·도체육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 1.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 2.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⑨ 제8항에 따른 징계 처리의 대상이 학교폭력(별표 1 제6호부터 제9호의 위반행위) 가해 학생선수로서 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단체 위원회는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⑩ 징계기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의 신고가 있거나 그 징계사유를 인지한 경우, 즉시 징계혐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고, 이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의 심리상담·조언·치료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6.06.10.>

제25조의 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 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을 그날로 본다.<개정 26.06.10.>

-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년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③ 제1항 제1호 및 별표 1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징계시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신설 26.06.10.>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의 절차 등 절차상의 흠, 징계양정의 부당을 이유로 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6.06.10.>

⑤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법원에서 형사재판 중인 사건으로서 제24조의 우선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여 제1항의 징계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사가 종료되거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징계시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신설 26.06.10.>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연맹체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며, 시·도회원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체육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의 경우 체육회 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③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연맹체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④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연맹의 경우 대한체육회, 시·도회원단체의 경우 시도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⑤ 시·도회원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체육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단, 연맹은 시·도회원단체로 제28조제2항에 준하는 징계 요구를 하여 시·도회원단체가 징계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연맹체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이 되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제27조 (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출전정지

제28조(징계요구) ① 연맹은 징계협약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연맹 관계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제2항의 사람은 인 경우에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맹은 연맹체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단, 시도회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도체육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징계 심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3항, 제7항에서 도 같다)가 징계협약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협약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협약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협약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협약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권익 침해 사안”이라 한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협약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협약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협약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협약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협약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협약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협약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협약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협약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협약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징계 심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징계협약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구술 또는 서면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6.06.10.>

⑤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행정, 그 밖의 정상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채용비리 사건, 제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포상 관련 공적(功績)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 4에 따라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2. 장관 이상의 표창
3. 대한체육회장의 표창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④ 위원회는 성인인 혐의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7호(그 중 폭행 또는 집단폭행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징계기준 중 자격정지나 출전정지의 장기 또는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신설 26.06.10.>

⑤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기준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징계의 감경 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4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징계를 확정할 당시 이미

제4항의 사유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시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연맹체위원회가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연맹은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시·도 회원단체 및 피해자(권익 침해 사안의 경우)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징계근거(제31조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 및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연맹체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연맹체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감면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연맹체 위원회에서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의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25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연맹 또는 연맹 관계단체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

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제35조의2(훈련 및 대회 중 폭력·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회 참여 허용 절차)

①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가 훈련 및 대회 중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피해자로부터 접수받은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 시점부터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훈련 및 대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는 이와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6.06.10.>

② 해당 단체는 신고접수 직후 즉시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6.06.10.>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방 및 해외전지훈련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해당 단체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6.06.10.>

④ 소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훈련 및 대회 참여금지의 계속 유지나 해제와 같은 임시조치에 한한다.<신설 26.06.10.>

⑤ 다만, 대회 48시간 전부터 대회기간까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 금지 여부는 결정된다. 이후 최종 혐의가 인정되어 관련 징계가 내려질 경우, 개인의 경기 결과는 자동으로 실효되고, 메달과 접수, 상금의 몰수 등의 결과 조치가 부과되며, 경기대회 주관단체는 해당 경기대회의 단체

종목에 대해 상기 결과조치보다 더 엄격하게 부과하는 대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6.06.10.>

⑥ 소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훈련 및 대회 참여금지가 유지될 경우,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훈련 및 대회 참여금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절차 중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신설 26.06.10.>

⑦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협이자 및 피해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6.06.10.>

⑧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협이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6.06.10.>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 및 연맹체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제34조제2항에 따라 징계협이자 등이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단,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인 경우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징계의 취소·무효 결정이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1차 처분일로부터 기산하되, 이미 집행된 징계기간을 산입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④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

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2.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협이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협이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

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협의를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협의를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협의를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보고) 제33조에 따라 연맹체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연맹체는 지체없이 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회원단체 및 시·군·구체육회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위원회가 보고한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연맹은 지체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삭제>

제6장 보칙

제40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연맹체위원회는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 해야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0조의2(징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연맹은 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징계대상, 위반행위, 징계양정 등)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 ‘징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연맹은 위원회의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규정 제·개정) ① 연맹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개정해야하며, 연맹체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연맹의 이 규정에 우선하며, 연맹의 이 규정은 연맹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우선한다.

③ 연맹의 이 규정을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따라야 하며, 연맹의 규정과 연맹체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 연맹체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연맹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연맹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연맹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8조 (기능 추가 관련)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제44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① 누구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 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

부 칙(2016. 12. 2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시작 직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구)대한산악연맹의 상별위원회와 선수위원회, 국민

생활체육전국등산연합회 등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

부 칙(2017. 03. 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8.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6. 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경과규정) 이 규정 2016년 12월 22일에 시행된 부칙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는 2016년 12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혐의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3. 0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4호 신설과 관련, 부칙(2022.1.24.) 제2조(부칙 경과규정) 시행에 따른 구제 신청대상은 2018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월 24일 이전에 징계가 확정된 사람 중에 당시 혐의가 제2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부 칙(2025. 07. 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연맹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6. 06. 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제7항은 2026. 6.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 1. 31., 2019. 12. 20., 2020. 7. 29. 2020. 10.23,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 수수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2년 이상 장기간 수요요구약속한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강등, 감봉, 견책</u>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②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⑤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강등, 감봉, 견책</u>

3.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인사권 남용 및 채용 비리 사건, 각종 규정 위반행위, 지도자 입장(현장)지도 의무 위반 등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권한남용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직무태만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4. 승부조작, 편파판정(경기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 등을 한 경우)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제명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⑤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⑥ 협박,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5. 체육관련 입학비리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입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선수, 학부모, 소속학교, 지도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④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제명
	①~④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운동 경기부	①~④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6. 폭력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명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7.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②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⑥ 반복적인 경우 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명

8. 성추행 등 행위(“7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 견책

9. 성희롱 등 행위(“7항”, “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 견책

10. 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학습권 등)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침해 행위가 상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선수 심판 임원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 견책

11.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선수관리담당자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 견책

12.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1)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 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 위 “1)~2)” 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명
	② 지위 또는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이 외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13.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음주운전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명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14. 불법도박

징계 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불법베팅	불법적으로 스포츠 대상 베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제명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참여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 알선, 방조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베팅 외 불법도박	불법도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1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차별 행위로 인해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비위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u>견책</u>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u>견책</u>
<u>인종,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출신,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u>	① <u>상습적인 차별 행위로 인해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u>	<u>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u>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u>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u>
	② <u>차별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u>	<u>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견책</u>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제3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이상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이상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37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p>※ 비고</p> <p>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p> <p>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p>				

[별표 4] 징계의 감경기준(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관련)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정 또는 확정된 징계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따라 감경 가능한 징계
제명	해임
해임	자격정지 (자격정지 3년 이상 7년 이하)
자격정지	자격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출전정지	출전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출전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강등	감봉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7. 29.>

공 적 조 서

(앞 쪽)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연락처(휴대전화)			
주 소			
소 속			
직 위		직 급	
추 천 부 문		공 적 기 간 ^{주 1)}	
주요 공적(개조식으로 작성)			
공적확인 및 추천인			
성 명		연락처(휴대전화)	
소 속		직 위 (직 급)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 0;"> 추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div>			

주1) 공적기간은 추천부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수공기간 기입

(뒤 쪽)

공적 관련 경력 ^{주2)}	
경력기간(연월)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주2) 합산된 경력기간이 앞면의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표 창 대 장

번호	시행일자	종 류	소 속	직위맞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수여자	계인	비고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9. 12. 20.>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당사자이다.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대한체육회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 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성명

인

서 약 서

본인은 (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정 2014. 12. 23
 개정 2015. 12. 23
 개정 2016. 12. 22
 개정 2017. 03. 17
 개정 2020. 08. 24
 개정 2021. 11. 13
 개정 2024. 03. 20
개정 2026. 06.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의 공정한 선발 및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란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2. “국가대표 지도자”란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사)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에서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총 감독,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3. “국가대표 선수”란 체육회 또는 연맹이 국제종합경기대회(이하 “종합대회”라 한다) 또는 국제종목별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 이하 “종목별대회”라 한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경기임원”이란 종합대회 또는 종목별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팀원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말한다.
5. “전담팀”이란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컨디셔닝, 체력, 기술, 심리, 영상분석 및 훈련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의료 면허 소지자와 트레이너로 구분한다.
6. “경기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한 경력으로 연맹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7. “경기 지도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으로 연맹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8. “전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9. “생활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10. “강화훈련”이란 연맹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맹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의 선발 절차) ①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 자격, 선발 일정, 평가 방식, 전형별 평가위원 구성 등 세부사항을 정한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공고를 1개월 이상 실시한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공고에 따라 접수된 국가대표 지도자 후보자를 평가·심의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연맹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전담팀의 선발 자격, 선발 일정, 평가 방식, 전형별 평가위원 구성 등 세부사항을 정한 후, 국가대표 전담팀 선발 공고를 1개월 이상 실시한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공고에 따라 접수된 국가대표 전담팀 후보자를 평가·심의하여 연맹의 장에게 추천한다. 연맹의 장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국가대표 전담팀을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을 외국인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세부 선발 자격 수립, 선발 일정의 사전 공고, 후보자 평가·심의, 체육회 승인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연맹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 고시 등에 따라 연맹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경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정부 부처의 채용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6.10.>

⑤ 연맹은 국가대표로서 요구되는 윤리성을 지닌 지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26.06.10.>

1. 선수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여부
2. 과거 지도 활동 중 인권침해 여부 및 징계처분 이력
3. 선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여 실적 등

제4조의2(회원종목단체 자체 국가대표 운영) 연맹이 종목별 대회 참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06.10.]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

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연맹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④ 해당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총감독 및 감독은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이고 해당종목의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2. 코치는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해당종목의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제9조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정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목의 법인 단체가 발행한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지도경력은 감독은 5년 이상 코치는 2년 이상으로 한다.

4. 삭제 <2026.06.10.>

⑤ 종목별 국가대표 지도자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의 비율이 3년 이상 연속하여 100분의 20 미만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시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정 방안에는 여성 지도자 대상 교육·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지도자 선발 공고에 따라 여성 지원자가 없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여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조제7호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연맹이 인정한 민간체육시설 지도경력 또는 해외 지도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철인3종, 근대5종 등 복합종목의 경우 세부 종목 전문 지도자의 자격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6.06.10.>

⑦ 국가대표 지도자는 종합대회 및 종목별 대회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종목 국제연맹(IF)이 요구하는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6.06.10.>

제5조의2(국가대표 지도자의 계약기간) 국가대표 지도자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목 특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6.10.]

제5조의3(국가대표 지도자의 재임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최초 임용기간 만료 후 종합대회 또는 종목별대회의 주기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용 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지도역량, 올림픽 등 종합대회와 종목별대회에서의 성과, 인성 및 품행, 선수 관리능력, 공정성 및 윤리성 등 국가대표 지도자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③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국가대표 지도자의 재임용에 관한 평가·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추천된 재임용 후보자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재임용을 확정한다.

④ 재임용의 경우에 한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재임용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6.06.10.]

제6조(국가대표 전담팀의 자격) ① ① 의료 면허 소지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② 트레이너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연맹이 인정하는 분야별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갖춘 자로 하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경기임원의 선발 절차) ①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기임원은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 중에서 연맹의 장이 추천하면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경기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 방법은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맹의 장이 선발한다.

③ 제1항 이외의 경기임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선발 절차에 따른

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맹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1.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프로종목의 지도자
 2. 국가대표 선발을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팀으로 선발하는 경우
 3.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정원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특별히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4.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 확정된 이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개선발을 할 수 없는 경우
- ④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제3항 제1호의 경기임원을 선발할 경우 사전에 선발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경기임원을 선발한 때에는 즉시 선발사유를 포함하여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이외의 종합대회의 경기임원 선발은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맹의 장이 결정한 후 체육회에 추천한다.
- ⑦ 종목별대회의 경기임원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연맹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 ① 국가대표 선수는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선발일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연맹의 장은 추천받은 후보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는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정한 개인기록, 선발전 순위 및 각종 대회의 누적 순위 등 종목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③ 연맹의 장은 제6항의 선발을 제외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발일 2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제종목연맹의 대회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 공고 지연에 대한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선발 공고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연맹의 장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연맹의 장은 종합대회의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를 해당 국가대표 선수로 체육회에 추천한다. 단, 종합대회의 출전권이 국가에 배당되어 해당 국가대표를 선발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선발하여 체육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단체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은 객관적인 경기력 지표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다만, 제1항과 달리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로부터 선발사유를 청취하고, 추천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선발할 경우 선발 방법 및 절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⑧ 국가대표 선수 선발 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차 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⑨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부상, 국가대표 훈련 소집 및 국제대회 출전 불응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 없이 국가대표 선발 순위에 따라 차 순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

⑩ 이 규정에서 정한 국가대표 이외에 연령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우 연맹 경기력향상 위원회는 종목별대회의 특성에 따라 선발의 요건, 비율, 일정 및 경기력 지표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대표 선수 자격) ①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종목별 국제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는 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연맹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연맹,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6.00. 00.>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 ① 연맹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연맹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체육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연맹에 등록된 선수

2.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④ 연맹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또는 체육회 보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대해 국가대표 훈련지원 사업 조정, 재정지원 제한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6.00. 00.>

제11조의2(선발 관련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해당 연맹의 임원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의의 심

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심의 대상자가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심의 대상자와 동일한 소속팀인 경우
3.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사회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사회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당 임원 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은 무효로 하며, 이사회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는 해당 임원 또는 위원을 배제하고 이를 즉시 재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6.10.]

제11조의3(임원의 경기력향상위원회 겸직 금지) ① 대한체육회 및 연맹의 임원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특정 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6.10.]

제12조(자료의 보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는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 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는 체육회 및 연맹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대회 및 종목별대회의 국가대표로 확정된 날부터 대회 종료 후 선수단 해단식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14조(국가대표 및 전담팀의 임무)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규정의 숙지와 심판관정에 대한 이의제기

-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 기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② 의료 면허 소지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00.00.>

1. 국가대표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의료 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4.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③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의무, 체력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영상 및 전략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

4. 훈련장비 트레이너는 장비 현황 보고, 운용계획 수립 및 선수별 장비 관리

5.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6.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④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제15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대표의 보호 및 지원) 체육회와 연맹은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적절한 수준의 훈련수당 지원
2.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 마련
3.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제17조(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 ① 연맹은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선발 및 운영규정에 반드시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전담팀의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제·개정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6개월 이내에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유에 대해 체육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대표 훈련의 관리) ‘국가대표 훈련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강화훈련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 ① 이 규정 제10조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9. 6. 2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제10조제10호는 형법 제246조, 제247조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3. 4. 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부 칙(2021.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6.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인 등록 규정

제정	2014. 02. 22
개정	2016. 12. 22
개정	2017. 03. 17
개정	2020. 08. 24
개정	2021. 06. 12
전부개정	2022. 04. 15
개정	2024. 03. 20
개정	2025. 07. 04
개정	<u>2026. 06. 10</u>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선수 및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육성과 산악 종목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를 말한다.
2. “선수”는 대회참가 등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연맹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지도자”는 연맹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심판”은 연맹의 심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선수관리담당자”는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연맹의 선수관리담당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등록”은 연맹의 산악 종목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을 희망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7. “등록변경”은 선수가 소속단체 및 등록지 등의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활동”은 연맹의 산악 종목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소속단체”란 경기인이 활동을 하기 위해 소속된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10. “이적 동의서”는 선수가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변경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1. “운동경기부”는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2. “직장운동경기부”는 직장의 장이 전문선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운동부를 말한다.

13. “스포츠클럽”은 선수를 포함한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4. “체육동호인부”는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15. “관계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경기인 등록의 나이 기준을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이상”이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이하”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규정 제·개정) ① 연맹은 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연맹의 경기인 등록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별 규정이 정한 사항이 경기인의 등록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에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맹에 등록된 경기인과 경기인의 등록·활동에 관련이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

제5조(활동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연맹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연맹의 경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6조(경기인의 지위) ① 경기인은 전국종합체육대회, 산악 종목 대회 등 체육회와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각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경기인은 체육회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프로그램
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부의 활동 지원 사업
3.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
4. 우수선수 육성 등 전문체육 진흥 사업
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체육인 복지 등의 각종 사업
7. 기타 체육회가 제공하는 각종 사업 등

제6조의2(경기인의 교육) ①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경기인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7조(경기인등록시스템) ① 체육회는 경기인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제8조(등록신청) ① 경기인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연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회원단체에 등록 신청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연맹에서 이를 행한다.

1. 해당 시·도회원단체가 없을 경우
2. 심판의 등록

② 경기인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서, 스포츠인권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회원종목단체는 필요 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 중 아래 각 호의 사유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제2항의 서류를 시·도종목단체에 제출하고, 시·도종목단체는 등록 신청자를 확인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1.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3. 아이핀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제출서류 등) 삭제<2022.01.24.>

제10조(등록승인) ① 경기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회원단체는 등록신청자의 제14조 경기인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맹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도회원단체는 신청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거부 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경기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요청 한 것으로 본다.

② 연맹은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자의 경기인 등록을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규모연맹체 등에 통보한다. 단, 경기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맹이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등록기간) 경기인의 등록은 수시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연맹에서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등록으로 한다.

1. 12세이하부 선수가 등록하는 경우
2. 연맹에 최초로 선수 등록을 하는 경우

3. 신설팀 소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4. 군 입대 또는 제대하여 선수 등록하는 경우

제12조(외국인등록) 외국 국적자의 경기인 등록에 관하여는 해당 국제연맹규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연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유효기간)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연맹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다음해 1~2월 중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삭제>
2. 다음 연도에 대한체육회장 및 연맹 회장 선거의 선거인후보자로 추천되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2.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3.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 <신설 2026.06.10.>
 -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개월
 -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3개월
 - 다. 학교에서의 봉사 : 5개월
 - 라.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8개월
 - 마. 사회봉사 : 8개월
 - 바. 출석정지 : 10개월
 - 사. 학급교체 : 10개월
 - 아. 전학 : 12개월
5.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죄를 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4조 제1항 제4호 이외의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8.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6.06.10.>

12.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폭력·성폭력

나. 승부조작

다. 편파판정

라. 횡령·배임

14.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해당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가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른 심판의 제척·회피·기피 사유 및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체육목적 선수와 심판의 동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열람권한) 회원시도체육회의 관련 업무 담당자는 경기인 등록 및 대회참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경기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6조(등록비징수) 연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경기인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2 장 선 수 등 록

제17조(등록 및 등록지) ①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부 등의 소속으로 매년 연맹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동일인이 산악 종목안에 제18조제1항의 등록구분에서 두 개 이상의 부에 등록할 수 없다.

③ 선수는 동일인이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도(이하 “시·도” 라고 한다) 안에서는 여러 종목에 등록할 수 있다.

④ 선수의 등록지는 해당 선수의 소속단체가 소재한 시·도로 한다.

⑤ 대학 운동경기부의 등록지는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1. 개인종목은 대학이 소재한 시·도 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단체종목과 개인단체전 종목은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의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도로 등록하되, 통합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시·도로 하고 연맹은 종목 특성에 따라 등록지 변경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운동경기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등록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등록 구분) ① 회원종목단체는 목적 및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를 둔다. 이때, 15세 이하 선수는 육성목적의 부로 등록하며, 16세 이상 선수는 전문체육목적과 생활체육목적 중 하나의 부로 등록한다.

1. 육성목적

가. 12세이하부

나. 15세이하부

2. 전문체육목적

가. 18세이하부

나. 대학부

다. 일반부

3. 생활체육목적

가. 18세이하부

나. 대학부

다. 일반부

② 제1항 각 호의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맹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③ 대학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등록한다. 단, 생활체육목적으로 등록하는 19세 이상 선수의 경우 대학 재학 중이더라도 본인의 소속단체에 따라 생활체육목적의 일반부로 등록이 가능하다.

④ 일반부는 19세 이상 선수 중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등록한다.

제19조(학제와의 관계) ① 학교 운동경기부와 학교 내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의 등록구분에 따른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등록하고,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의 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등록과 활동상의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정빈곤의 사유로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2. 부상,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유급하여 연맹이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유급한 경우
4. 입학연기자 또는 조기입학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경우
5. 학교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아 유급한 경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결과통보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6.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것이 인정되어 회원종목단체가 구제결정을 하는 경우

②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해당 학교 급의 최종학년도 졸업 또는 자퇴 이후로 한정한다. 단, 취업에 따른 등록을 할 때 졸업예정증명서와 이적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등록 자격 및 범위) ① 대학부의 단체종목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각 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 할 수 없으며, 같은 재단 또는 같은 구내에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② 전문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휴학 중이거나 해외유학중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연맹이 등록에 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각급 국가대표선수활동을 위한 경우
2. 특별히 선수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비인가 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소속의 전문선수는 제18조의 대학부를 제외하고 등록 구

분에 따라 등록하고,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소속 전문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연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문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현역 병(兵, 전환복무 포함)으로 복무하는 경우 대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등록이 불가 하며, 생활체육목적으로도 등록할 수 없다. 단,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된 소속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⑤ 대학원 재학생과 학생신분(제6항 제외)이 아닌 19세 이상 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⑥ 18세이하부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에 재직 중에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부로 등록한다. 단, 대학 재학 중 직장운동경기부와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대학부로 등록변경 할 수 있다.

제21조(등록변경) ① 선수가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해야 하며, 이적동의서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변경을 위한 이적동의는 변경 전 소속단체의장이 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도회원단체장이 동의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지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소속단체 이전 등의 사유로 등록지만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12세이하부 선수의 경우
2. 동일 시·도 안에서 진학·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의 선수의 경우
3. 동일 시·도 내 중·고등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어서 타 시·도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4. 소속 학교가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고 해당 시·도 내 동일 종목의 운동경기부 정원이 부족하여 타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교 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일 경우
5. 스포츠클럽 소속의 선수가 동일 시·도 안에서 스포츠클럽 간에 변경의 경우
6. 15세이하부 또는 18세이하부 선수의 보호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가족구성원 모두가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18세이하부 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8. 18세이하부 또는 대학부의 선수가 졸업 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등의 일반부로 등록을 하는 경우
9. 군 입대 및 제대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10. 소속단체의 해체 및 소속한 직장운동경기부와 계약이 만료된 경우
11. 부상,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
12. 선수였던 사람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최종 선수 등록신청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 등록하는 경우
13.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등록한 선수가 이적하는 경우

제22조(선수 구제) ① 선수가 소속단체장 및 시·도회원단체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소속단체장 및 시·도회원단체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전문선수는 연맹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연맹은 구제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해당 소속단체장 및 시·도회원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이적동의서 발급제시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 및 시·도회원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문선수는 연맹에 이적동의서 없이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맹은 등록변경된 사실을 소속단체장 및 시·도회원단체장과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선수가 이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활동 제한을 받는 경우 연맹의 해당 위원회는 구제결정을 할 수 있다.

제23조(활동 제한 및 예외) ① 연맹은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소속 학교 및 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을 연맹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연맹에 활동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선수 또는 연맹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이 선수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육성목적으로 등록한 선수와 생활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선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프로 및 유사단체 선수에 대한 등록 및 대회 참가에 관하여는 연맹이 정할 수 있다.

④ 연맹은 선수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한다.

⑤ 연맹은 전문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에 대해 생활체육대회의 참가 요강으로 이에 따른 활동제한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서 관리) ①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에 취업하여 선수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이 지원하거나 소속단체장이 해당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직장운동경기부에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에 재추천할 수 있다.

② 연맹은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를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며 취업하고자 하는 선수에게 본인의 서명날인 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취업을 위하여 소속단체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을 경우, 소속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 취업 추천서를 발급한 소속단체장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추천서 사본을 연맹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맹은 이를 관련 직장운동경기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제25조(등록자격) 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지도자의 등록자격은 연맹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②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연맹이 인정하는 자격

제4장 징계조치 등

제26조(제한조치) ① 이 규정 제1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를 위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등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또는 연맹은 제1항의 사람에 대한 징계기간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제27조(위반자 징계요청) 교육청 등 학교관련 단체는 학교운동부의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체육단체 차원의 징계를 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28조(등록해지 및 취소) ① 회원종목단체는 경기인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제명·해임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경기인 등록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② 경기인은 선수 등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등록 후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등록 절차상의 하자, 훈련 및 대회 참가여부 등을 포함한 등록 취소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부 칙(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심판등록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부별로 등록한 전문선수는 제12조 규정 개정의 등록구분에 해당하는 부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개정 전에 해당 부별로 유급 선수 및 연령을 초과하여 등록한 사람은 제12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0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시행일)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에 관한 개정 조항 제30조 제3항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지도자의 등록자격 시행일) 지도자의 등록자격에 관한 개정조항 제30조 제1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0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제14조제1항제6호는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4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2년 8월 11일 이후의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부칙의 개정) ① 2021. 12. 27. 부칙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지도자의 등록자격에 관한 제25조제1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항 시행 이후 가입한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경우 가입한 날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부 칙(2025.07.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6.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각종위원회 운영 규정

가. 제정	1992. 06. 26
나. 개정	1994. 04. 28
다. 개정	1995. 04. 25
라. 개정	1996. 02. 27
마. 개정	1998. 10. 23
바. 개정	2001. 12. 22
사. 개정	2003. 03. 15
아. 개정	2005. 02. 18
자. 개정	2008. 12. 19
차. 개정	2010. 11. 27
카. 개정	2012. 04. 12
타. 개정	2013. 03. 30
파. 개정	2013. 12. 27
하. 개정	2015. 02. 28
거. 개정	2016. 12. 22
너. 개정	2017. 03. 17
더. 개정	2021. 06. 12
러. 개정	2021. 11. 13
머. 개정	2022. 06. 24
버. 개정	2024. 06. 22
서. 개정	2025. 07. 04
<u>어. 개정</u>	<u>2026. 06. 10</u>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 이라 한다) 정관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기획위원회

2. 교육위원회
3. 대외협력위원회
4. 등반기술위원회
5. 산악·스포츠의학위원회
6. 산악스키위원회
7. 클라이밍위원회
8. 안전대책위원회
9. 전문등산위원회
10. 생활체육위원회
11. 청소년위원회
12. 학술문화위원회
13. 환경보전위원회
14. 경기력향상위원회
15. 선수위원회
16. 심판위원회
17. 국제교류위원회

제 2 장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13명 이상 2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각종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명예직 위원(고문, 자문위원 등)은 둘 수 없다.

③ 각종위원회 중 경기력향상위원회, 심판위원회, 선수위원회는 대한체육회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명 등) ① 각종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가급적 시·도연맹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전 일시 장소 안전등을 사전에 사무처에 알리고, 회의 후 회의결과를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3 장 각종 위원회의 기능

제12조(각종위원회의 직무) 각종위원회의 소관별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 가. 연맹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나. 연맹 및 시도연맹 조직확대사업 기획,추진
 - 다. 각 위원회, 산하단체, 산하기관, 시도연맹간의 업무 조정

2. 교육위원회

- 가. 우수산악인 및 전문산악인의 발굴 및 지도 육성
- 나. 전국등산학교 활성화 지원 및 육성
- 다. 연맹 교육원의 행정 지원
- 라. 연맹 교육사업 커리큘럼 개발 및 전반적 관리

3. 대외협력위원회

- 가. 각종 사업 및 행사에 관한 후원 및 협력업체 섭외
- 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제반 산악운동의 홍보
- 다. 각종 유관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친선도모

4. 등반기술위원회

- 가. 등반기술의 개발과 해외등반사조의 보급
- 나. 고산 및 거벽등반 기획 및 추진
- 다. 해외원정대 지원 심사 및 정보지원
- 마. 전문 등반장비의 개발 및 인증
- 바. UIAA 원정(Access) 위원회의 참여
- 사. 국내외 전문등반활동의 활성화 지원

5. 산악·스포츠의학위원회

- 가. 각종 등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의학이론 확립
- 나. 등산에서의 각종 사고예방에 대한 연구 및 계몽
- 다. 등산에서의 각종사고시 제반 응급처치 및 치료에 관한 연구 및 계몽
- 라. 산에서의 일반의학 상식에 관한 자료수집, 정리 및 홍보 (의학, 약학, 한의학 포함)
- 마. 고소등산의학에 관한 국내외의 각종자료 수집
- 바. 고소의학에 관한 연구 및 논문작성, 세미나 개최
- 사. 첨단 등산의학 장비 및 시청각자료 확보 및 홍보
- 아. UIAA 의학(Medical) 위원회의 적극 참여
- 자.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적극 참여

6. 산악스키위원회

- 가. 산악스키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나. 산악스키 각종 자료수집 및 기술도입
- 다. ISMF에 적극 참여
- 라. (사)대한산악스키협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 마. 산악스키위원장은 (사)대한산악스키협회 실무부회장으로 한다.

7. 클라이밍위원회

가. 연맹 관련 주관 각종 클라이밍대회의 관련 조직구성 및 운영

나. 각종 클라이밍대회 경기규정의 제정·개정안 입안 및 상정

다. 각종 클라이밍대회 운영체계의 개발 및 보급

라. 각종 해외 클라이밍대회 자료 수집

마. 각 시도연맹의 각종 클라이밍대회 지도 및 유망선수 발굴

바. 각종 클라이밍대회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 연구

사. 각종 클라이밍대회 관련 국제기구 위원회 적극 참여

아. 각종 대회의 경기시설물 건설에 따른 점검 및 감수

자. 각종 클라이밍대회 루트의 설계 및 설치

카. 루트세터 양성 관리 및 교육 강사파견

타. 등반시설 안전관리사 양성 관리 교육 강사파견

파. 실내 인공암벽장 루트 및 시설 점검 및 감수

하. 빌레이 양성 관리 및 교육강사 파견

8. 안전대책위원회

가. 산악조난에 대비한 긴급연락망 구축 등 제반 안전대책 수립

나. 각종 산악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구급에 관한 홍보 및 세미나 개최

다. UIAA 및 국제산악구조위원회(ICAR) 적극 참여

라. 연맹의 각 사업별 안전대책 수립

마. 안전대책위원장은 연맹의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9. 전문등산위원회

가.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개최

나. 각 시도연맹의 각종등산대회 지도 및 유망선수 발굴

다. 대회 심판 연수 및 우수한 지도자 양성

라. 전국의 산악지도 점검과 답사 및 등산지도 제작의 감수

마. 산악독도 및 오리엔티어링 연구, 개발 및 홍보

바. UIAA 등산(Mountaineering) 위원회의 적극 참여

10. 생활체육위원회

가.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나. 생활체육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

다. 직장체육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라. 직장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바. 전국생활체육 등산대회 개최

11. 청소년위원회

가. 청소년의 산악운동 및 올바른 산악관 정립을 위한 교육

- 나. 청소년을 위한 제반 등반기술의 보급 및 고등학교 산악부의 활성화
- 다. 전국 대학산악인 지도자 강습회 및 세미나 개최
- 라. 청소년의 자연보호와 환경보전 정신교육 지도(시청각교육 포함)
- 마. 세계 청소년 산악캠프 및 합동등반에 적극 참여
- 바. 청소년 산악교육에 관한 제반자료 수집과 연구, 분석
- 사. UIAA 청소년(Youth) 위원회의 적극 참여

12. 학술문화위원회

- 가.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각종 산악운동의 자료수집,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화
- 나. 국내외의 제반 등산활동의 기록, 정리 및 제반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다. 연맹 및 각 시도연맹의 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처리 지도, 교육
- 라. 해외 산악의 각종 자료수집, 소개 및 해외산악단체와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 교류
- 마. 산악연감 및 기타 간행물 발간 또는 시청각 자료 제작, 발행
- 바. 국내외 산악관련 각종 서적, 간행물 및 각종정보 소개 및 수집
- 사. 각종 자료의 출간 및 국내외 산악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 아. UIAA의 Access & Conservation 위원회의 적극 참여

13. 환경보전위원회

- 가. 전국산악의 자연보존 및 생태계 유지에 관한 연구 (북한지역 포함)
- 나. 자연정화운동 및 자연보존 운동의 추진 및 활동 전개
- 다. 산악지대의 각종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 보호에 적극 참여
- 라. 전국의 환경단체와 친밀한 유대강화 및 협조, 공조체제 강화
- 마.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관련 국가기관의 각종행사에 적극 대응 및 참여
- 바. 식목행사 등 산 살리기 행사 개최 및 산불예방 강화운동 전개
- 사. 산악의 환경보전 관련의 각종 교육 및 홍보
- 아. UIAA 산악보호(Mountain Protection) 위원회의 적극 참여

14. 경기력향상위원회

- 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수립
- 나.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대비 강화훈련계획 수립
- 다.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 라. 체육지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마. 국가대표선수 훈련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 바. 국가대표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 사.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 아. 국가대표 훈련 참가임원 및 선수의 상벌에 관한 사항
- 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각종 국제대회 파견선수단 추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15. 선수위원회

가. 별도의 선수위원회 규정에 따름

16. 심판위원회

가. 별도의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름

17. 국제교류위원회

가. 외국산악인 및 외국산악단체와의 친밀한 유대관계 증진

나. 해외산악의 각종자료수집 및 소개

다. 세계화를 향한 연맹 활동사항 소개 및 대외 홍보

라. 국내의 전반적 산악활동의 대외 소개와 한국산악인의 위상증진을 위한 대외 홍보

마. 외국의 유명 산잡지 및 단행본의 수집 및 필요한 내용을 각 위원회에게 전달

바. UIAA 및 UAAA 사무국과의 적극적인 교류 및 참여

(부칙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6. 26.)

이 규정은 1992년 6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 28.)

이 규정은 1994년 4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4. 25.)

이 규정은 1995년 4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27.)

이 규정은 1996년 2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23.)

이 규정은 1998년 10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2.)

이 규정은 2001년 제5차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15)

이 규정은 2003년 3월 15일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18)

이 규정은 2005년 2월 18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30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7.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6.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스포츠클라이밍 경기규정

[개정. 2020. 08. 18](#)

[개정. 2021. 06. 12](#)

[개정. 2022. 06. 24](#)

[개정. 2023. 06. 22](#)

[개정. 2024. 03. 20](#)

[개정. 2025. 07. 04](#)

[개정. 2026. 06. 10](#)

용어사전

1. 본 규정 전반에 걸쳐 다음의 정의를 적용해야 한다.

해야 한다 : 필수요건을 명시한다.

할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 금지규정을 명시한다.

시도연맹은 대한산악연맹에 가맹된 단체를 의미한다.

팀 매니저는 모든 경기에 대해 각 연맹이 임명한 팀 임원을 의미하며, 팀 내 모든 팀 임원과 선수의 수행을 책임진다. 둘 이상의 종목의 경기가 포함될 경우, 종목별로 팀 매니저를 지명할 수 있다.

팀원은 팀 임원과 선수를 의미한다.

팀 임원이란 회원 연맹이 임명한 인원을 의미한다.

팀 매니저, 코치, 트레이너, 의료진 또는 준 의료인

오픈 스포츠 클래스는 [WORLD CLIMBING](#) 파라 스포츠 클래스 분류에 명시된 장애가 없는(또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선수 클래스를 의미한다.

파라 스포츠 클래스는 [WORLD CLIMBING](#)에 의해 일부 적격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선수 클래스를 의미한다.

안내견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개를 말한다.

일정표는 첫 경기가 열리는 12시간 전에 경기 마지막 선수까지의 시간표를 24시간 단위로 정리한 것을 뜻한다.

운동선수, 등반가, 선수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2. 다음 정의는 본 규칙 전체에 걸쳐 적용된다.

허용 가능한 증거란 해당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이의 심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의미한다.

전진 동작(사용)은 다음 홀드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일 또는 연속적인 등반 동작으로,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이 동시에 진행될 때 성립된다.

- a) 선수가 다음 홀드로 손을 뺄는 동작
- b) 신체의 중심이 다음 홀드를 향하여 완전히 이동할 때
 - i) 단일 또는 연속적인 등반 움직임은 선수의 몸이 다음 홀드나 등반표면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질 때 전진하는 움직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ii) 리드 대회에서 다음 순서의 홀드는 일반적으로 점수표에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다음 홀드가 된다. 그러나 다른 선수가 해당 홀드로의 움직임을 완료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경우, 더 높은 번호의 홀드(다음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홀드를 넘어선 홀드)도 다음 순서의 홀드로 인정될 수 있다.

애프터 워크는 사전에 공개된 루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자격이란 해당 규정에 명시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선수, 지도자)을 의미한다.

이의 심판진은 경기규정에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을 할수 있도록 선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등반시간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선수의 시도(들)에 대해 어떤 루트/볼더에서 허용되는 최대 등반 시간
- b) 다음 사이의 경과 시간:
 - i) 리드 및 볼더: 선수의 루트/볼더 시도의 시작부터 시도의 종료까지
 - ii) 스피드: 해당 시도의 출발 신호부터 루트의 성공적인 완등까지의 시간

등반표면은 등반에 사용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 a) 불규칙하거나 질감이 있는 표면으로 닫힌 가장자리를 포함한다.
- b) 사용할 수 있는 등반표면에 고정된 인공홀드, 볼륨 또는 기타 임시 구성물은 제외한다.

구성물이란 등반을 위해 음각 또는 양각의 형태로 단일 또는 복수 홀드로 손 또는 발을 위한 것으로, 최소한 라운드 동안 등반표면에 부착되는 것을 말한다.

인공 홀드는 스크루 피스 또는 볼트를 사용하여 등반표면에 부착되는 제조된 홀드를 의미한다.

경기지역(Competition Area)은 경기장 일부를 스포츠 활동에 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모든 격리구역(Isolation Zone)/준비운동지역(Warm-up Area)
- b) 모든 대기구역(Call Zone)/트렌짓존(Transit Zone)
- c) 다음을 포함한 모든 경기구역(Competition Zone)
 - i) 대회에 사용되는 등반표면
 - ii) 등반벽 바로 앞과 옆 지역
 - iii) 비디오 녹화 또는 재생에 필요한 추가 영역과 같이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 수행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다른 영역

FOP(Field Of Play):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기벽과 바로앞(무대)

대기구역(Call Zone)은 선수가 시도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해야만 하는 지정된 영역을 의미한다.

준비운동 지역은 선수의 준비운동을 위해 설계되고 설치된 경기지역의 한 부분이다.

트렌짓존은 선수가 볼더/루트에 대한 시도를 준비(또는 시도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경기지역 내의 특정 영역을 의미한다.

격리 구역이란 다음의 사람만 입장 가능한 (통제/제한되는) 준비운동 지역을 말한다.

- a) 관련 라운드에 출전자격이 있는 선수
- b) (특별히) 승인된 팀 임원

격리 상태는 선수가 주어진 경기 라운드에서 관련된 루트/볼더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한적인 정보란 다음과 같다.

- a) 관련 부문의 격리구역이 닫히기 전에 경기구역 외부에서 관찰하여 수집한 정보
- b) 관련 루트/볼더에 대한 단체 관찰시간 동안에 지정된 영역에서 수집한 정보이며, 해당 단체 관찰시간 동안 참가하는 선수들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아직 시도하지 않은 선수들 사이에서 공유 또는 시도를 완료한 선수들 사이에서의 공유) 정보가 포함된다.
- c) 선수가 관련 루트/볼더를 시도하는 동안에 수집한 정보
- d) 격리상태에서는 어떠한 전자 통신장비 및 모든 촬영장비를 소지 할 수 없다.

통제는 판정과 득점을 목적으로 선수가 구성물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몸의 자세(위치)를 취하거나 바꾼 경우를 의미한다.

- a) 등반표면 / 홀드를 잡고

b) 중심을 이동하는 경우

안정적인 동작은 선수가 홀드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단일 또는 연속적인 등반 동작으로, 자세를 조정하거나, 다시 잡거나, 무게를 이동시켜 신체의 균형과 안정성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벤트 시드는 경기 전 출전 순서를 정하기 위한 예비 순위이다.

결과 없음(IRM)은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어 출전하지 못한 경우, 실격 또는 행위 실격으로 점수의 결과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표시가 있는 선수는 해당 라운드/단계의 관련 루트, 볼더 및 레이스의 결과가 없다.

출발 없음(DNS)의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 결과에 “출발 없음 ‘으로 기록된다. 어떤 라운드 또는 단계에서 출발 없음(DNS)으로 기록된 선수는 같은 대회에 연속하는 다음 라운드 또는 단계에 출전할 수 없다.

- a) 선수가 대회의 어떤 라운드 또는 단계에서 특정한 볼더, 루트 또는 레이스의 시도를 실패한 것이다.
- b) 대회의 어떤 라운드 또는 단계에서 선수들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
 - i) 대회에서 격리 규정이 적용되는 라운드에서 그 라운드의 출전순서표에 표기된 시간까지 격리구역에 입실하지 않았거나, 입실 확인이 안 된 경우
 - ii) 라운드 또는 단계의 출전을 위해 대기 구역에서 선수 호명 시 응답이 없는 경우
 - iii) 본 규정 4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출발 없음(DNS), 기록 없음(IRM)이 기록된 경우
 - iv) 대산련/대한체육회 보건 정책 및 의료 지침과 관련된 통지를 받았을 경우

실격(DSQ)은 대회에서의 실격을 의미한다.

행위 실격(DQB) 행위에 의해 실격됨 또는 세계 반도핑 코드의 위반 또는 KAF, IOC가 적용하는 어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도 대회에서 실격된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는다.

- a) 심각한 비스포츠적인 행위 또는 심각한 소란
- b) 타인에 대한 욕설, 위협, 또는 폭력적인 행위

부적절한 도움(Illegal Aid)은 다음 중 하나를 통제하거나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 a) 손으로
 - i) 등반표면 또는 구성물의 “T-너트“
- b) 신체 어느 부분이라도
 - i) 연속적인 검은색 테이프로 그어진 경계선 바깥으로 분류된 등반표면의 모든 부분
 - ii) 등반표면에 부착된 광고 또는 정보 현수막
 - iii) 등반표면의 열린 가장자리
 - iv) 등반표면에 고정된 볼트 행거
 - v) 모든 확보 지점 또는 등반로프

정당한 위치는 리드 경기에서 선수의 시도 중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 a) 불법적인 도움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b) 각각의 확보 지점에 클립을 순차적으로 하고
- c) 아직 다음 확보 지점에 클립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선수가 루트세터장이 지정한 안전 홀드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거나, 넘어서지 않은 경우

최종 안전 위치(LAST SAFE POSITION)는 선수가 통제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이상의 등반 동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치는 아래와 같다.

- a) 루트세터장이 지정한 안전 홀드를 컨트롤하고 있지만 관련 퀵드로우를 클립하지 않은 경우
- b) 심판장 또는 종목 심판장에 의해 추가적인 전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위치

확보지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집합체를 의미한다.

- a) 등반표면의 하중 지지 구조물에 고정된 볼트에 연결되는 퀵링크 커넥터
- b) 선수가 등반할 때 로프를 클립할 수 있는 카라비너로 횡 방향의 하중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 c) a)와 b) 사이의 길이는 루트세터장이 결정한다. 기계로 연속적으로 박음질 된 적절한 길이의 단일 슬링으로 연결해야 한다.

시도허용 시간(Attempt Period)은 선수가 루트나 볼더에서 시도를 위해 허용된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기/트렌짓존 또는 FOP(Field Of Play)에서 선수가 시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시도를 위해 허용된 시간이 포함된다.

등반허용시간(Climbing Period)은 선수가 루트나 볼더를 시도할 때 허용되는 최대 시간을 의미한다.

준비시간(Preparation Period)은 선수가 루트/볼더에서 출발하기 전에 최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Not Early Than (NET) 시간은 일정이나 이벤트 중 가장 빠른 시간을 의미한다.

예비 결과란 대회에서 어떤 라운드 혹은 루트나 대회의 공식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게시되는 비공식 결과이다.

공식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대회 또는 라운드가 마무리되고 적합한 대회 임원이 서명하고 ” 공식 “이라고 표기된 결과이다.

유효 결과 표시(Valid Results Mark) 또는 VRM은 채점 결과를 의미한다.

출전순서표는 라운드의 시간 정보 및 참가할 자격이 있는 모든 선수를 표기한 표이다. 각 출전순서 표에는 다음이 표기된다.

- a) 관련 부문과 라운드

- b) 출전 순서
- c) 각 선수의 이름과 소속 시도/팀
- d) 다음의 시간을 표기한다.
 - i) 격리구역 또는/그리고 준비운동 지역의 개방과 폐쇄 시간
 - ii) 관찰과 시범등반 시작 시간
 - iii) 라운드의 시작 시간

루트맵은 등반 루트의 세부 사항을 담은 사진이나 그림으로 각 손 홀드에 대한 점숫값을 표시한다.

온사이트는 루트나 볼더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경기를 치르는 방식을 의미한다.

- a) 라운드 시작 전에 루트 관찰 시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참가자는 루트/볼더를 관찰하고 출발 홀드를 만질 수 있지만, 지면을 떠나거나 루트/볼더에서 동작을 연습해서는 안 된다.
 - i) 리드 루트에서: 지면에서 닿을 수 있는 홀드
 - ii) 볼더에서: 표시된 시작 홀드만

플래시는 사전에 공개된 정보로 사전 연습이나 시도 없이 경기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a) 라운드 시작 전에 루트/볼더의 시범(동영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b) 팀 관계자는 시도 전/후, 시도 중인 참가자에게 루트/볼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반응시간은 선수가 출발 패드를 떠난 시간과 출발신호의 시작 시각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며, 최소한 1/100s를 측정한다.

안전홀드는 관련 퀵드로우를 클립하지 않고 해당 홀드를 지나가는 경우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루트에 지정된 홀드를 의미한다. 안전 홀드와 그에 관련된 퀵드로우는 루트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출발(시작)신호란 출발 시간의 시작을 나타내기 위해 자동 타이밍 시스템에 의해 방송되는 고유한 신호음을 의미한다.

경기 시작은 라운드에 참여하는 첫 번째 참가자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준비 또는 관찰, 시도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기술적 사고는 선수에게 불리한 결과나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함

- a) 부서지거나 이완된 홀드,
- b) 부적절하게 배치된 퀵드로우 또는 카라비너,
- c) 비정상적으로 당겨진 로프나, 선수를 돕거나 방해하는 확보자의 행동,
- d) 타이밍 시스템의 고장(스피드 경기에서만 발생) 또는
- e) 다른 루트나 볼더를 경기중인 선수에 의한 비정상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

3. 다음 시작 순서와 관련된 용어는 본 규칙 전체에 걸쳐 적용된다.

오름차순 출전 순서는 성적이 좋은 선수가 먼저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성적을 가진 선수끼리의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된다.

내림차순 출전 순서는 성적이 좋은 선수가 뒤에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성적을 가진 선수끼리의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된다.

토너먼트 표는 4, 8 또는 16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패자 탈락 방식의 토너먼트를 의미한다. 토너먼트 표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모든 다른 요소들이 동일한 경우,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라운드의 마지막 열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두 선수가 같은 성적일 경우, 토너먼트 표의 첫 번째 단계에서의 위치는 무작위로 결정된다.

무작위 순서(RANDOM ORDER)는 각 선수의 출발 순서가 순위나 성적과 무관하며,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출전 인원 배분은 출전 선수의 절반을 나누어서 두 루트에 고르게 배분하여 출전함을 의미한다.
출전 선수가 홀수일 때 반올림한 참가자 수로 나누어진다.
(예 : 참가자가 23명일 경우 B 루트의 첫 출전자는 12번 선수이다.)

4. 다음 순위 및 결과와 관련된 용어는 본 규칙 전체에 걸쳐 적용된다.

출전그룹은 대회 한 라운드에서 같은 루트 또는 같은 볼더에서 경기하는 선수를 의미한다.
순위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결과를 의미한다.

서로 비교하여 높거나 보다 낮거나 똑같거나를 표준 순위산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출전그룹이 여러 개일 경우의 해당 라운드의 선수 순위:

- a) 각 그룹의 순위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두 그룹 간의 순위가 동일한 선수는 동점으로 간주한다.
- b) 출전그룹이 여러 개일 경우 다음 라운드에서 카운트백을 적용할 수 없다.

순위는 다른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한 표준 대회 순위 방법을 사용하여 이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된 선수들의 순위를 의미한다.

5. 다음 용어는 본 규칙 전체에 걸쳐 대회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다.

공식 대회(대산련 공식 대회)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하나 이상의 종목이 포함된 KAF가 승인하고 이 규정에 통제받는 대회를 포함한다.
- b) 대한산악연맹이 발표하는 연중 대회 목록에 등재된 대회이다.

부문(Category)에는 하나의 특정 스포츠 클래스, 종목, 성별 및 나이에 따른 선수그룹을 의미한다.

“U17 “ [2026](#)년도 기준 [2010년](#), [2011년](#)생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

“U19 “ 2026년도 기준 2008년, 2009년생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

” U21 “ 2026년도 기준 2006년, 2007년생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

*U17은 17세 이하의 의미로 사용한다.

성인대회의 출전 가능 나이는 2026년도 기준 2009년생을 포함, 그 이전 출생자이다.

라운드(ROUND)는 참가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기 위한 단계이다.

예: 예선, 준결승, 결승 라운드

스테이지(Stage)는 라운드의 하위 구분이다. 예를 들어, 볼더&리드 경기의 각 라운드에는 리드와 볼더 스테이지가 포함되며, 스피드 경기의 결승 라운드는 최소한 결승 및 준결승 스테이지를 포함한다.

경주는 일반적으로 여러 경쟁자가 참여하는 라운드 내의 경기 단위이다.

(예: 스피드 경기에서 선수가 각자의 루트를 오르는 것)

시도는 단일 루트/볼더에서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는 행위이다.

제트 클립(Z-Clip)은 등반 로프로 두 개의 확보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지 않은 경우이다.

단일 로프는 EN-892 표준을 충족하는 등반용 **로프**를 말한다.

자동 확보 장비란 EN-15151-1 표준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수동 확보 장비란 EN-15151-2 표준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장갑은 클라이밍을 목적으로 수작업 또는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선수가 손에 부착하는 테이프는 장갑으로 보지 않는다.

무릎 보호대는 고무 또는 유사한 재료로 무릎을 덮기 위해 수작업 또는 제조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등반 중에 마찰을 증가시키거나 니바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제조업체 식별은 제조업체의 이름, 명칭, 상표, 로고의 일반적인 표시 또는 제조업체의 기타 고유한 표시를 의미한다.

※ 바코드, QR 코드, URL, 소셜 미디어 계정 및 해시태그와 같은 암호화되거나 인코딩된 요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품 기술 식별이란 의류나 기술 장비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이나 원단 기술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식별 마크(제조업체의 표시 또는 그 요소 제외)를 의미한다.

스폰서 식별이란 상품의 제조업체가 아닌 상업 스폰서의 이름, 명칭, 상표, 로고 또는 기타 고유한 기호를 의미한다.

이의 신청 수수료는 본 규정의 준수 및 해석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대한산악연맹이 공지한 금액을 의미한다.

2026년 이의신청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공지함.

2. (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위원회

- 1.1 (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관련 위원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하 대산련 /KAF)의 정관 ‘제8장 41조’에 의거 설치된 대산련의 산하 조직이며, 대산련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각종 국내외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한 관리, 심의 및 운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클라이밍/ 경기력/ 선수/ 심판위원회)
- 1.2 클라이밍위원회는 대한산악연맹으로부터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대회의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위임받은 조직이다.
- 1.3 국내/국제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대회 운영에 관하여 클라이밍위원회의 중요한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B) 대회를 조직 운영하기 위해서 KFA로부터의 지원을 받음
 - C) WORLD CLIMBING & UIAA와 대한산악연맹의 규정과 규칙에 부합되는 대회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
- 1.4 KAF가 승인하는 모든 경기는 해당 대회를 관장하는 규칙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조직, 수행 및 집행된다.
 - A) 대회에 관한 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회에서 얻은 수집물 (사진, 영상, 기타 자료)의 사용 권한은 대산련에 있다. ★
(참조: 대산련 홍보 및 마케팅 규정)
- 1.5 KAF의 조직 구조는 규정 및 정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수행업무

- 1.6 클라이밍 경기의 조직과 관련하여 KAF (클라이밍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KAF가 승인한 대회를 조직/운영하기 위한 모든 신청서 접수
 - B) 승인된 대회와 관련된 모든 질문의 처리
 - C) KAF가 승인한 대회 관련 정보를 모두 발급
 - D) 특히 각 대회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응용 양식을 시도연맹에 발급한다. 모든 선수 및 관련 팀 임원은 지정된 마감 시간 내에 시도연맹에 등록되어야 한다.

- E) KAF는 규칙, 규정 및 기타 고지를 발행한다. 개정안은 이 문서들에 게시될 수 있으며, 원본 문서들과 관련하여 그 문서가 우선되어야 한다. 각 개정은 발효 일자를 포함한다.
- F) 모든 대회 결과, 코리안 순위 및 종합 순위, 및 기타 공식 정보의 공식 간행물 발행
- G) KAF가 승인한 대회에 대회 임원 파견(심판 제외)

대회

1.7 KAF 또는 KFA에서 특별히 인정한 단체만 KFA가 승인한 대회를 조직/운영할 자격이 있다.

1.8 KAF 회원만이 해당 대회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1.9 KAF가 승인하는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다음과 같다.

- A)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 B) 전국 선수권 대회
- C) 청소년 선수권 및 각종 지역대회

D) 대산련이 주관 주최하는 대회는 반드시 시설 안전검점을 받아야 한다.

1) 리드, 볼더 경기장은 7년주기로 클라이밍위원회 또는 전문시공업체의 안전검점을 받아야 한다.(2027년부터 적용)

2) 스피드경기장은 4년주기의 스피드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KAF 대회 임원

1.10 KAF는 승인한 각 대회에 공식적으로 아래의 임원을 임명한다.

A)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장은 대회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모든 임원 회의를 주관한다. 이 권한은 미디어 및 주최자가 지명한 모든 사람의 활동을 포함한다. 긴급조치(특별한 사항)로 대회 전체를 취소 할수있는 유일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B) 기술 감독관 ★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KAF와 관련된 조직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선수 및 기타 사람의 등록 채점과 결과의 처리 의료, 보도 그

리고 기타 시설물)가 KAF 규정을 준수하게 할 권한이 있다. 기술 감독관은 이의 심판진 구성원이며, 대회 조직위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으며, 대회 심판진 회의에 자문 자격으로 참석한다. 대회 임원, 각 시도 임원, 선수를 대상으로 기술 회의를 주관한다. 기술 감독관은 긴급 조치의 적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예: 경기 형식의 조정) 이러한 조치들은 KAF가 별도로 명기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 감독관이 임명되지 않은 대회 또는 기술 감독관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심판장이 기술 감독관의 직무를 대신한다.

C) 심판장

심판장은 경기지역 (즉 선수 및 그 외의 인원이 격리구역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등반 벽 전방의 경기구역을 떠나 경기장의 공공 지역으로 돌아가는 지점까지) 내에서 대회 판정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판정은 일반적으로 판정 역할을 하지 않지만,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다른 심판위원에게 배정된 심판 업무를 할 수 있다. 심판장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KAF 대회규칙의 적용에 대한 모든 심판위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심판장은 기술 감독관과 함께 이의 심의 심판진의 구성원이다. 심판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종목심판장이 심판장 업무를 대신한다.

D) 종목심판장, 루트 심판

종목심판장은 대한산악연맹이 선임한 심판장이 하며, 심판장이 판정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종목심판장은 출전 순서, 성적표, 이의 신청, 경기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공지할 책임이 있다. 심판장이 이의 신청과 관련이 있을 경우, 이의 심의 심판 업무를 할 수 있다. 종목심판장의 주된 역할은 루트나 볼더에서의 판정이다. 1급 이상의 심판 자격이 있어야 한다. 종목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심판장은 루트 심판에게 업무를 할당할 수 있다. 루트 심판은 루트나 볼더의 판정이 주 업무이다. 2급 이상의 심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승인한 대회 규정을 숙지하고 종목심판장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종목심판장은 이의 신청 심의위원이 될 수 있다. 심판 자격 과정에 실습 중인 심판 연수생은 보조 루트 심판으로 업무 할 수 있다.

E) 루트세터장

루트세터장은 각 루트 또는 볼더의 설계를 포함하여 홀드, 확보 지점 및 기타 장비의 설치 등 루트의 설정 및 유지, 보수의 모든 문제를 계획, 조정하기 위해 지정된 루트 세팅 팀과 상의한다. KAF 대회 규정에 따라 루트 및 볼더의 수리 및 청소, 디자인과 설치, 준비운동 지역 시설의 유지 및 관리 한다. 루트세터장은 각 루트 또는 볼더의 기술 표준 및 안전성을 점검하고, 경기지역 내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해 심판장에게 조언하고, 루트 개념도의 작성, 심판위원에게 비디오카메라의 위치를 조언한다. 루트세터장은 대회가 끝난 후 KAF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루트세터장의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루트세터가 직

무를 대신한다.

F) 루트세터

루트세터장을 보좌하여 자격을 보유한 루트세터가 대회에 모든 루트 세팅 업무를 맡는다. 루트세터는 KAF가 승인한 대회를 관장하는 기술 규정과 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3급 루트세터가 보조 루트 세터로 업무를 할 수 있다.

2. 시도연맹

소개

2.1 KAF는 시도연맹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도연맹의 자율권을 존중한다.

시도연맹의 책임

2.2 KAF가 승인한 대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조직위원, 그리고 시도연맹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 A) 대회의 증진 개발, 관리 및 사무는 KAF의 관리하에 있음을 인정한다.
- B) KAF의 승인 없이 KAF의 계약과 충돌 할 수 있는 조직(예 : TV, 대회 스폰서 등과의 재정적 또는 기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C) 최선의 이익과 충돌 할 수 있는 결정과 관련하여 항상 KAF의 조언과 합의를 구한다.

2.3 시도연맹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지역 내에서 스포츠를 관리, 홍보 및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올림픽 헌장, IOC 의료법 및 KAF 규정 및 국제/국내 클라이밍 경기 스포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 B) 규칙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선수와 임원이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장려해야 한다.
- C) 선수와 임원이 마약 또는 기타 금지 물질을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지속적,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요청이 있을 때 경기 기간 외 검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규칙 및 기준을 준수한다.
- D) 대회의 증진 개발, 관리 및 사무는 KFA의 관리하에 있음을 인정한다.
- E) 선수들과 팀 임원들의 이익을 위해 규정과 규칙을 조작하는 어떤 부정에도 엄격히 대항한다.
- F) 대회 중 그리고 대회와 관련 없는 어떤 활동 중에도 선수들과 임원들이 다른 모든 선수, 임원들 그리고 스포츠 행위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한다.

2.4 모든 선수와 팀 임원은 경기와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참가 팀 자격

2.5 KAF의 각 시도연맹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남자와 여자의 선수로 구성된 팀을 구성할 자격이 있다.

- A) 선수의 선발과 등록을 관리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 B) KAF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준수한다.
- C) KAF 징계 절차에 따른 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이나 후속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 D)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마쳐야 한다.

2.6 시도연맹은 허용된 쿼터 내에서 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 (예:전국체전)

팀 등록

2.7 각 시도연맹은 본 규정 3장에 명시된 팀원 / 팀 임원의 등록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2.8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임원에 대한 등록비는 등록 인원 에 비례하여 등록 마감 일까지 각 시도 연맹에서 납부해야 한다.

- A) 등록 마감 이후 참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지만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2.9 대회에 선수단/임원을 등록할 때, 시도연맹은 모든 선수단/임원의 연락처 및 정보(숙소 세부 사항, 예정된 도착 날짜/시간)를 제공해야 한다.

선수등록

2.10 각 시도연맹은 KAF가 승인한 대회에 등록된 각 선수 및 팀 임원은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 선수 및 지도자등록을 필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2.11 선수등록 갱신을 위해 선수는 시도연맹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A) 선수 등록부 또는 선수등록 신청서
- B) 선수등록 수수료

2.12 선수등록은 1년 동안 유효하다. 각 연맹은 선수 및 팀 임원을 대신하여 공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KAF에 제출함으로써 매년 선수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2.13 미적용

2.14 팀원

A) 각 시도연맹의 회원이어야 팀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B) 미적용

C) 삭제

2.15 팀 임원으로 활동하는 선수는 징계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징계는 누적된다.

수수료

2.16 모든 수수료 (대회 참가비, 이의 신청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시도연맹이 책임진다.

2.17 시도연맹은 지정된 날짜 이전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19항에 규정된 대로 처리된다.

2.18 이의 신청 수수료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심판장 또는 기술 감독관에게 직접 지불해야만 한다. 이의 신청은 수수료가 수령되기 전까지 접수되지 않는다.

A) 이의신청 수수료는 현금 또는 지정된 대한산악연맹 계좌로도 가능하다.

B) 현금으로 지불한 이의신청 수수료는 대회종료 후 대한산악연맹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C) 시도연맹 주최 대회의 경우 A), B)항의 대상자는 대회 주최 시도연맹이 된다.

2.19 각종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선수 참가 자격, 이의 신청 등의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

2.20 모든 수수료의 규모는 KAF에 의해 매년 결정되고 발표된다.

3. 일반규정

종목

3.1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열린다.

A) 리드: 선수는 등반한 거리(높이)로 순위가 결정된다.

B) 볼더: 선수는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C) 스피드: 선수는 공식 루트를 오르는 데 소요된 시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안전

3.2 대회 조직위는 경기지역 내 그리고 공공 구역, 경기 진행의 모든 행위와 관련된 지역에서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3.3 선수들이 경기 중에 착용, 사용하는 모든 의류와 장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선수 자신에게 있다.

3.4 심판장은 루트세터장과 상의하여 경기를 시작 또는 중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외 경기지역의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심판장은 어떤 임원 또는 어느 사람이라도 안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그 임무를 해지 또는 경기지역으로부터 퇴장시켜야 한다.

장비

3.5 경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기술 장비는 관련 EN/KS표준 및 국제/국내 규정을 (“적용되는 표준”) 충족해야만 한다. KAF 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KAF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심판장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적용되는 표준은 다음과 같다.

장비	적용 기준
자동 확보 장비(스피드)	EN341:2011 Class A
확보 장비(자동)	EN15151-1 (Draft)
확보 장비(수동)	EN15151-2 (Draft)
클라이밍 안전벨트	EN12277 (Type C)
클라이밍 홀드	EN12572-3
클라이밍 로프	EN892
등반 구조물	EN12572-1, EN12572-2
카라비너 (나사식 수동 잠금비너)	EN12275 (Type H)
카라비너 (자동 잠금비너)	EN12275 (Type H)
퀵드로우/ 테이프 슬링	EN566
퀵드로우/ 연결기 (카라비너)	EN12275(Type B, Type D)
퀵드로우/ 연결기 (퀵링크)	EN12275 (Type Q)

* [WORLD CLIMBING](#) 권고 사항 *

의료진

3.6 심판장은 자격 있는 의료인 또는 준 의료인이 경기지역 내에서 업무 중인 팀원¹⁾의 사고, 또는 부상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대기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인 또는 준 의료인은 대회 계획상 격리구역/준비운동 지역이 열리는 시점부터 그 대회 어떤 라운드의 마지막 선수의 시도가 끝날 때까지 대회장에 있어야 한다.

3.7 경기중 의료와 보전에 관한 일체는 의료진의 책임이다. 의료진은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선수가 경기를 계속하거나, 중단시켜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항상 최우선 순위는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의료진이 내린 결정이 경기의 잠재적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대산련은 경기에 파견된 의료진을 가급적 전문 의료인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A) 심판장은 선수가 부상 혹은 질병과 같이 어떤 이유로든지 경기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 1) 심판장은 의료인에게 다음의 신체검사 진행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a) 하체: 선수는 각 다리로 연속 5번 외발뛰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b) 상체: 선수는 양쪽 팔로 연속 5번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c) 출혈: 선수의 출혈을 멈추게 하고 홀드에 피가 묻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처에 붙인 흰색 반창고에 혈액의 어떤 흔적도 없어야만 한다.
- 2)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선수가 경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인과 상의하여 선수의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후에 선수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선수는 관련된 신체검

1) 팀원 : 팀의 선수, 코치, 트레이너, 임원

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심판장은 선수가 경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료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선수의 경기를 허락해야 한다.

(주)의료진 부재 시 심판장이 신체검사를 대신 할 수 있다.★

3.8 어떤 경우에도 선수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사다리꼴 볼더의 완등 지점에서 지면으로의 하강

경기지역

3.9 경기지역은 일반에게 개방된 모든 지역으로부터 경계가 표시되어야 한다.

3.10 경기장의 크기는 대회에 필요한 등반표면의 수, 구성 및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장의 경계는 충돌 영역 및 등반표면의 예상 지면 영역을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참가자의 추락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참가자 및 대회임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각 루트/볼더는 등반자 또는 제3자의 부상 위험을 줄이고, 다른 등반자나 루트/볼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충돌 위험이 있는 동작이 없어야 한다.

B) 각 루트/볼더 주변의 충돌 영역은 장애물/물체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루트세터장은 심판장과 협의하여 안전 매트에 맞춰 볼더의 수와 디자인을 조정할 수 있다.

3.11 심판장이 장비를 승인하지 않는 한, 팀원은 경기지역에 있는 동안 어떤 전자통신장비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경기지역의 출입(접근)

3.12 아래에 열거된 사람만이 경기지역에 입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A) KAF 경기 임원

B) 대회 조직위 임원

C) 현재 라운드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선수

D) 권한을 부여받은 공인된 팀 임원 (격리구역/준비운동 지역에 한함)

E) 그 외 사람은 심판장에게 특별히 승인받아야 한다. 그들이 경기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경기지역의 안전 및 보안 유지와 선수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식 안내자의 동행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3.13 동물은 경기지역을 출입할 수 없다. 단, 심판장이 승인하면 출입할 수 있다.

의류와 장비

3.14 선수가 사용하는 기술 장비는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A) 선수는 다음을 착용해야 한다.

- 1) 시도 중에는 압박화와 안전벨트(관련된 경우)
- 2) B1 스포츠 클래스에서 경기 중에는, 대회 주최자가 제공한 눈가리개 또는 대회 주최자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 장비
- 3) 선수는 루트관찰, 시상식에는 팀복 또는 경기복을 착용해야 하며 오픈된 신발을(슬리퍼, 샌들) 착용 할 수 없다.

B) 다음을 사용할 수 있다.

- 1) 초크백과 초크(가루 또는 액체)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다른 성분은 사용할 수 없다. (예: 송진)
- 2) 신축성 있는 압박 붕대(팔/다리)
- 3) 부상 예방을 위해 필요한 키네시오 또는 유사한 테이프
- 4) 등반 헬멧

C) 선수는 본 규정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반 중 다음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 1) 오디오 장비(시각 장애가 있는 파라 스포츠 클래스의 선수는 예외)
- 2) 장갑 또는 무릎 보호대(파라 스포츠 클래스의 선수는 예외)

D) 개인 소지품을 대기/트랜짓 존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FOP에 반입할 수 없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 가방/랙박스 또는 개인 소지품
- 2) 심판장은 배터리 구동 팬 또는 기타 장비 등 다른 선수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품목의 사용/소지를 제한 할 수 있다.

3.15 대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공식 출전 번호표는 선수의 상의 뒷면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한다. 공식 출전 번호표의 크기는 대회 조직위 핸드북에 명시된 크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회 조직위는 선수들의 바지(하의) 또는 다리에 붙이기 위한 추가 공식 출전 번호표를 제공할 수 있다.

팀복(단체복)

3.16 선수와 팀 임원은 공식적인 개폐회식과 회의(인터뷰, KAF 혹은 대회 조직위가 기획한 기자회견을 포함)에 참석할 때 팀의 대표로서 소매의 윗부분에 다음이 포함된 팀복을 입어야 한다.

※ 전국체전에서는 반드시 착용하며 위반시 경고 카드가 발행된다.

- A) 시도연맹의 명칭
- B) 시도연맹의 로고 (예, 대산련 로고)
- C) A) B) 중 반드시 1개 이상은 표기되어야 한다.

3.17 팀의 대표로서 선수는 등반할 때 다음이 포함된 경기복을 입는다.

- A) 디자인/색상을 유사하게 하여 구별되는 팀복 상의(길거나 짧은 소매일 수 있음)가 있어야 한다. 상의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도연맹의 로고
 - 2) 상의의 뒷면 혹은 옆면 등에 시도연맹의 명칭
 - 3) 1) 2) 중 반드시 1개 이상은 표기되어야 하며 최소 크기는 50cm² 이상이 되어야 한다.
- B) 남자와 여자 선수의 팀복은 디자인은 다를 수 있으나 색상이 같아야 한다.

광고

3.18 선수의 모든 장비와 의류는 다음의 광고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광고 문구에는 주류, 담배 또는 그와 유사한 유해 상품, 게임, 도박과 관련된 광고는 할 수 없다.

- A) 헬멧: 제조사가 제작 시 부착한 제조사의 명칭과 로고만 가능
- B) 상의: 스폰서 라벨(상표) - 합계 300cm²를 초과할 수 없다.
 하의: 스폰서 라벨(상표) - 합계 200cm²를 초과할 수 없다.
 제조사의 문양 혹은 상징적인 로고는(이름이나 문자는 포함되지 않음) 폭이 10cm를 초과하지 않는 줄무늬 형태의 장식용 “디자인 마크”로 한번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디자인 마크는 다음의 위치 중 하나에 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이 의복 외형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되거나 지나치게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1) 소매의 밑 부분을 가로지르는 곳(소매의 끝부분)
 - 2) 소매의 바깥쪽 이음새
 - 3) 의류의 이음새 바깥쪽 아래
- C) 초크백, 하네스: 제조사가 제작시 부착한 제조사의 명칭과 로고만 가능
- D) 신발과 양말: 제조사가 제작시 부착한 제조사의 명칭과 로고만 가능
- E) 기타 액세서리: 경기지역에 반입되는 기타 액세서리는 제조업체의 명칭, 제품 기술 식별 또는 스폰서 및 광고를 포함할 수 있으며, 모든 품목의 최대 총 면적은 100cm² 이다. 수건은

브랜드 표시가 없어야 한다.

경기 벽의 유지 보수

3.19 루트세터장은 심판의 지시에 따라 그 대회와 각 루트 전체를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유지 및 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유지 보수팀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전 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3.20 심판의 지시하에 루트세터장은 모든 보수작업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보수가 끝나면, 루트세터장은 보수의 결과가 다음 선수들에게 어떤 부당한 이익 혹은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심판장에게 조언해야 한다. 경기의 그 라운드를 진행, 중단, 재시작을 위한 심판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 결정과 관련한 어떤 이익의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순위와 기록

3.21 KAF는 다음 순위를 발표한다.

A) 코리안컵 순위(KR)

B) 미적용

C) 스피드 종목의 국내기록

3.22 미적용

카관

~~3.23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의료적 사고 또는 비의료적 사고로 인하여 경기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1의 카관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의 서명을 받아 대회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선수 본인~~

~~B) 시도연맹 감독~~

~~C) 대회 심판장~~

~~※ 시도연맹의 감독이 없는 경우 대회 기술감독관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징계 절차

소개

4.1 심판장은 경기지역 내에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4.2 심판장과 심판은 대회에 등록된 선수와 팀 임원의 규칙 위반 문제와 징계 문제에 대해 다음의 행동을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A) 구두로 하는 비공식 경고

B)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를 제시하는 공식 경고

4.3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를 발행한 후 빨리, 심판장은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A) 심판장은 팀 임원에게 위반 사항과 규정에 따른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전달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관련된 사람에게 직접)

B) 심판장은 필요하다면 KAF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를 위하여 규정 위반에 대한 세부 보고서, 모든 증거, 추가 제재에 대한 요청서의 복사본을 KAF에 제출해야 한다.

옐로카드(경고)

4.4 옐로카드는 다음과 같은 모든 규정의 위반에 대해 심판장, 심판이 발행할 수 있다.

A) 선수나 팀 임원이 경기지역에서 위반한 사항

- 1) 비교적 가벼운 비 스포츠적인 행동
- 2) 비교적 가벼운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나 폭력적인 행동

B) 경기에 임명된 경기 임원의 지시와 관련하여 (다음은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1) 격리구역/준비운동 지역으로 가라는 경기 임원 또는 심판의 지시 후 지나친 지연
- 2) 대기 구역을 떠나 경기구역으로 가라는 경기 임원 또는 심판의 지시 후 지나친 지연
- 3) 심판의 출발 지시에 대하여 불이행

C) 장비 및 개폐회식 관련

- 1) 장비와 의류 관리 규정과 규칙 준수를 불이행
- 2) 대회 조직위에서 제공한 경기에 필요한 물품(출전번호표, 채점지등) 분실 및 미착용
- 3) 시상식에서 수상자가 불참

4.5 옐로카드를 받은 팀 임원은 대회가 끝날 때까지 경기지역에 출입할 수 없다.

(※감독/코치: 심판석 뒤, 심판석과 가까운 곳에 위치)에 출입할 수 없다.

레드카드(실격, DSQ)

4.6 심판장만이 대회에서 모든 팀원을 실격할 권한이 있다. 실격은 레드카드를 제시하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

4.7 다음 규정의 위반은 레드카드가 발행되고 그 대회에서 즉시 실격되며 경중에 따라 대신런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

A) 삭제됨

B) 승인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C) 경기지역에 머무는 동안 허가되지 않은 통신 장비의 사용

D) 격리조건 하에서 수집된 정보 또는 그 이외의 정보를 다음 사람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 경기지역 밖의 사람

2) 관련 루트/볼더를 이미 시도한 사람

격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라운드에서, 선수는 자신의 시도 이전과 시도 중에 경기구역 밖에 있는 다른 팀원으로부터 루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행위 실격(DQB)

4.8 심판장은 팀원으로 등록된 모든 팀원의 행위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하여 레드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4.9 다음 사항은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실격이 가능하다.

A) 심판, 루트세터, 조직위 임원 또는 대회 임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

B) 의료진 또는 도핑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건강 검진 또는 도핑 방지 테스트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

C) 루트를 준비 중이거나 시도 중인 선수를 산만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D) 의류와 장비의 광고 관련 규정 준수 거부

E) 한 대회에서 동일한 사람이 2장의 옐로카드를 받았을 때

연속적인 징계 조치

4.10 대회에서 실격 또는 행위실격(DQB)을 받은 선수는 그 대회에서 순위가 없다.

4.11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의 4.4 A) 및 행위 실격(DQS:4.9)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며 추가 제제가 주어진다.

A) A) 경고 및 실격은 발행시점으로 1년간 누적 관리된다.

B) 발행된 징계는 아래 사항에 따라 다음경기에 참가 할수 없다.

1) 발행된 징계가 실격일때 다음 대산련 주관 주최대회에 1회 출전이 금지 된다.

※ 실격은 경고 2회와 같은 의미로 간주한다.

2) 누적된 경고가 2회는 다음 대산련 주관 주최대회에 1회 출전이 금지 된다.

3) 누적된 경고가 3회 이상 일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된다.

그 외의 다른 사람

4.12 심판장은 규정을 위반한 그 어떤 사람도 경기지역에서 즉시 퇴장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필요하다면, 이 요구가 준수될 때까지 모든 경기와 관련한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5. 반도핑

채택

5.1 KAF는 세계 도핑방지위원회(WADA) 규약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한다.

신청

5.2 이 규약은 KAF가 승인한 모든 대회에 적용된다.

5.3 대회에 출전, 준비 또는 참가하는 선수, 코치, 트레이너, 임원, 의료 또는 준 의료인은 5.5항과 이 규약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KAF 내에서의 관할 조직체

5.4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서 이 규약의 적용을 위한 조직체는 한국 도핑방지위원회(KADA) 및 KAF 스포츠공정위원회이다.

위반 및 경고

5.5 도핑 위반은 대한체육회 반도핑 정책 및 절차, 징계 및 이의 신청 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6. 이의 신청

일반

6.1 판정과 성적 또는 선수에 관련된 모든 이의제기나 이의 신청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규정 위반 행위에 관하여 이의 심의 심판진이 결정한다. 이의 심의 심판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 심판장 (심판장이 이의 신청에 관련된 경우는 종목심판장 또는 심판)

B) 기술감독관 ★

6.2 모든 이의 신청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은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6.3 모든 이의 신청은 심판이나 심판장에게 접수하여야 하며 이의 심판진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A) 판정 오류

B) 접수 기록 또는 시간 기록의 오류

C) 선수 또는 팀 관계자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된 사항

안전에 관한 이의 신청

6.4 본 규정의 다른 조항과 관계없이,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안전 이의 신청“)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A) 서면으로 작성하며, 이의 신청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다.

B) 최소 서로 다른 3개 팀 임원이 서명해야 한다.

이의 심의 심판진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체 없이 결정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이의 신청의 처리

6.5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이의 심의 심판진은 관련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

A) “무효“(기각): 이의 신청서에 “무효” 라고 표시하여 이의 신청 수수료와 함께 되돌려 준다.

B) “유효” (접수): 이의 심의 심판진은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6.6 유효한 이의 신청으로 인정되려면 이의 신청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접수되어야 한다.

A) KAF 웹 사이트의 공식 이의 신청 양식 또는 동일한 정보로 구성된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 1) 관련 팀 임원이 서명
- 2) 대회에 등록된 임원이 없는 경우 관련 선수가 서명

B) 이의 신청 수수료가 동반된다.

C) 이의 신청 내용

- 1) 이의 신청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특정 조항
- 2) 이의 신청과 관련된 선수 또는 선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등번호)

6.7 6.6조에도 불구하고, 이의 심의 심판은 다음과 같은 이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A) 본 규정에 명시된 관련 이의 신청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 규정과 관련 없는 문제를 제기한 경우

C) 그 이외에도 근거가 희박한 경우(설득력이 없는 경우)

6.8 본 규정의 일부 불이행 또는 경기 내용의 어떤 결정(이하 “최초의 결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유효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A) 공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일 때 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게시된 결과에 “이의 신청 중” 이라고 표시하고, 결과가 이의 신청 대상임을 밝혀야 한다.
- 2) 대회 조직위는 공식 결과가 이의신청 중에 있음을 방송을 통해 알린다.

B) 이의 신청 관련하여 이의 심의 심판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 1) 경기 일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 2)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며 다음을 제외한 비디오 증거는 고려되지 않는다.
 - a) 공식 비디오 기록
 - b) 공식적인 방송 비디오 기록

C) 만약

- 1) 유효한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을 때 이의 신청은 “미결정“이라 하고, 최초의 결정이 유지되며 이의 신청 수수료는 반환된다.
- 2) 유효한 증거가 결정적일 때,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한다.
 - a)“승인“: 수수료가 반환되고 최초의 결정이 변경된다.
 - b)“미승인“: 수수료는 납부되고 최초의 결정이 유지된다.

D) 이의 신청의 결과는 심판장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식적으로 이의신청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의 신청의 결과

6.9 이의 심의 심판진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 리드

일반

7.1 리드 경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최소 높이가 15미터이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루트의 설치가 가능한 목적에 맞게 설계된 인공 등반 벽에서 열린다.
- 1) 루트 길이가 최소 15m, 폭이 최소 3m가 되어야 한다. 다만 루트 길이와 폭은 경기장 여건에 따라 조직위가 변경할 수 있다.
 - 2) 선수가 시도하는 동안 확보자는 선수의 로프가 안전하게 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각 루트에 최종 클립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B) 선수는 아래에서 확보되어 등반하며, 다음 중 하나이다.
- 1) 단일로프로 루트를 따라 일련의 확보 지점에 클립 하여 확보된다.
 - 2) 모든 대회는 (파라 스포츠 클래스 포함) 심판장의 권한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 a) 루트 상단의 앵커를 통해 고정된 단일 로프(톱로핑)
 - b) 루트 상단의 앵커와 루트를 따라 있는 중간 앵커를 통해 고정된 트윈 로프.
- C)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각 출전그룹에 동일하지 않은 2개의 루트(A 및 B)로 구성된 예선 라운드, 시범 등반(또는 상영) 후 시도
 - 2) 각 부문별 1개의 루트로 구성된 결승(결승/ 준결승) 라운드, 시범 등반 없이 시도
- (주)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심판장은 한 라운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취소된 라운드의 순위는 이전 라운드의 결과로 한다.★

7.2 루트의 설계

- A) 각 루트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 1) 선수의 추락으로 자신의 부상과 제3자나 다른 선수들의 부상이나 방해의 가능성이 없도록
 - 2) 하향 점프가 없도록
- B) 심판장은 다음을 승인할 수 있다. 가능한 루트를 설계할 때 다음의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 1) 하나 또는 그 이상 확보 지점에 미리 등반로프를 고정
 - 2) 선수가 낮은 부분을 등반하는 동안에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위해 루트의 시작점에 보조 확보자를 배치

안전

7.3 심판장

- A) 심판장은 각 라운드가 시작하기 전에 심판과 루트세터장과 함께 각 루트를 점검해야 한다. 루트세터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안전홀드 또는 안전홀드 이전의 홀드에서 클립을 해야만 한다” 라고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안전홀드와 관련된 확보 지점은 명확하게 파란색 십자가로 표시되어야 하며 루트 관찰 시간 동안 언급되어야 한다.
※ 안전홀드에서 클립하지 않고 지나칠 경우 선수의 등반은 종료되고 해당 선수의 성적은 안전홀드의 통제까지이다.
- B) 경기하는 동안 어느 시점에 등반로프를 교체하면 좋을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4 각 선수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심판장은 선수가 착용한 안전벨트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합리적인 판단이 되면 선수의 등반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7.5 각 등반로프는 1명의 확보자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며, 보조자의 도움을 권장한다. 확보자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A) 확보자는 수동 확보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 B) 확보자는 선수가 루트를 시도하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1) 선수의 안전벨트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 2) 로프는 루트를 시도할 때 다음을 사용하여 선수의 안전벨트에 연결되었는지
 - a) 리딩방식으로 등반시 “8자 매듭”과 “안전매듭”으로 연결
 - b) 탑로핑 방식으로 등반시 8자 매듭을 하고 안전 매듭이나 테이프를 백업하여 2개의 잠금 비너 또는 자동 잠금 카라비너의 게이트를 서로 반대로 위치하여 연결
 - 3) 등반로프를 즉시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었는지
- C) 선수가 루트를 시도하는 동안 적절한 여분의 로프를 유지하는지와 다음의 사항들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등반 로프가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여 선수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2) 모든 추락은 동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멈춰져야 한다.
 - 3) 선수가 안전하게 지면으로 내려와야 한다.

출전 순서와 라운드 정원

7.6 예선 라운드는 각 부문에 대해 하나 또는 두 개의 출전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다.

- A) 출전그룹의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등록한 선수	출전그룹의 수
<80	1
>79	1 or 2

B) 두 개의 출전그룹이 적용되는 경우,

- 1) 각 그룹의 루트는 비슷한 난이도와 성격을 가지도록 한다. (외형과 양식)
- 2) 선수들은 다음과 같이 그룹에 배정해야 한다.

a) 관련된 랭킹을 가진 선수들은 다음의 방식으로 출전그룹에 할당된다.

출전그룹 A	출전그룹 B
1위	2위
4위	3위
5위	6위

b) 랭킹이 없는 선수들은 출전그룹에 무작위로 배정하며,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할당한다.

7.7 예선전 이후의 각 라운드의 정원은 해당 라운드의 공식 결과가 결정되고 이의 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이전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순위를 기록한 선수들로 채워진다.

동률인 선수들로 인해 관련 라운드의 정원을 초과하면 동률인 선수 모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

A) 준결승 라운드 정원은 24명이다.

만약에 어떤 부문에서 출전그룹이 두 개였다면, 다음 라운드의 정원은 두 그룹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적용된다. (예: 준결승 라운드는 각 그룹당 12명)

B) 결승 라운드 정원은

- 1) 오픈 스포츠 클래스의 결승 정원은 8명이다.
- 2) 파라 스포츠 클래스의 유동 정원은 다음과 같다.

등록선수	정원
$n \leq 6$	3
$6 < n < 15$	4
$n \geq 15$	6

참고: ※리드 경기표

라운드	루트 수	경기 방식	등반 시간	출전 순서	정원
예선	2개	플래시	6분	코리안 랭킹순, 무작위(랭킹 없을 시)	80명
준결승	1개	온사이트	6분	예선 성적의 역순	24명
결승	1개	온사이트	6분	준결승 성적의 역순	8명

※ 특수한 경우 심판장의 재량으로 경기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7.8 출전 순서

- A) 예선 라운드에서 각 출전그룹 내의 출전 순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 1) A 루트: 무작위로 한다.
 - 2) B 루트: 첫 번째 루트와 순서는 같지만, 반으로 나누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출전 선수가 20명 또는 21명이라면, A 루트에서 11번째 출전한 선수가 B 루트에서 첫 번째로 출전한다.
- B) 준결승 및 결승 라운드의 출전 순서는 이전 라운드 순위의 역순으로 해야 한다. (예: 순위가 높은 선수가 늦게 출발) 만약 선수가 동률일 경우, 그들의 출전 순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 1) 동률인 선수들이 코리안 랭킹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들의 현재 순위의 내림차순으로(즉, 가장 높은 랭킹이 마지막에 출전)
 - 2) 동률인 선수들이 코리안 랭킹이 없거나 현재 랭킹이 동률인 경우, 무작위로 배정한다.
 - 3) 현재 코리안 랭킹을 가진 선수들과 없는 선수들일 경우, 랭킹이 없는 선수가 먼저 출전한다. 각 경우에 공식 출전순서표를 명시해야 한다.

경기 절차

7.9 준결승과 결승 라운드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선수(들)는 해당 라운드의 공식 출전순서표에 명시된 격리 마감 시간까지 격리구역에 입실해야 하며, 격리구역에서 입실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격리구역에 머무르지 않으면 해당 라운드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리드 경기의 준결승과 결승 라운드는 격리 규정을 적용한다.

7.10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시간 차이가 있어야 한다.

(주) 조직위의 재량으로 아래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A) 선수는 첫 번째 루트 시도의 종료와 두 번째 루트 시도의 시작 사이에 최소 50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B) 동일한 날에 연속적으로 리드 경기의 라운드를 진행할 경우, 첫 번째 라운드 마지막 선수의 시도가 끝난 시간과 다음 라운드의 격리구역 폐쇄 시간까지 최소 2시간의 시간 차가 있어야 한다.

7.11 선수들은 관련된 공식 출전순서표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루트를 시도해야 한다. 만약에 선수가 제시 시간에 출전할 수 없는 경우, 출전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

7.12 루트청소

A) 루트 청소는 해당 라운드에 균등하게 배분된 시점에 실시되어야 하며, 루트 청소와 청소 사이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20명의 선수를 기준으로 하며, 24명을 초과할 수 없다. ★

B) 청소계획은 출전순서표에 표시되어야 한다.

7.13 결승 라운드

A) 결승 라운드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해당 경기 전 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B) 결승 라운드에서 경기 시간이 9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루트 관찰 절차

7.14 관찰

A) 각 예선 루트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 1) 예정된 라운드의 시작 60분 전에 지정된 장소(준비운동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재생되는 비디오 영상
- 2) 영상이 불가능한 경우, 첫 번째 선수가 시도하기 30분 전에 시범 등반을 해야 한다.

B) 준결승 라운드와 결승 라운드는 해당 경기 전 선수들을 위한 6분의 단체 관찰 시간이 선행되어야 한다.

1) 관찰 시간 동안에 선수는 다음이 허용된다.

- a) 두 발이 지면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루트의 모든 홀드를 만질 수 있다.
- b) 루트 관찰을 위하여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다.
- c) 수기로 그림을 그리거나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기록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d) 공식적으로 제공된 정보나 관찰기간 동안 얻은 정보를 제외하고는 루트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참가자의 시도를 관찰하거나, 루트 제작자의 작업을 관찰하는 것은 금지된다.
- e) 팀 관계자 및 참가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참가자에게 루트/볼더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전달하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보 또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2) 관찰 시간이 끝나면, 선수들은 대회 임원의 지시에 따라 격리구역이나 트레닝존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각 장애가 있는 파라 스포츠 클래스 선수는 시각 가이드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 조항(7.14.B)항)에서의 선수에 관련된 내용은 시각 가이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반 절차

7.15 각 라운드 내에서 시도허용 시간은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간 후 시도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시간 40초와 등반 시간 6분을 포함한다. 선수는 이의 신청 또는 기술적 사고에 따르는 추가 시도를 제외하고, 루트 당 1번의 시도를 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선수들이 루트에서 추가 시

도를 할 수 있는 “에프터 워크” 인 경우 별도의 연습 시간을 줄 수 있다.

(주)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모든 등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7.16 <미적용>

7.17 선수의 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선수의 몸 전체가 지면에서 떠났을 때 등반 시간(그리고 등반허용 시간) 측정이 시작되고 선수의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루트심판은 선수가 출발하는지 또는 시작 전에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선수는 등반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홀드 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루트 상단의 행거에 로프를 통과하여 시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보 지점에 순서대로 클립을 해야만 하며, 다음이 가능하다.

★ 만약 선수가 하향 등반을 하지 않고 Z-클립을 해결할 수 없는 위치까지 전진할 경우 심판은 등반 종료로 선언하고 이 선수의 성적은 하향 등반을 하지 않고 Z-클립을 해결할 수 있는 홀드의 통제까지이다.

3) 시도 중에 진행되었던 이전의 퀵드로우가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이 풀릴 경우 이 선수의 시도는 종료되고 이 시도에서 성적은 풀린 퀵드로우를 클립하기 위해 도달한 홀드의 통제까지이다.

★ 심판은 확실한 증거의 확인을 위하여 상황이 발생 시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선수의 시도는 계속 진행되고 해당 선수의 시도 종료 시 해당 퀵드로우의 클립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a) 선수는 어느 때라도 마지막 카라비너에서 클립을 풀고 다시 클립할 수 있다.

b) Z-클립이 발생했다면, Z-클립을 수정해야 한다. 그 선수는 관련된 어떤 카라비너라도 클립을 풀고 다시 클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정 완료 후, 모든 확보 지점은 클립 되어 있어야 한다.

B) 다음의 경우, 선수의 시도가 종료되고 등반 시간을 측정한다.

1) 완등 했을 때

a) 로프가 루트 상단의 앵커에 통과되지 않은 경우는 선수가 루트의 마지막 확보 지점에 클립 했을 때

b) 루트 상단의 앵커에 로프가 통과된 경우는 선수가 “Top” 홀드를 통제했을 때

2) 추락했을 경우

3) 심판에 의해 시도가 종료된 경우

7.18 심판은

A)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의 시도가 종료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1) 선수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2) 선수가 다음을 한 경우

- a) 등반허용 시간 초과
- b) 등반을 시작한 후에 신체가 지면과 접촉 또는 바닥으로 돌아온 경우
- c) 퀵드로우를 순차적으로 클립하지 않았을 때
- d) Z 클립을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퀵드로우의 클립을 해제할 때
- e) 하향 등반을 하지 않고는 클립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 f) 루트상의 안전 홀드(위치)를 지나 더 이상의 등반을 한 경우

B) 다음과 같은 경우 등반을 종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1) 선수가 더 이상 정당한(유효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 2) 기술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정과 채점

7.19 루트맵은 심판과 협의하여 루트세터장이 준비해야 하며, 경기의 각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루트맵에 점수값을 표시하며, 해당 라운드 동안,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 루트맵은 다음과 같다.

A) 루트 관찰 시간 이후 및 관련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 게시판에 (점수값이 표시된) 게시해야 한다.

B) 대기 구역에는 (점수 값없이) 게시해야 한다.

7.20 각 루트는 최소한 한 명의 2급 이상 공인심판이 판정해야 하며, 선수의 등반 시간을 기록하는 등은 시간 측정 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 등반 시간은 초 미만은 버리고 초 단위까지의 등반 시간을 기록한다.

B) 선수들이 획득한 점수는 다음 중 하나가 된다.

1) 선수가 경기 중 정당한(유효한) 위치에 있는 경우

a) "TOP" , 선수가 허용된 등반허용 시간 내에 7.17(B)(1)항에 명시된 루트를 완료한 경우

b) 선수가 다음 i), ii)가 발생하기 전에 통제하거나 사용한 마지막 가장 높은 홀드에 대한 루트맵 상의 점수 값

i) 추락

ii) 등반 종료

2) 선수가 경기(시도) 중 정당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획득한 점수는 정당한(유효한) 위치에 있는 동안 선수가 통제할 홀드의 점수이며, 이 경우

3) 선수가 득점을 목적으로 손으로 사용한 홀드만 점수를 부여한다. 사용에 대한 채점 값(첨자 "+")은 동일한 홀드의 통제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4) 선수의 시도에 관한 채점은 루트세터장이 클립 되지 않는 어떤 확보 지점에 클립이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루트맵 상에 표시된 마지막 홀드에서 중지할 수 있으며, 이 중지는 선수가

마지막 홀드를 통제 또는 통과 했을 때 또는 마지막 홀드에서 관련된 확보 지점에 클립할 때까지이다.

7.21 <미적용>

순위

7.22 루트를 시도한 선수들은 다음의 순서를 따라 순위를 정해야 한다.

- A) “TOP” 으로 득점한 모든 선수(들)
- B) 다른 모든 선수는 그 선수에게 부여된 점수의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부여된다.

7.23 예선 순위

- A) 한 출전그룹에 속한 선수가 시도해야 되는 두 개 루트 모두에 출발할 자격이 없거나 출발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 라운드에 순위가 없고, “출발 없음” (DNS) 또는 “결과 없음” (IRM)으로 그 결과를 표기한다.
- B) 예선에서 최소한 한 개의 루트를 등반하는 선수에게 각각의 예선 루트에 순위 점수가 부여된다. 순위 점수는 각 루트의 **평균 순위**와 동일하다.
- C) 출전그룹 내 각 선수는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부여된다. 각 선수에게 부여되는 예선점수는 (예: 낮은 총점이 더 좋다.) 다음의 공식에 따라 부여된다.

$$QP = \sqrt{P_1 \times P_2}$$

- QP = 총점: 소수점 3 자리로 반올림
- P1 = 첫 번째 예선 루트의 순위 점수.
- P2 = 두 번째 예선 루트의 순위 점수.

D) 공식 결과에 표시되는 포인트 데이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한다.

7.24 준결승과 결승 라운드 순위

- A) 시도해야 하는 루트에 출발할 자격이 없거나 출발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 라운드에 마지막 순위이며, “출발 없음” (DNS) 또는 “결과 없음” (IRM)으로 그 결과를 표기한다.
- B) 준결승 라운드에 관련하여, 7.22 항의 순위 절차에 따라 동률일 경우, 관련 선수들의 순위는 예선 라운드의 순위를 적용(카운트백)한다. (예선 라운드가 두 개의 출전그룹으로 나누어 치

러진 예선 라운드의 결과는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 C) 결승 라운드에 관련하여, 7.22항의 순위 절차에 따라 동률일 경우, 관련 선수들의 순위는 다음의 절차로 결정한다.
 - 1) 이전 라운드의 순위에 따라 카운트백을 적용한다.
 - 2) 카운트백을 적용 하고도 동순위일때는 동률로 한다.
 - 3) 반드시 순위를 결정해야 할 경우 카운트백을 적용한 후에도 선수들이 동률인 경우, 해당 선수들의 순위는 이 선수들의 등반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짧은 시간이 우선순위)★

7.25 종합순위

종합순위는 본 규정 4.10 항과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A) 결승 순위를 가진 선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 B) 준결승 순위를 가진 선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 C) 예선 순위를 가진 선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예선 라운드가 두 개의 출전그룹으로 개최 되는 경우, 이들의 종합순위는 각 그룹의 순위를 병합하여 결정하며, 순위가 같은 선수들은 동률로 처리한다.

기술적 사고와 이의 신청

7.26 공식 비디오 기록과 심판장의 재량에 따라 공식적인 방송 비디오 기록만을 기술적 사고와 이의 신청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공식 비디오 기록은 최소한 다음을 기록(포함)해야만 한다.

- A) 루트 맵 상에 표시된 모든 홀드
- B) 완등(“TOP“) 확보 지점을 포함한 루트선상의 모든 확보 지점
- C) 등반표면에 표시된 모든 경계선

7.27 만약 선수, 팀 임원, 확보자, 루트 심판은 기술적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종목 심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 종목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루트세터와 협의하여 기술적 사고를 선언할지 결정해야 하며 다음을 따른다.

- A) 선수에게 공정하지 않은 이익이 제공되었다면, 종목심판장은
 - 1) 관련 선수의 시도를 중지하거나
 - 2) 결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면, 관련 선수가 계속 등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적 사고가 나중에 확인될 경우 관련 선수에게 추가적인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B) 선수에게 불이익이 제공되었다면, 종목심판장은

- 1) 선수가 정당한 위치가 아니면, 종목심판장은 관련 선수의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
- 2) 선수가 정당한 위치이면, 종목심판장은 관련 선수에게 시도를 계속할 건지 종료할 건지 선택하도록 한다. 선수가 시도를 계속하기로 선택한 경우, 기술적 사고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7.28 선수가 추락 또는 등반의 종료 원인이 기술적 사고라고 주장한다면 다음을 따른다.

A) 기술적 사고의 처리(결과의 검정)와 이후 회복 기간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운동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 격리구역으로 안내해야 한다. 선수는 이 격리구역에 머무는 동안 KAF 임원 및 대회 조직위 임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없다.

B) 기술적 사고가 확정되면, 심판장은:

- 1) 관련된 선수의 기술적 사고 발생 이전에 사용된 손 홀드의 수에 1분씩을 부여하고 최대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회복 시간을 선수에게 제공한다.
- 2) 선수에게 제공된 시간을 기초로 해당 선수의 추가 시도를 출전 순서 내에 어느 위치에 삽입할지를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선수에게 이 결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하며

만약 기술적 사고를 당한 선수가 그 라운드가 끝났을 때 순위가 1위라면, 새로운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7.29 기술적 사고 후에 관련 선수는

A) 7.27(B)(2)항에 서술된 상황에서 시도를 계속하도록 선택한 경우, 이 시도의 결과는 유효하다.

B) 7.28(B)항에 따라 추가 시도를 할 수 있으며, 선수의 결과는 루트에 대한 시도 중에서 높은 성적으로 기록된다.

7.30 이의 신청

A) 선수의 시도 종료와 관련하여

- 1) 관련 선수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다.
- 2) 팀 임원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만 하며 이 시도에 관련한 이의 신청은 다음 선수가 시도하기 전에 해야만 한다. 관련 선수는 이의 신청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기술적 사고의 대상으로 취급된다.

B) 선수의 점수와 순위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만 한다. 이의 신청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예선 라운드 또는 준결승 라운드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공식 결과 발표 후 5분 이내
- 2) 결승 라운드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관련 선수의 예비 성적이 게시된 후에 즉시(또는 예비결과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공식결과 게시 후)그리고 특정 홀드에 대한 선수의 채점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심의 심판은 해당 선수의 결과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8. 볼더

일반

8.1 볼더경기는

- A) 특별히 설계된 인공 등반벽에 구성된 짧은 루트(“볼더“)에서 개최하고, 로프없이 등반한다.
- B) 볼더 경기의 라운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예선 라운드는 출전그룹별로 5개 볼더로 된 단일 코스로 구성된다.
 - 2) 준결승 라운드와 결승 라운드는 부문별로 4개 볼더로 된 단일 코스로 구성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은 어느 라운드에서 1개의 볼더를 취소할 수 있다.

8.2 볼더의 설계

- A) 각 볼더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 1) 선수의 추락으로 자신의 부상과 제3자나 다른 선수들의 부상이나 방해의 가능성이 없도록
 - 2) 하향 점프가 없도록
- B) 한 볼더에서 최대 손 홀드 수는 12개이고, 한 라운드에서 평균 손 홀드의 수는 4~8개로 한다.
- C) 각 볼더는 다음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1) “출발 홀드”는 두 손과 두 발을 위한 것으로, 등반표면의 비어 있거나 경계가 없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출발 홀드에 손의 좌·우 특정 위치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 2) “존홀드”는 현저히 다른 경기력을 가진 선수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 3) “완등”은 다음 중 하나로 해야 한다.
 - a) 지정된 완등 홀드 (“TOP 홀드”)
 - b) 볼더의 꼭대기 위에 서는 자세
- D) 각 볼더에 사용된 표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출발 홀드와 완등은 같은 하나의 색으로 표시
 - 2) 존 홀드는 다른 색으로 표시 등반 벽에 어떤 경계를 구분할 때는 또 다른 색을 사용한다.

등반 벽에 어떤 경계를 구분할 때는 다른 색을 사용한다. 이러한 표시의 예는 경기 전체기간 동안 동일하게 하고, 그 예를 격리구역 내에 설치해야 한다.

- 8.3 타이머는 각 라운드의 준비시간과 등반허용 시간에서 남은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타이머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 A) FOP와 트랜짓존에서 모든 선수가 볼 수 있어야 한다.
- B) 관련 시간 내에 남은 시간은 초 단위까지 보여 주어야 한다.
- C) 음향신호를 제공한다.
 - 1) 등반허용 시간이 시작하고 종료될 때
 - 2) 등반허용 시간이 1분 남았을 때
 - 3) 등반허용 시간의 종료 5초 전 카운트다운

안전

8.4 각 볼더마다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매트를 설치해야 한다.

- A) 루트세터장은 볼더의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매트를 조정(배치)해야 한다. 매트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 연결된 부분의 틈새에 선수가 끼이지 않도록 틈을 메우거나 덮어야 한다.
- B) 심판장, 종목심판장, 루트세터장, 루트세터는 안전을 위해 각 라운드가 시작하기 전에 각 볼더와 안전매트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출전 순서와 정원

8.5 예선 라운드는 각 부문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출전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다.

- A) 출전그룹의 수는 부문별 등록선수의 수에 따라 결정한다.

등록한 선수	출전그룹의 수
≤ 40	1
41-59	1 or 2
≥ 60	2

- B) 두 개의 출전그룹이 적용되는 경우
 - 1) 두 출전그룹의 각 코스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난이도, 각 코스의 볼더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도록 한다. (외형과 양식)
 - 2) 선수들을 다음과 같이 출전그룹에 배정해야 한다.
 - a) 테크니컬미팅 당일 관련된 볼더 코리안 랭킹을 가진 선수들은 다음의 방식으로 출전그룹에 배정해야 한다.

출전그룹 A	출전그룹 B
1위	2위
4위	3위
5위	6위

b) 코리안 랭킹이 없는 선수들은 출전그룹에 무작위로 배정하나 가능한 한 균등하게 배정한다.

8.6 예선전 이후의 각 라운드의 정원은 해당 라운드의 공식 결과가 결정되고 이의 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이전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순위를 기록한 선수들로 채워진다. 만약 동률에 의해 정원이 초과된다면, 해당하는 모든 동률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자격을 얻는다.

A) 준결승 라운드의 정원은 24명이다. 관련된 부문에 등록된 선수 수에 따라 정해진다. 어떤 부문에 출전그룹이 2개라면 다음 라운드의 정원은 두 그룹에 균등하게 나눠 적용한다.

(예: 준결승 라운드는 각 그룹당 12명)

등록선수 수	정원
≤24	해당 없음
>24	24명

B) 결승 라운드의 정원은 8명이다.

참고: ※볼더 경기표

라운드	볼더 수	격리 유,무	등반 시간	정원
예선	5개	격리	5분	60명
준결승	4개	격리	5분	24명
결승	4개	격리	4분	8명

※ 특수한 경우 [조직위](#)의 재량으로 경기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8.7 출전 순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공식 출전순서표에 명시되어야 한다.

A) 예선 각 출전그룹 내에서 출전 순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 1) 코리안 랭킹을 가진 선수들은, 코리안 순위의 순위가 높은 선수가 먼저 출전하도록 배정하고
- 2) 다음으로 코리안 랭킹이 없는 선수들은 무작위로 배정

B) 후속 라운드의 경우, 이전 라운드 순위의 역순이 된다. (즉, 가장 높은 순위가 마지막에 출전) 선수가 동률일 경우, 출전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동률인 선수들이 코리안 랭킹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들의 현재 코리안 순위의 내림차순으로(즉, 가장 높은 순위선수가 마지막에 출전)
- 2) 동률인 선수들이 코리안 랭킹이 없거나 현재 코리안 랭킹이 동률인 경우, 무작위로 배정한다.
- 3) 현재 코리안 랭킹을 가진 선수들과 없는 선수들이 동률일 경우, 코리안 랭킹이 없는 선수가 먼저 출전한다.

각각의 경우는 공식 출전순서표에 명시되어야 한다.

경기 절차

8.8 볼더링기는 다음의 형태로 경기를 진행한다.

- A) 일반적으로 볼더링 경기의 모든 라운드는 격리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경기의 어떤 라운드에서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해당 라운드의 공식 출전순서표에 명시된 시간까지 격리구역에 입실해야 하며, 격리구역에서 입실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격리구역에 머무르지 않으면 해당 라운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 B) 청소년(유스) 대회는 조직위의 결정에 따라 예선경기를 오픈경기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시등 영상의 제공 또는 시범등반을 한다.
 - a) 예정된 라운드의 시작 12시간 전에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다.
 - b) 영상이 불가능한 경우 첫 번째 선수가 시도하기 30분 전에 시범등반을 해야 한다.

2) 경기는 아래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분	볼더의 수	방식	등반 시간	출전 순서
예선	4 - 6	오픈/플래시	4-5분	무작위/오프셋

※오프셋(Offset Order) : 각 코스 또는 볼더의 출전순서가 다른 코스 또는 볼더의 출전순서로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볼더 수에 비례한다.

(예: 40명의 선수가 참가할 경우 4개의 볼더 선수 10명씩 배분하여 40분 주기로 코스를 이동 하면서 등반한다.)

8.9 동일한 날에 연속적으로 라운드를 진행할 경우, 첫 번째 라운드 마지막 선수의 시도가 끝난 시간과 다음 라운드의 격리구역의 폐쇄 시간까지 최소 2시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야 한다.

(주) 조직위 재량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8.10 예선 라운드와 준결승 라운드는 각 라운드의 시도허용 시간과 동일한 일련의 로테이션으로 구성된다. 관련 라운드에 참여하는 선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A) 관련 라운드에 참여하는 각 선수는 공식 출전순서표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각 볼더에 대한 시도를 시작한다. 선수가 제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할 경우, 출전 순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 B) 규정된 순서대로 관련 코스의 각 볼더를 시도한다.
- C) 연속한 볼더에 대한 시도 사이에 시도허용 시간과 같은 휴식 시간을 갖는다.
- D) 등반허용 시간이 종료되면 등반 중인 선수들은 등반을 중지하고 지정된 트랜짓존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트랜짓존은 선수가 시도 전에 볼더를 관찰할 수 없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 E) 등반허용 시간이 시작될 때, 휴식을 취한 선수들은 연속한 다음 볼더에서 (시도가 가능하면)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 등반허용 시간 중 코스를 모두 마친 선수들은 경기구역을 떠나야 한다. 심판장은 코스를 마친 선수가 다음 로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트랜짓존에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

8.11 결승 라운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 A) 해당 경기 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 B) 각 부문에서
 - 1) 선수들은 공식 출전순서표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각 볼더를 시도해야 한다.
 - 2) 한 선수가 시도를 마치면 별도의 대기 구역으로 돌아가고, 다음 선수가 출발한다.
 - 3) 결승경기의 방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 결승경기

경기출전순서	1번 볼더	2번 볼더	3번 볼더	4번 볼더
1	1번 선수			
2	2번 선수			
3	3번 선수			
4	4번 선수			
5	5번 선수	1번 선수		
6	6번 선수	2번 선수		
7	7번 선수	3번 선수		
8	8번 선수	4번 선수		
9		5번 선수	1번 선수	
10		6번 선수	2번 선수	
11		7번 선수	3번 선수	
12		8번 선수	4번 선수	
13			5번 선수	1번 선수
14			6번 선수	2번 선수
15			7번 선수	3번 선수
16			8번 선수	4번 선수
17				5번 선수
18				6번 선수
19				7번 선수

관찰 절차

8.12 관찰

- A) 예선 라운드와 준결승 라운드는 별도의 관찰 시간이 없다.
- B) 결승 라운드는 해당 경기 전 각 볼더당 2분의 단체 관찰 시간이 선행되어야 한다.
- 1) 관찰 시간 동안, 선수들은(※두발이 바닥을 떠나지 않은 채) 출발 홀드만 만질 수 있고 수기로 된 기록은 사용이 가능하고 전자기록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 2) 공식적으로 제공된 정보나 관찰기간 동안 얻은 정보를 제외하고는 볼더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참가자의 시도를 관찰하거나, 루트 제작자의 작업을 관찰하는 것은 금지된다.
 - 3) 팀 관계자 및 참가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참가자에게 루트/볼더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전달하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보 또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 C) 각 볼더의 사진이나 스케치를 격리구역 또는 관련 있는 볼더의 트랜짓존에 게시할 수 있다.

등반 절차

8.13

- A) 예선 라운드와 준결승 라운드의 시도허용 시간은 정해진 준비시간과 등반허용 시간으로 구성된다. 준비시간에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 시도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다음과 같다.

라운드	준비시간	등반 시간
예선	15초	5분
준결승	15초	5분

- B) 결승 라운드의 등반 시간 4분이고, 별도의 준비시간은 없다.

위 모든 경우에 선수는 해당하는 등반 시간 내에 시도 횟수에 제한이 없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각각의 볼더를 전체로 시도해야 하며, 볼더의 일부에서 연습하거나, 숙달을 위한 반복을 하거나 불법적인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된다. (특정한 상황이란 예를 들면 “애프터 워크“ 대회 같은 대회에서 별도의 연습 시간이 있는 경우이며, 이때 선수는 볼더에서 연습하거나 숙달을 위해 훈련을 할 수 있다.)

※ 심판장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각 볼더당 시도횟수의 제한을 둘 수 있다.

8.14 볼더의 청소는 시도 횟수가 점수에 반영되는 규정을 고려하여, 선수는 언제라도:

A) 홀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서 닿는 모든 부분을 청소할 수 있다.

주의: 선수가 홀드를 청소하기 위해 점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등반표면을 사용하거나 다른 홀드를 만지지 않는 한, 이 행동은 점수 시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출발 홀드 외의 홀드를 만질 경우 시도 1회를 추가한다.

B) 볼더의 청소를 요청할 수 있다.

C) 개인 청소도구를 사용 시 구두경고 조치되며 지속적인 사용은 징계사유가 된다. ★

그리고 솔과 기타 도구는 조직위가 제공하는 것만 청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8.15 선수의 시도는 다음과 같다.

A) 선수의 신체 모든 부분이 바닥에서 떠났을 때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B) 다음의 경우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1) 성공(완등)한 경우
- 2) 추락하거나 출발 이후에 바닥에 접촉한 경우
- 3) 심판 또는 KAF 경기 임원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료되었을 경우
 - a) 실패
 - b) 기술적 사고의 발생.

판정과 채점

8.16 각 볼더는 최소한 1명의 2급 이상의 심판이 판정하며, 심판은 다음을 기록한다.

A) 각 선수가 시도한 횟수. 선수가 다음을 할 때마다 시도 횟수를 더한다.

- 1) 정확한 출발 또는 부정확한 출발을 한 경우
- 2) 출발하기 전에, 출발 홀드 이외의 다른 홀드 터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블로키 홀드는 터치는 가능 하지만 통제(사용)시 시도가 추가 된다.
- 3) 볼더에 어떤 표시를 추가 했을 때(예: 초크로 벽면에 표시할 때 등)
2)와 3)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B) 선수가 존홀드를 통제하기까지 시도한 횟수

C) 선수가 완등하기까지 시도한 횟수

8.17 선수의 시도는 다음을 따른다.

A) 다음의 경우에 실패로 판정한다.

1) 선수가 부정확한 자세로 출발했을 경우

주의: 등반자는 각 시도를 시작할 때 표시된 출발 홀드를 컨트롤하여 양손과 양발로 안정된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등반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다른 홀드를 사용한 경우, 시작은 무효(즉, 부정 출발)로 판정된다.

2) 선수가 바닥을 떠난 후에 안전 매트에 접촉했을 경우

3) 등반허용 시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4) 선수가 불법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

B) ZONE 득점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1) ZONE 홀드를 안정적인 자세로 통제할 때

※ 안정적인 자세란 ZONE 홀드를 손으로 통제함과 동시에 신체의 움직임이 없어야 하며 신체의 중심이 ZONE 홀드로 완전히 이동한 상태를 말한다.

2) ZONE 홀드를 사용하여 다음 홀드로 전진에 성공할 경우

C) 등반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볼더에서의 시도가 성공으로 간주된다.

1) 등반시간이 완료 되기전에 볼더의 꼭대기에 서는 것을 마치거나,

2) 선수가 TOP 홀드에 양손으로 컨트롤/매칭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자세일 때

※ 충분한 시간과 안정적인 자세의 판단은 해당 심판의 고유 권한이다.

주의: 매칭은 두 손이 표시된 마무리 홀드와 동시에 접촉해야 한다. 홀드 자체에 접촉하지 않고 한 손이 다른 손 위에 놓이는 경우 홀드는 매칭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각각의 경우에 볼더 심판이 한 손을 들고 “OK“라고 알린 경우이다.

8.18 선수들의 출발은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 올바른 출발은 선수가 다른 홀드 또는 구성물을 통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출발 홀드에 두 손과 두 발을 위치하고 안정적으로 통제된 자세를 취했을 때이다. 볼더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선수가 다음과 같이 하는 건 분명하게 허용한다.

1) 출발 홀드에 도달하기 위해 등반표면의 한 부분을 접촉, 통제, 사용할 수 있다.

2) 블로커 홀드에 접촉

3) 블로커 홀드를 통제할 경우

B) 잘못된 출발은 다음과 같다.

1) 출발 홀드에 두 손과 두 발이 안정적으로 통제된 자세를 취하지 못한 경우.

2) 출발 홀드에 두 손과 두 발이 안정적으로 통제된 자세를 얻기 전에 출발 홀드 표시가 없는 홀드 또는 기타 구성물을 통제하거나 사용한 경우

순위

8.19 볼더의 각 코스에서

- A) 각 코스에 시도할 자격이 없거나 시도하지 못한 선수들은 관련 라운드에선 순위가 없고, 결과 없음” (IRM)으로 그 결과를 표기한다.
- B) 다음 기준에 따라 선수의 순위를 부여한다.
- 1) 1개의 볼더당 TOP일 경우 25점을 부여하고 시도횟수에 따라 0.1점씩 차감한다.
 - 만일 첫 시도에 TOP일 경우 25점, 두 번째 시도에서 TOP일 경우 24.9점
 - 세 번째 시도에서 TOP일 경우 24.8점으로 시도별 0.1점씩 차감하여 점수를 기록한다.
 - 2) 1개의 볼더당 ZONE 포인트를 획득할 경우 10점을 부여하고 시도횟수에 따라 0.1점씩 차감한다.
 - 만일 첫 시도에 ZONE일 경우 10점, 두 번째 시도에서 ZONE일 경우 9.9점
 - 세 번째 시도에서 ZONE일 경우 9.8점으로 0.1점씩 차감하여 점수를 기록한다.
 - 3) 각 볼더에서 획득한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해당 라운드의 순위를 정한다.
 - ※예선인 경우 125점 만점, 준결승 및 결승전은 100점 만점

8.20 준결승 라운드와 결승 라운드의 순위

준결승 또는 결승 라운드에서 선수들이 8.19 항을 적용한 순위 결정 후에도 동률일 경우, 관련 선수들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A) 준결승 라운드에서 동률일 때 두 개 이상의 출전그룹으로 치러지지 않고, 한 개의 출전그룹으로 치러진 예선 라운드의 순위에 한해 카운트백을 적용하여 관련 선수들의 순위를 결정한다.
- B) 결승 라운드에서 (또는 결승 라운드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준결승 라운드에서) 동률인 경우 카운트백을 적용하며, 연관된 카운트백을 적용한 후에도 1위, 2위, 3위의 선수가 동률인 경우, 동순위를 부여한다.
- C) 단 전국체전과 같이 반드시 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는 각각의 선수들의 최고 성적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결정한다. ★
- 1) 첫 번째 시도에서 얻은 완등의 수, 두 번째 시도에서 얻은 완등의 수....
 - 2) 1)의 방법으로 동률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시도에서 얻은 존 포인트의 수, 두 번째 시도 횟수에서 얻은 존 포인트 수.

8.21 종합순위

종합순위는 본 규정 4.10 항과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A) 결승 라운드의 순위를 가진 선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 B) 준결승 라운드의 순위를 가진 선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 C) 예선 라운드의 순위를 가진 선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예선 라운드에 두 개의 출전그룹으로 치러진 경우, 이들의 종합순위는 각 그룹의 순위를 병합하여 결정하며, 순위가 같은 선수는 동률로 처리한다.

기술적 사고와 이의 신청

8.22 공식 비디오 기록과 심판장의 재량에 따라 공식적인 방송 비디오 기록만을 기술적 사고와 이의 신청을 심의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공식 비디오 기록은 최소한 다음을 기록(포함)해야만 한다.

- A) 각 볼더의 출발 홀드
- B) 각 볼더의 존홀드
- C) 각 볼더의 완등
- D) 등반표면의 모든 경계 표시

8.23 선수, 팀 임원 또는 볼더 심판은 기술적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선수가 이어서 다음 시도를 하기 전에 종목심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만 한다. 다음 로테이션이 시작된 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와 관련된 어떤 기술적 사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8.24 심판은 필요한 경우 루트세터와 협의하여 기술적 사고의 발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기술적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 A) 출혈을 멈추기 위해 선수의 시도 중단

8.25 이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A) 관련 볼더에서 선수에게 추가 시도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 1) 관련 선수가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다.
 - 2) 팀 임원이 신청한다면, 서면으로 해야만 하며,
 - 1), 2)의 경우 이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 a) 예선 또는 준결승 라운드의 경우, 다음 로테이션이 끝나기 전에 제기하여야만 한다.
 - b) 결승 라운드와 관련하여, 다음 선수의 시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기해야만 한다.

- B) 영향받은 선수에게 관련된 볼더에서 추가 시도할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만 하며 이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예선 라운드 또는 준결승 라운드에 대한 이의 신청은 공식 결과 발표 후 5분 이내에
 - 2) 결승 라운드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관련 선수의 예비결과 게시된 후에 즉시 (또는 예비 결과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공식 결과 게시 후 즉시)

8.26 8.25(A) 관한 이의 신청 또는 확정된 기술적 사고는 다음을 따른다.

- A) 다음 로테이션이 시작되기 전에 해결되거나 결정될 수 있다면, 관련 선수에게 시도를 계속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다음을 따른다.
- 1) 선수가 계속하기로 선택한다면, 기술적 사고나 이의 신청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2) 선수가 계속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심판장은 다음을 고려하여 결정한 적절한 시점에 선수가 다시 시도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a) 영향을 받은 선수에게 적합한 회복 기간
 - b) 다른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c) 전체적인 경기 일정
- B) 다음 로테이션이 시작되기 전에 해결되거나 결정될 수 없는 경우
- 1) 기술적 사고의 경우에 한하여, 문제가 해결/결정될 때까지 영향을 받는 선수와 이전 볼더의 모든 선수에 대해 경기를 중단한다.
 - 2) 문제가 해결/결정되면, 관련 선수들은 심판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시도한다.

각 경우에 관련 선수들은 심판장의 지시에 따라 시도를 재개한다. 기술적 사고의 해결/결정 전에 경기지역을 이탈한 선수는 재시도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8.27 기술적 사고를 겪었거나 이의 신청 이후 등반을 재개할 때는

- A)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추가시간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남은 시간 동안만큼 시도할 수 있다. (더 이상 “최소 2분” 규칙 없음)
- B) 기술적 사고나 이의 신청 후 허락되는 시도는 다음과 같다.
- 1) 기술적 사고의 경우, 이전 시도의 연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2) 이의 신청이 결정된 경우, 상황에 따라서 다음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 a) 이전 시도의 연장이거나
 - b) 새로운 시도의 시작

9. 스피드

일반

9.1 스피드

A) 스피드 경기는 다음의 요구를 충족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 1) WORLD CLIMBING 스피드 라이선스 규정이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되고 WORLD CLIMBING 또는/그리고 대산련 승인한 인공구조물에서 개최해야 한다.
- 2) WORLD CLIMBING 또는 대산련이 승인한 전자 계측시스템을 사용하여 개최해야 한다.
- 3) WORLD CLIMBING 또는 대산련이 승인한 자동 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선수를 위에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최해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은 두 명의 확보자가 로프를 제어하는 톱로핑 방식을 승인할 수 있다.

B) 스피드 경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조직되어야 한다.

- 1) 예선 라운드는 단일단계로 구성되고, 왼쪽 “A”와 오른쪽 “B”가 짝을 이루어 두 개의 레인에서 개최해야 한다.
- 2) 예선 라운드에서 유효한 등반 시간을 기록한 선수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2~4개로 구성된 패자 탈락 단계(토너먼트)를 개최해야 한다.

※ 결승 진출자가 3인 이하인 경우 ★

☞ 3명인 경우

- a) 진출자의 예선성적이 2위, 3위가 먼저 경기를 한다.
- b) a)의 승자와 예선 1위가 1, 2위 순위 결정전을 한다.

☞ 2명인 경우

- a) 유효성적이 있는 두 명의 선수만 1, 2위 순위 결정전을 하나 3위 순위 결정을 위해 심판장 재량으로 추가경기를 할 수 있다.

☞ 1명인 경우

- a) 결승전 없이 예선성적으로 순위를 정하나 2, 3의 순위 결정을 위해 심판장 재량으로 추가경기를 할 수 있다.

C) 예선 라운드 전에 연습 시간을 두도록 한다. 이 시간과 준비는 테크니컬미팅에서 공지되어야 한다.

9.2 대한산악연맹은 다음 부문에 대해 국내 기록을 공식적으로 기록한다.

A) 남성 (16세, 고등부 이상 선수)

B) 여성 (16세, 고등부 이상 선수)

9.3 국내 기록은 경기 중 만들어진 기록만 인정(즉 연습 기간이나 경기 중이 아닌: 포기 또는 취소된 레이스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되며 다음의 조건을 따른다.

- A) 국내 기록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WORLD CLIMBING](#) 및 대산련에 의해 인증된 등반벽, 홀드, 계측시스템, 오토빌레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 B) 대산련에 의해 기록경기로 지정된 경우
- C) 대산련에 의해 심판장과 감독관이 조직/운영하는 경기인 경우
- D) 대회 조직위가 국내 규정에 따라 관련 선수의 반도핑 검사를 완료하고 이상이 있음을 대산련에 보고 한 경우 해당 대회에서 실격을 받은 선수의 기록은 삭제된다.

9.3A 국내 기록은 별첨으로 관리 중인 스피드 국내기록 관리 규정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안전

9.4 각 선수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심판장은 선수가 착용한 안전벨트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선수의 등반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선수는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다.

출전 순서와 정원

9.5 결승 라운드의 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예선 라운드에서 유효시간을 가진 선수의 수	결승 정원
4-7	4
8-15	8
≥ 16	16

(주) 심판장 재량에 따라 4명 미만의 선수가 유효시간을 가진 경우에도 결승 라운드를 운영할 수 있다.★

9.6 출전 순서

- A) 예선 라운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 1) 레인 A: 무작위로 한다.
 - 2) 레인 B: 레인 A와 순서는 같지만, 반으로 나누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출전 선수가 20명 또는 21명이라면, 레인 A에서 11번째 시작하는 선수가 레인 B에서 1번으로 출전한다.

B) 결승 라운드의 각 단계는 부록2에 명시된 대로 해야 하며, 각 시합에 대해 레인 할당도 명시해야 한다. 예선 라운드 이후 2명 이상의 선수가 동률일 경우, 결승 라운드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들의 출전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한다. 예선 라운드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이의 신청절차가 완료된 후 결승 라운드 첫 번째 단계의 출전 순서와 대진표가 확정된다.

경기 절차

9.7 연습 시간 및 예선경기가 끝난 후 각 루트를 청소해야 한다.

9.8 심판장은 각 루트당 등반 제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9.9 연습 시간이 진행되는 경우, 선수는 각 루트에서 1회 연습을 할 수 있다. 선수의 부정 출발이 발생해도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A) 연습 시간은 부정 출발 신호와 계측장비의 시연을 포함하도록 한다.

B) 연습 시간은 예선 라운드와 같은 형식을 취하도록 한다. 예선 라운드에 참가자격이 있는 선수는 공식 예선 라운드 출전 순서에 따라 연습한다. 심판장은 대회 전반 상황을 반영하여 연습 시간의 타이밍과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9.10 예선 라운드

A) 각 선수는 다음을 제외하고 각 레인에서 한 번 시도할 수 있다.

1) 부정 출발 또는 기술적 사고로 재 등반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도가 허용된다.

2) 대기 구역에서 선수를 호명했을 때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레이스는 관련 선수 없이 진행한다.

B) 선수는 두 레인에서 시도를 완료할 때까지 심판장 또는 심판의 지시대로 경기지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

C) 예선 라운드 첫 번째 레이스에서 부정 출발한 선수는 두 번째 레이스에 출전하지 못한다. 부정 출발을 하지 않은 선수는 파트너 없이 재시도할 수 있다. 이 시도는 계획된 다음 레이스 전에 진행한다.

9.11 결승 라운드

A) 결승 라운드는 승자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패자 탈락 방식 레이스로 구성된 일련의 단계로 열려야 한다. 각 단계와 레이스의 수는 결승 라운드의 정원에 의해 정해진다.

B) 결승 라운드 경기에서, 승자는 다음과 같이 정해야 한다.

- 1) 한 선수가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 자격이 없는 경우, 다른 선수가 승자이다. (그리고 경기는 진행되지 않는다.)
 - 2) 두 선수가 출발하는 경우
 - a) 두 선수가 모두 유효시간을 기록한 경우, 가장 낮은 유효시간을 기록한 선수가 승자이다.
 - b) 한 선수가 부정 출발했을 경우, 상대 선수가 승자이다.
 - c) 두 선수가 모두 동일한 유효시간을 기록하거나 유효시간이 없는 경우(부정 출발 제외) 관련 레이스는 재 경기한다. 재경기 이후에도 두 선수가 동률이면 두 선수의 그 대회에서 얻은 제일 좋은 기록을(연습기록 제외) 비교하여 동률을 분리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두 선수 모두 출발에 실패한 경우 재경기하지 않는다.
 - 3) 두 선수 모두 출발하지 않은 경우, 두 선수 모두 승자로 기록되지 않는다.
- C) 선수 소개는 준결승 단계(4강전)의 첫 번째 레이스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D) 준결승 단계에서 패배한 선수들은 3위와 4위 레이스(“**Small Final**“)를 해야 한다. 부문별 3위 4위 레이스를 통합하여 경기할 수 있다.
- E) 준결승 3위와 4위 레이스를 완료 후 1위와 2위 경기(“**Big Final**“)를 진행한다. 결승에서 부정 출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승자는 추가 시도를 선택할 수 있다.
- F) 선수는 탈락할 때까지 심판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지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

등반 절차

9.12 모든 경기는 지정된 출발지시자가(심판) 개시하는 명확히 들리는 신호로 시작해야 한다. 출발지시자는 선수가 볼 수 없는 위치를 선택해야 한다. 출발신호 위치는 모든 선수로부터 가능한 같은 거리에 있도록 한다.

9.13 경기는 아래의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 A) 루트의 출발을 위해 호명이 되면, 각 선수는
- 1) 10초 이내에 본인의 출발 패드 위치를 조절해야 한다. 이 시간 동안 선수는 발이 바닥을 떠나지 않고 루트의 첫 번째 홀드를 만질 수 있고, 이때 반드시 지면에 있는 상태여야 한다.
 - 2) 확보자는 다음 사항을 진행하고 확인해야 한다.
 - a) 선수들이 안전벨트를 적절하게 착용했는지
 - b) 선수들의 안전벨트에 자동 확보시스템 또는 톱로핑을 안전하게 연결했는지
 - 3) 출발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등반벽 앞 2m 이상 떨어지지 않은 집결 위치로 이동하여 등반벽을 등지고 선다.
- B) ‘선수 위치로’ 라는 구령에, 선수들은 지체 없이 양손과 한 발을 출발 홀드에, 다른 한 발

을 출발 패드에 위치하고 출발 준비를 한다.

- C) 선수들이 출발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출발지시자는 ‘준비’ 라고 말하고 뒤따라 계측 시스템을 개시해야 한다.
- D) 출발지시자가 ‘선수 위치로’ 구령 이후, ‘준비’ 구령 이전에 어떤 이유로든지
 - 1) 출발지시자가 레이스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
 - 2) 선수가 출발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손을 들어 표시한 경우

출발지시자는 선수들을 집결 위치로 돌아가도록 지시해야 한다.

- E) 선수가 (A) 또는 (B)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어떤 행동으로든 다른 선수를 방해하면, 출발지시자는 선수들을 집결 위치로 돌아가도록 지시한다. 심판장은 이를 위반한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9.14 부정 출발

- A) 예선전에서의 어떤 레이스든, 출발지시자가 ‘준비’ 라고 선언한 후에
 - 1) 한 선수가 0.1초 미만의 반응시간을 가지면, 관련 선수는 부정 출발한 것으로 기록된다.
 - 2) 두 선수가 0.1초 미만의 반응시간을 가지면,
 - a) 가장 빠른 반응시간을 가진 선수가 부정 출발한 것으로 기록된다.
 - b) 두 선수의 반응시간이 같을 경우, 부정 출발은 기록되지 않으며 관련 레이스는 재등반한다.
- B) 결승 레이스에서, 출발지시자가 ‘준비’ 라고 선언한 후에
 - 1) 한 선수가 0.1초 미만의 반응시간을 가지면, 관련 선수는 부정 출발한 것으로 기록된다.
 - 2) 두 선수가 0.1초 미만의 반응시간을 가지면,
 - a) 두 선수의 반응시간과 관계없이 부정 출발은 기록되지 않으며 관련 레이스는 재등반한다.
- C) 부정 출발 발생시 계측시스템의 리콜신호와 함께, 출발지시자는 가능한 한 빨리 ‘STOP(등반 중지)’ 를 선언해야 한다.
- D) WORLD CLIMBING 또는 대산련이 승인한 전자 계측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반응시간의 유효성은 절대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9.15 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 A) 다음의 경우에 관련 선수의 유효시간을 기록한다.
 - 1) 상단의 타이밍 패드/스위치를 손으로 치고
 - 2) 타이머가 정지한 경우

관련 레이스에서 다른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B)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련 선수의 결과는 “추락(Fall)” 로 기록된다.

1) 타이머가 정지하지 않은 경우

2) 추락은 두 손이 홀더를 모두 놓친 상황에서 오토빌레이/로프에 하중이 실릴 때 추락으로 판정한다.

3) 등반을 위해 등반벽의 옆 또는 상단의 측면 또는 모서리의 사용

4) 출발 후, 몸 일부가 바닥과 접촉

9.16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는 루트의 시도 사이에 최소 휴식 시간은 5분이다.

A) 9.9(B)(2)(c)에 따라 동물을 가리는 경기가 개최되는 경우 또는

B) 9.12(A)에 따라 부정 출발이 발생한 후

판정과 채점

9.17 선수의 등반 시간은 출발신호와 선수시도 완료 사이의 시간으로 정의한다. 계측시스템은 다음 이 가능하여야 한다.

A) 각 선수의 등반 시간을 별도로 기록하고 표시해야 한다.

B) 최소 0.001초의 정확도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시간은 순위를 정할 목적으로 0.001까지 기록해야 한다.

2) 시간은 동물인 선수의 순위를 분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를 버림으로 하여 0.01까지 표시해야 한다.

순위

9.18 예선 순위

A) 라운드에서 두 레이스를 모두 참가할 수 없거나 실패한 선수의 라운드 결과는 순위가 없고 출발않음(DNS) 또는 결과없음(IRM)으로 표기한다.

B)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레이스에서 부정 출발한 선수들은 모두 그 라운드에서 마지막 순위가 된다.

C) 위의 (A)와 (B) 조건을 따르고, 진행한 경기에서 하나 또는 두 레이스 모두에서 유효시간을 기록하지 못한 각 선수는 부정 출발한 선수보다 상위이며 유효한 기록이 없는 모든 선수의 순위는 동일하다.

D) 위의 (A), (B) 및 (C) 조건을 따르고, 진행한 경기에서 하나 이상의 레이스에서 0.001 초의 시

간으로 획득한 유효시간을 기록하며, 각 선수의 기록 중 가장 빠른 유효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두 선수의 빠른 유효시간이 동일한 경우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1) 두 번째 유효시간이 있는 경우 두 선수의 시간을 비교하여 더 빠른 시간을 가진 선수가 승자가 된다.
 - 2) 한 명의 선수만이 두 번째 유효시간을 갖는 경우, 두 번째 유효시간이 없는 선수보다 순위가 높다.
 - 3) 두 선수가 두 번째 유효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두 선수의 순위는 동일 하다.
- E) 위 순위 절차 후, 동물로 결승 라운드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 동물이 깨질 때까지, 동물 선수들은 레인 A에서 재 등반을 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로 기록된 시간은 결승 라운드에 진출할 선수를 결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9.19 결승 순위

- A) 첫 번째 계획된 레이스에 출발할 자격이 없거나 출발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 라운드에서 마지막 순위이고, “출발 없음” (DNS) 또는 “결과 없음” (IRM)으로 그 결과를 표기한다.
- B) 결승 라운드의 각 단계에서 경기를 마친 선수는 다음의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진다.
- 1) 해당 단계에서 승자
 - 2) 해당 단계에서 패배한 선수들은 그 대회에서 얻은 제일 좋은 기록으로(연습경기 제외) 서로 상대적인 순위를 결정한다.
 - 3) 위 A) 항보다 상위로, 모든 선수는 [9.11B\) 1\) 또는 9.11B\) 3\)](#)에 따라 레이스의 패자로 간주한다.

9.20 종합순위

종합순위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A) 결승 라운드 순위를 가진 선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 B) 결승 라운드 순위가 없는 선수들은, 그들의 예선 순위의 순서에 따라서

결승 라운드에서 어떤 단계가 취소되는 경우, 대회는 마무리되고 경기의 종합순위는 최종 완료된 단계가 끝난 후 종합순위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완료된 단계의 승자는 그 대회에서 얻은 가장 좋은 기록을 비교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기술적 사고 와 이의 신청

- 9.21 공식 비디오 기록과 심판장의 재량에 따라 공식 방송 비디오 기록만을 기술적 사고 와 이의 신청을 심의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공식 비디오 기록은 최소한 다음을 기록(포함)해야만 한다.

A) 두 레인의 출발 자세

B) 두 레인 상단의 타이밍 패드/스위치

C) 각 레이스에서 두 명을 한 쌍으로 하는 선수들의 시도

9.22 참가선수 또는 팀 임원은 기술적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레이스가 시작하기 전에 심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

9.23 계측시스템의 성능과 관련된 기술적 사고에 대한 요청은 일부 분명하거나 체계적인 오류에 관련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9.24 심판장은 기술적 사고의 발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공식 비디오 기록 검토

2) 시스템 테스트 요구

3) 루트세터에게 관련 루트를 등반하고 상단의 타이밍 패드/스วิต치를 치도록 요구

B) 기술적 사고인 경우

1) 개선할 수 있고, 한 레이스에만 영향을 준 것으로 고려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선수들은 다시 시도한다.

2) 개선할 수 없고, 관련 단계의 모든 선수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고려되면, 심판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관련 단계와 이후의 모든 단계를 취소하거나

b) 그 단계를 버리고 재경기를 지시

9.25 이의 신청에서

A) 다음의 판정에 관한 이의 신청은 다음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한다. 이의 신청의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다음 레이스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의 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고 이의 신청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다.

1) 레이스에서 선수들의 시도

2) 결승 라운드 레이스의 결과

B) 선수의 공식 성적 또는 순위에 관련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하고

1) 예선 라운드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공식 결과 발표 후 5분 이내에 해야 한다.

2) 결승 라운드와 관련해서는 관련 결과/순위 발표 후 즉시 해야 한다.

별첨

※ 스피드 국내 기록 관리 규정

1) 대산련 스피드 공인기록 관리 규정

- 반드시 [WORLD CLIMBING](#)이 승인한 전문시공업체가 시공한 벽이어야 한다.
- 위원회 시설물 승인 벽에서의 기록만 인증한다(시설물 인정 및 1회용대회 승인 포함)
대회전 시설물 적격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위원회 시설물 승인 후 4년 주기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4년부터 적용)
- 대산련 주관대회 또는 감독관파견이 되는 대회
- 계측기는 대산련이 보유 중인 계측기로 한다.
(국제공인 계측기는 사용할 수 있다)
- 한 대회에서 신기록 2번 이상 갱신 시 최고 기록 1개만 공인기록으로 인증한다.
- 각종 국제 대회에서([WORLD CLIMBING](#)) 수립한 기록도 인증한다.
- 위와 규정에 없는 내용은 [WORLD CLIMBING](#) 스피드 규정에 따른다.
- 국내 스피드 신기록은 클라이밍 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하여 그 기록이 인증된다.

2) 상기 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록을 공식 기록으로 인증한다.

- 남자기록
1. 2015년 전국체전-----춘천 10/18 (6.98초: 채성준)
 2. 2015년 아시아 선수권대회-----중국 Ningbo 11/21 (6.97초: 채성준)
 3. 2016년 전국 선수권대회 ----- 수원 5/15 (6.82초: 채성준)
 4. 2016년 세계대학선수권대회----중국 상하이 10/16 (6.69초: 채성준)
 5. 2017년 전국선수권대회-----춘천 5/14일 (6.53초: 이승범)
 6. 2017년 전국체전-----충북 수안보 10/21 (6.48초: 채성준)
 7. 2018년 전국선수권대회----- 춘천 5/5일 (6.12초: 이승범)
 8. 2018년 전국체전 ----- 전주 10/13 (6.10초: 이승범)
 9. 2019년 스위스월드컵-----빌라흐 7/5 (5.87초: 이승범)
 10. 2019년 전국체전 -----서울 용마산 10/6 (5.82초: 이승범)
 11. 2021년 전국선수권대회-----서울 용마산 5/21 (5.73초: 손 민)
 12. 2022년 미국월드컵-----솔트레이크시티 5/28 (5.58초: 신은철)
 13. 2022년 인도네시아월드컵 -----자카르타 9/24 (5.43초: 신은철)
 14. 2023년 서울 월드컵 -----용마산 4/28 (5.131초: 신은철)
 15. 2023년 중국 월드컵-----우장 9/23 (5.107초: 신은철)
 - [16. 2024년 중국 올림픽 예선전----- 상하이 5/18 \(5.09초: 신은철\)](#)
 - [17. 2025년 전국체전-----부산 10/17 \(5.08초: 신은철\)](#)

- 여자기록
1. 2015년도 전국체전-----춘천 10/18 (11.49초: 사솔)
 2. 2016년 전국 선수권대회 ----- 수원 5/15 (10.36초: 고정란)
 3. 2017년 전국 선수권대회 ----- 춘천 5/6 (10.13초: 박서연)
 4. 2019년 고미영컵 대회 ----- 서울 용마산 6/29 (8.709초: 박서연)
 5. 2019년 전국체전 -----서울 용마산 10/6 (8.22초: 박서연)
 6. 2021년 전국선수권대회-----서울 용마산 5/21 (7.96초: 정지민)
 7. 2022년 프랑스 월드컵 -----샤모니 7/09 (7.39초: 정지민)
 8. 2023년 서울 월드컵 -----용마산 4/28 (6.864초: 정지민)

9. 2023년 중국 마스터즈 대회 -----닝보 11/12 (6.695초: 정지민)
10. 2024년 중국 월드컵 -----우장 4/13(6.62초: 정지민)
11. 2025년 중국 월드컵 -----우장 4/26(6.337초: 정지민)

10. 팀 스피드

[WORLD CLIMBING](#)은 팀 속도 경기에 [WORLD CLIMBING](#) 규정 2018(v1.5)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9장, 10장

10.1 일반

10.1.1 이 규정은 9장 스피드 규정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10.1.2 각 팀은 같은 성별의 3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10.1.3 각 회원 연맹은 일반적으로 팀 스피드 경기에 최대 2팀까지 참가를 허용한다.

10.2 등반 구조물

10.2.1 등반 구조물과 루트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수정된 9.1항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i. 등반 구조물에는 15m 개별 경기를 위해 지정된 레이아웃과 치수로 설계된 레인(타이밍 장비의 위치 포함)이 최소 두 쌍의 평행한 레인(즉, 4개 레인)으로 있어야 한다.
- ii. 두 쌍의 레인에서 각각의 왼쪽 레인의 등반 구조물은 팀의 첫 번째 선수와 세 번째 선수에게 별도의 등반로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개의 상단 확보 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0.3 시간 측정

10.3.1 팀의 등반 시간은 출발신호와 세 번째 선수의 시도가 완료되는 사이의 시간이다. 유효시간은 팀의 모든 선수가 규정에 따라 그들의 시도를 완료한 경우에만 기록된다.

10.3.2 등반 시간은 [WORLD CLIMBING](#)/대산련이 승인한 전자 측정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10.3.3 각 레인에 있는 출발 지시기는(예: 녹색등을 사용함) 현재 등반 중인 선수가 시도를 완료했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는 인식 가능한 신호의 표시이다.

10.4 경기 절차

연습

10.4.1 가능하면, 예선 라운드 이전에 각 팀에게 연습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심판장은 테크니컬미팅에서 모든 연습 시간의 시점과 지속시간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연습 시간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예선(4레인)

10.4.2 예선 라운드는 일반적으로 두 쌍의 레인에 팀이 짝을 이루어 경기한다. (예를 들어 한 쌍의 레인에 한 팀) 부정 출발 혹은 기술적 사고 이후에 필요한 재경기를 제외하고, 각 팀은 유효한 예선 기록을 위해 한 번만 시도한다. 만약에 대회에 참가한 팀의 숫자가 홀수라면, 마지막에 등반하는 팀은 혼자서 등반한다.

10.4.3. 각 팀의 출전 순서는 무작위이다.

10.4.4 만약 동률의 결과로 결승 라운드의 정원을 초과한다면, 관련 팀들은 동률을 가리기 위해 왼쪽 레인에서 (Lane A) 한 번 더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에 의해 기록된 시간은 결승 라운드에 진출할 팀을 결정하는 것으로만 사용한다.

(주) 동률을 구분하기 위한 시도는 필요하다면 여러 번 진행될 수 있다.

결승

10.4.5 결승 라운드는 9.9항에 따라 폐자 탈락 단계로 열린다. (이 경우에 규정에서 '선수'에 대한 언급을 '팀'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10.5 등반 절차

출발

10.5.1 루트의 출발을 위해 호명을 받으면, 팀의 각 선수는 등반벽 앞 2m를 넘지 않는 집결 위치에 자신의 포지션에 따라 자리를 차지한다. 팀 내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등반 예정된 선수는 왼쪽 레인을 시도해야 하며 두 번째로 등반할 선수는 오른쪽 레인을 시도해야 한다. 확보자는 9.4항에 규정대로 각 선수의 안전벨트에 등반로프를 연결해야 한다.

10.5.2 팀 내에서 처음으로 올라갈 예정인 선수의 출발 절차는 9.10에 명시된 것과 같다.

10.5.3 팀 내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올라갈 예정인 선수의 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i. 각 선수는 앞선 선수가 시도하자마자 즉시 출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 ii. 앞선 선수가 시도를 완료했다는 것을 출발 표시기가 보여줄 때만 등반을 시작해야 한다.

부정 출발

10.5.4 10.5.5항에서 10.5.8항까지 적용할 수 없을 때는 9.12항으로 대체한다.

- 10.5.5 출발지시자의 의견에 따라, 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정 출발한 것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 i. 출발지시자가 '준비!'를 선언하고 출발신호가 있기 전에 팀의 첫 번째 선수가 출발 패드를 떠날 때
 - ii. 팀의 첫 번째 선수가 출발신호에 1/10초보다 빠른 반응을 보일 때
 - iii. 앞선 선수의 시도가 끝나기 전에 팀의 두 번째 / 세 번째 선수가 지면을 떠났을 경우

(주) 전자 계측시스템을 사용한 경우, 이 장비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장비의 결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전자 계측시스템에 의한 기록은 부정 출발이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선택된다.

10.5.6 팀의 첫 번째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하면, 출발지 시자는 즉시 두 팀 모두 중지시키고, 각 팀의 두 번째 / 세 번째 선수를 출발하지 못하게 한다.

10.5.7 팀의 첫 번째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하는 경우, 경기의 그 단계에서 그 팀의 유효시간은 없는 것으로 기록된다.

(주) 팀의 첫 번째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하는 경우, 부정 출발을 하지 않은 팀은 관련 단계에서 그들의 시도를 완료해야 한다.

10.5.8 팀의 두 번째 / 세 번째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하는 경우,

- i. 출발지시자(혹은 지정된 리콜러)는 부정 출발을 한 팀에 남아 있는 선수들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ii. 부정 출발을 하지 않은 팀은 중단 없이 계속 등반하며, 유효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
- iii. 그리고 부정 출발을 일으킨 팀은 경기의 그 단계에서 유효시간이 없는 것으로 기록된다.

(주) ii)인 경우, 등반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부정 출발을 일으키면, 이 팀도 중지된다. 이 팀이 유효시간을 기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경기는 허락되지 않는다.

시도의 완료

10.5.9 10.5.10항부터 10.5.12항까지 적용할 수 없을 때는 9.13항으로 대체한다.

10.5.10 팀의 각 선수는 계측기 패드/스위치를 손으로 쳐야만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 i.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선수의 경우에, 다음 선수를 위한 출발신호를 주는 것이다.
- ii. 세 번째 선수의 경우에, 계측기를 멈추는 것이다.

(주) 전자 계측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이 장비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장비의 오류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전자 계측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기록

은 선수가 스위치 패드를 쳐서 계측기가 멈추었든 멈추지 않았든 유효하다.

10.5.11 다음 중 하나의 경우, 팀의 시도는 실패로 간주되고 유효시간은 기록되지 않는다. 전자 계측 시스템이 고장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재경기 또는 추가 시도는 허락되지 않는다.

- i.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선수들이 다음 선수에게 출발신호를 주는 것을 실패
- ii. 세 번째 선수가 계측기를 멈추지 못했을 때

(주) 계측기 정지에 대한 개별적인 실패는 장비의 고장임을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주) 같은 루트에서 연속적으로 팀들이 계측기를 멈추는 데 실패하거나 시스템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면, 심판장은 시스템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에 검사 결과 고장임이 판명되면, 심판장은 영향을 받은 선수들에게 재경기의 허락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에 이 검사에서 고장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유지된다. 이러한 검사에는 루트세터가 루트를 등반하고 패드/스위치를 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주) 심판장은 장비 테스트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영상기록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들이 패드/스위치를 치는 영상기록은 장비 오류의 결정적인 증거로 선택될 수 없다.

10.5.12 만약에 팀의 어떤 선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팀의 시도는 실패로 간주되고 유효시간은 기록되지 않는다.

- i. 추락
- ii. 검은색 테이프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계선을 그어 구분된 벽, 홀드 또는 형상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다른 색상이 사용되었다면, 심판장은 이를, 테크니컬미팅에서 선수들에게 알려야 한다.)
- iii. 등반벽의 가장자리와 상단 모서리 사용
- iv. 출발 후 신체의 일부가 지면과 접촉
- v. 인공 보조물의 사용

10.6 각 라운드의 순위

예선

10.6.1 팀은 예선 라운드에서 얻은 기록 중에서 가장 빠른 유효시간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 만약에 팀이 유효시간 기록에 실패했다면, 가장 마지막 순위가 된다.

결승

10.6.2 각 팀의 순위는 9.17항에서 9.18항까지의 원칙을 따른다. (이 경우에 규정에서 '선수'에 대한 언급을 '팀'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10.7 (미적용)

11. ~~볼더-리드~~ <삭제 26.06.10>

12. 코리안컵 시리즈

일반조항

12.1 규정에 따라 대산련은 매년 각 볼더, 리드 및 스피드 경기에 대해 코리안컵 시리즈를 각 종목 당 최대 8개 대회를 승인할 수 있다.

12.2 각 코리안컵 경기는

A) 남자 및 여자 두 부문을 모두 그리고 최소한 하나의 종목을 포함해야 한다.

B) 개최에 따른 날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주말에 개최해야 한다.

2) 최대 개최 기간은 다음과 같도록 한다.

a) 1종목이 개최되는 경우, 1일

b) 2종목이 개최되는 경우, 2일

c) 3종목이 개최되는 경우, 2일

12.3 대산련은 대회 첫날 30일 이전에 각 경기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는 대회 요강을 발행해야 한다.

A) 대회 장소와 날짜

B) 대회 등록 마감일

C) 경기 일정

팀 등록

12.4 경기의 출전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A) 선수 : 대회 연도에 만 16세 이상이고 유효한 선수 등록을 필한 자

B) 팀 임원 : 유효한 등록증을 소지

12.5 시도연맹은 다음과 같은 수와 임무를 가진 적격인 팀 임원을 등록할 수 있다.

A) 팀 임원

1) 감독 1명

2) 종목 당 코치 2명

3) 공인의료인 또는 장애우 의료인 2명

B) 선수

- 1) 달력의 연도가 시작될 때 관련 랭킹 10위 이상의 선수
- 2) 미적용

각각의 경우에 최소 대회 첫날 15일 전까지, 이 날짜 이후 대회 첫날 5일 전까지, 시도연맹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팀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기존 구성원을 탈퇴시키고 새로운 구성원을 대체 투입) 그러나 등록된 팀원 수를 추가할 수는 없다.

12.6 각 부문 내에 등록된 참가자 명단은 등록일 다음 날까지 대산련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대회 절차

12.7 경기에서 각 이벤트의 형식은 이 규정의 관련 조항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A) 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1) 경기를 중지하고 재개하거나, 경기의 어떤 라운드를 버리고 다시 시작 (스피드 경기의 경우 결승 라운드의 어떤 단계)
- 2) 경기의 준결승 라운드나 결승 라운드를 취소 (스피드 경기의 경우 결승 라운드의 어떤 단계)

B) 기술감독관은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12.8 모든 선수와 팀 임원의 참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만 한다.

A) 경기장에 적어도 한 명의 팀 임원이 참가 (또는 팀 임원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한명의 선수)

B) 예외적인 상황에서 (예: 파업, 교통체증 등), 문자나 이메일로 기술감독관에게 전송 각 경우에

- 1) 대산련이 발행하는 대회 요강에 명시된 날짜 및 시간보다 늦는 경우, 또는
- 2) 만약 그런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대회를 위한 테크니컬미팅 시작 30분 전까지, 참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선수는 출전순서표에서 삭제한다.

12.9 대회 시작 전에 테크니컬미팅을 개최하여 확인해야 한다. 대회일정(및 웹사이트의 정보 변경)을 확인하고, 대회에서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파악하고,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모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테크니컬미팅을 개최하여야 한다.

출전순서표

12.10 각 대회 출전순서표는 이 규정의 출전에 관한 조항이 정한 대로 결정한다.

- A) 예선 라운드에 관련해서, 관련 대회 전 테크니컬미팅과 참가자 확인 후에
- B) 이외의 라운드에 관련해서, 이전 라운드의 공식결과 발표 후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 완료 후에

웹사이트, 공식게시판, 팀 임원, 대회 아나운서, 미디어에 복사본을 제공한다.

12.11 미적용

12.12 선수가 공표된 마감 시간까지 격리구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호출했을 때 선수가 없었을 경우 해당 선수는 그 라운드의 공식 출전순서표에 “DNS”(Did Not Start, 예선 통과 후 결승에 어떠한 사정으로 불참 시 표시)로 표시해야 한다.

대회 결과 및 순위

12.13 모든 공식결과는 대산련의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공식 게시판에 발표해야 한다. 팀 임원, 대회 아나운서, 미디어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복사본을 만들어야 한다.

12.14 각 부문

- A) 각 라운드에 대해
 - 1) 임시결과는 각 라운드의 진행 과정 동안에 발표하도록 한다.
 - 2) 심판이 서명으로 승인한 공식결과는 관련 라운드 완료 후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해야 한다.
- B) 관련 대회의 모든 라운드가 완료된 이후, 심판과 심판장이 서명한 모든 선수의 각 라운드의 최종순위와 결과를 보여주는 종합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2.15 각 코리안컵이 끝나면

- A) 랭킹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종목의 상위 40명의 선수에게 부록1에서 정한 점수를 부여한다. 동순위는 동률 선수들의 평균점수를 정수로 반올림한 점수를 부여한다.
- B) 미적용

코리안컵 결과와 랭킹

12.16 랭킹은 각 종목마다 부여된다.

A) 코리안컵 시리즈에 걸쳐 랭킹 포인트를 부여한 선수에 대해, 누적된 랭킹 포인트의 총수를 내림차순으로 하여 선수의 순위를 매긴다.

- 1) 각 종목에서 동률인 선수들은 그들 순위의 평균을 정수로 올림 하여 부여한다.
- 2) 각 부문별 코리안 랭킹은 시리즈에서 각 대회 후에 발표된다.

B) 미적용

12.17 코리안 랭킹에 포함되는 최대 결과 수는 다음과 같다.

A) 5회 이하의 대회가 조직될 때, 모든 결과가 포함된다.

B) 6회 이상의 대회가 조직될 때, 집계 결과 수는 대회 수보다 하나 적은 수가 된다. 선수가 더 많은 대회에 참가한 경우, “최악”의 결과 1회는 폐기해야 한다.

만약 시리즈 마지막 대회 이후, 두 명 이상의 선수가 1위에서 같은 랭킹 포인트로 동률일 경우, 다음과 같이 비교함으로써 동률을 분리한다.

- 1) 동률 선수들의 3개 종목의 우위를 비교한다. (어느 선수가 몇 종목 잘했는지) 그러한 비교가 동률을 깰 수 없다면,
- 2) 어떤 선수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비교함으로써 동률을 분리한다.
1위 대회의 수, 2위 대회의 수, 3위 대회의 수, 비교하여 최고 성적이 많은 선수를 높은 순위로 결정한다.

12.18 볼더, 리드, 스피드 각 종목에서 최소 2개의 월드컵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컴바인 랭킹(“적격한 선수”)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A) 적격한 선수가 어떤 종목에서든 2개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여 그 종목에서 2번의 최고 결과를 만든다면, 그 결과는 컴바인 랭킹을 산출하는 데 사용된다.

B) 적격한 선수의 종합 코리안컵 랭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 적격한 선수는 대회 수에 대해 랭킹 포인트를 받게 된다. 랭킹 포인트는 그 대회의 그들의 관련 순위를 단편적인 순위로 계산한 것과 같다. (무자격 선수의 관련 대회 종합 순위는 제거된다.)
- 2) 대회 수별 랭킹 포인트를 모두 곱하여 적격한 선수별로 랭킹 포인트 합산을 계산한다.
- 3) 적격한 선수는 랭킹 포인트 합산의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긴다.

메달과 상

12.19 코리안컵 경기 내에서 각 대회가 끝나면, 관련 종목별로 메달 수여식을 진행해야 한다.

- A) 모든 메달 수여식은 다음과 같다.
 - 1) 관련 종목의 결승 라운드와 같은 날에 개최해야 한다.
 - 2) 대산련 의전을 준수해야 한다.
- B) 1위, 2위, 3위 선수에게 금/은/동 메달을 수여해야 한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동률인 선수들에게 여러 개의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 C) 각 부문 내의 우승자에게 대회 트로피를 수여해야 한다.
- D) 상금은 대산련 이사회가 정한 금액(또는 대회 조직위가 합의한 금액 이상)에 따라 각 부문에서 6위 이상의 각 선수에게 수여한다. 동률인 선수들은 그들의 상금의 평균을 받는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기술감독관은 관련 선수 대신 대리인의 참여를 승인할 수 있다.

12.20 각 코리안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 완료

- A) 각 부문에서 코리안 시리즈의 전체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수여해야 한다. (즉, 코리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
- B) 랭킹 내에서 2, 3위 선수에게 플레이트를 수여한다.
- C) 미적용
- D) 랭킹 1위, 2위, 3위 선수를 발표한다.

개폐회식

12.21 심판장의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각 팀에서 최소한 한 명의 팀원이 개막식에 참석해야만 한다.

12.22 대회 조직위는 시상식을 구성한다.

- A) 결승 라운드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 B) 시상식에 대한 의전을 준수한다.
- C) 시상식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슬리퍼 착용 금지, 등)

12.23 미적용.

도핑 방지

12.24 모든 대회에서는 도핑 테스트를 해야 한다.

A) 모든 대회에서는 대회 규정을 준수하여 세계 반도핑 법 및 대한체육회 반도핑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B) 각 대회에서는 입상자에 한하여 최소인원에 대한 도핑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13. 미적용

14. 미적용

15. 미적용

부 칙 (2020.08.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6.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6.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3.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7.0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6.10.)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1] 코리아컵 포인트

순위	포인트	순위	포인트	순위	포인트
1위	100	16위	20	31위	0.95
2위	80	17위	18	32위	0.90
3위	60	18위	16	33위	0.85
4위	55	19위	14	34위	0.80
5위	51	20위	12	35위	0.75
6위	47	21위	10	36위	0.70
7위	43	22위	9	37위	0.65
8위	40	23위	8	38위	0.60
9위	37	24위	7	39위	0.55
10위	34	25위	6	40위	0.50
11위	31	26위	5		
12위	28	27위	4		
13위	26	28위	3		
14위	24	29위	2		
15위	22	30위	1		

[부록 2] 대진표 - 레이스/레인 페어링(스피드)

16명 선수

1/8 단계 16강		1/4 단계 8강		1/2 단계 4강		결승 단계 순위 결정전	
1	A 예선순위 #1 B 예선순위 #16	9	A 승자 레이스 1 B 승자 레이스 2	13	A 승자 레이스 9 B 승자 레이스 10	15	A 패자 레이스 13 B 패자 레이스 14 Small final
2	A 예선순위 #8 B 예선순위 #9	10	A 승자 레이스 3 B 승자 레이스 4	14	A 승자 레이스 11 B 승자 레이스 12	16	A 승자 레이스 13 B 승자 레이스 14 Big final
3	A 예선순위 #4 B 예선순위 #13	11	A 승자 레이스 5 B 승자 레이스 6				
4	A 예선순위 #5 B 예선순위 #12	12	A 승자 레이스 7 B 승자 레이스 8				
5	A 예선순위 #2 B 예선순위 #15						
6	A 예선순위 #7 B 예선순위 #10						
7	A 예선순위 #3 B 예선순위 #14						
8	A 예선순위 #6 B 예선순위 #11						

A,B : 레인
1~16 : 레이스
#1~#16 : 예선순위

8명 선수

1/4 단계 8강		1/2 단계 4강		결승 단계 순위 결정전	
1	A 예선순위 #1 B 예선순위 #8	5	A 승자 레이스 1 B 승자 레이스 2	7	A 패자 레이스 5 B 패자 레이스 6 Small final
2	A 예선순위 #4 B 예선순위 #5	6	A 승자 레이스 3 B 승자 레이스 4	8	A 승자 레이스 5 B 승자 레이스 6 Big final
3	A 예선순위 #2 B 예선순위 #7				
4	A 예선순위 #3 B 예선순위 #6				

4명 선수

1/2 단계 4강		결승 단계 순위 결정전	
1	A 예선순위 #1 B 예선순위 #4	3	A 패자 레이스 1 B 패자 레이스 2 small final
2	A 예선순위 #2 B 예선순위 #3	4	A 승자 레이스 1 B 승자 레이스 2 big final

[별첨 1] **WORLD CLIMBING** 부적격표



TABLE OF INELIGIBILITY

10/02/2021

	Chief Routesetter	Routesetter	Jury President	IFSC Judge	Aspirant Routesetter/Judge	Classifier
Competitor	No	No	No	No	Yes	No
Team Official	No	No	No	No	Yes	No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No	No	No	No	Yes	No
Member of a Continental Council Board	No	No	No	No	Yes	No
Member of a Commission/Committee	Yes	Yes	Yes	Yes	Yes	Yes
First Degree Relative of an athlete (1)	No	No	No	No	Yes	No
Member of a National Federation Board or National Federation Representative	No	No	No	No	Yes	No

(1) The ineligibility is only for the competitions with category where the athlete competes.

No – Incompatibility of duties
Yes – Compatibility of duties

부적격표(경기임원 자격부여 체크리스트)

	세터장	세터	심판장	종목심판	심판	연수생 (심판/세터)
선수	N	N	N	N	N	Y
해당대회 팀임원	N	N	N	N	N	Y
대산련 임원	N	N	N	N	N	Y
관련 위원회 위원	N	Y	N	Y	Y	Y
직계존비속	N	N	N	N	N	Y
국가대표 지도자	N	N	N	N	N	Y

※ 관련위원회 (심판-심판위원회, 루트세터-클라이밍위원회)

※ 부적격표는 대산련 주최/주관 대회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대회에는 권장한다.



~~기권 신청서 양식(안)~~

~~이 양식은 대회에서 기권을 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선수, 감독, 심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의료적 사유인지 비의료적 사유인지 기권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대 회 명		대회일사	
		대회장소	
선 수 명		소 속	
생년월일		연 락 처	
기권사유	<p>※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비의료적 사유 <input type="checkbox"/> 의료적 사유 ※ 기권사유 자세히 작성</p>		

~~20 년 월 일~~

~~_____ 선수 _____ (서명)~~

~~_____ 시도연맹 감독 _____ (서명)~~

~~_____ 대회심판장 _____ (서명)~~

아이스클라이밍 경기규정

[개정. 2020. 08. 18](#)

[개정. 2021. 06. 12](#)

[개정. 2022. 06. 24](#)

[개정. 2023. 06. 22](#)

[전부개정. 2024. 03. 20](#)

[개정. 2025. 07. 04](#)

[전부개정. 2026. 06. 10](#)

1. 행정

1. (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위원회

1.1 소개

1.1.1 (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 관련 위원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하 대산련 /KAF)의 정관 ‘제8장 41조’에 의거 설치된 대산련의 산하 조직이며, 대산련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각종 국내외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와 제반 사항에 대한 관리, 심의 및 운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클라이밍/ 경기력향상/ 선수/ 심판)

1.1.2 클라이밍위원회는 대한산악연맹으로부터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대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위임받은 조직이다.

1.1.3 국내/국제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대회 운영에 관하여 클라이밍위원회의 중요한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b) 대회를 조직 운영하기 위해서 KFA로부터의 지원을 받음
- c) WORLD CLIMBING & UIAA와 대한산악연맹의 규정과 규정에 부합되는 대회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

1.1.4 KAF가 승인하는 모든 경기는 해당 대회를 관장하는 규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조직, 수행 및 집행된다.

1.1.5 KAF의 조직 구조는 규정 및 정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1.6 클라이밍 경기의 조직과 관련하여 클라이밍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KAF가 승인한 대회를 조직/운영하기 위한 모든 신청서 접수
- b) 승인된 대회와 관련된 모든 질문의 처리
- c) 모든 대회 결과, 코리안 순위 및 종합 순위, 및 기타 공식 정보의 공식 간행물 발행
- d) KAF가 승인한 대회에 대회 임원의 파견

1.2 대회

1.2.1 KAF 가맹단체(또는 KAF가 특별히 인정하는 조직) 만이 KAF가 승인한 대회의 개최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1.2.2 KAF 회원만이 소속 선수를 이 대회에 참가 신청할 자격이 있다.

1.2.3 KAF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아이스 클라이밍대회는 다음과 같다.

- a) 연례 코리안 컵 시리즈 대회
- b) 전국 선수권대회
- c) 청소년 선수권 및 각종 지역대회

1.2.4 대회에 관한 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회에서 얻은 수집물 (사진, 영상, 기타 자료)의 사용 권한은 대산련에 있다.★
(※대산련 홍보 및 마케팅 규정 참조)

1.3 KAF 대회 임원

1.3.1 경기 임원: KAF 위원회는 KAF가 승인한 각 대회에 다음의 임원을 임명할 권한이

a)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장은 대회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모든 임원 회의를 주관한다. 이 권한은 미디어 및 주최자가 지명한 모든 사람의 활동을 포함한다. 긴급조치(특별한 사항)로 대회 전체를 취소할 수가 있는 유일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b) 기술 감독관 ★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KAF와 관련된 조직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선수 및 기타 사람의 등록 채점과 결과의 처리, 의료, 보도 그리고 기타 시설물)가 KAF 규정을 준수하게 할 권한이 있다. 기술 감독관은 이의 심판진 구성원이며, 대회 조직위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으며, 대회 심판진 회의에 자문 자격으로 참석한다. 대회 임원, 각 시도 임원, 선수를 대상으로 기술 회의를 주관한다. 심판장의 부재 시 그리고 심판장이 대회장에 도착하기 전에 기술 감독관은 경기

지역 내에서 대회의 조직에 관해 심판장을 대신해 활동한다. 기술 감독관은 긴급 조치의 적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예: 경기 형식의 조정). 이러한 조치들은 KAF가 별도로 명기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 감독관이 임명되지 않은 대회 또는 기술 감독관이 부재한 경우, 심판장은 기술 감독관의 직무를 대신한다.

- c) 심판장 - 심판장은 경기지역 (즉, 선수 및 그 외의 인원이 격리구역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등반 벽 전방의 경기구역을 떠나 경기장의 공공 지역으로 돌아가는 지점까지) 내에서 대회 판정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심판장은 일반적으로 판정 역할을 하지 않지만,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다른 심판위원에게 배정된 심판 업무를 할 수 있다. 심판장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KAF 대회 규정의 적용에 대한 모든 심판위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심판장은 기술 감독관과 함께 이의 심의 심판진의 구성원이다. 심판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대회 주최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심판장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종목 기술감독관이 심판장 업무를 대신한다.
- d) 종목 심판장 - 심판장을 보좌하여 경기의 판정 관련 업무를 한다.
- e) 심판 - 심판장을 보좌하여 대회의 모든 판정 업무를 맡는다.
- f) 심판 연수생 - 심판 자격 과정의 실기 과정에 있는 훈련생으로 보조 심판 역할을 한다.
- g) 루트 세터장 - 루트 세팅팀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심판장, 심판에게 조언한다.
- h) 루트 세터 - 루트 세터장을 보좌하여 대회의 모든 루트 세팅 업무를 맡는다.
- i) 2급 루트 세터 연수생 - 루트 세터 자격 과정의 연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보조 루트 세터 역할을 한다.
- j) 위의 경기 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활동이 가능한 인원이 지명된다.
- k) 위의 경기 임원은 지명된 경기에 선수로 참여할 수 없다.

※ KAF가 임명한 상기 임원은 관련 규정 및 KAF와 조직위 간 합의에 따라 경비, 숙박비 및 사례금을 받는다. (연수생 제외)

2. 시도 연맹

2.1 시도 연맹과 팀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

2.1.1 KAF와 직접 하거나, 시도 연맹 또는 조직위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AF가 승인한 대회와 연계된 모든 조직 및 인원이 다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KAF 시도 연맹의 책무이다.

- a) 아이스 클라이밍 경기의 홍보, 개발 및 행정이 KAF의 전적인 관리하에 있음을 인정한다.
- b) KAF의 서류 승인을 먼저 득하지 않고 KAF의 자체 합의와 대립하는 조직 (예, TV, 경기 후원자 등)과 재정 또는 기타 합의를 맺을 수 없다.
- c) 이 스포츠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하여 항상 KAF의 조언과 합의를 구한다.

2.1.2 KAF는 시도 연맹의 활동에 관한 자율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2.2 시도 연맹의 책무

2.2.1 KAF 시도 연맹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a) 국내에서 이 스포츠를 관리하고 장려하며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올림픽 헌장, 세계 도핑 방지 규약(WADA) 및 아이스 클라이밍 경기를 다루는 KAF 규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 b) 규정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의 원칙을 장려하고 선수와 임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 c) 선수나 임원이 금지된 물질 또는 약물의 사용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게 한다.
- d) 선수의 신체 발달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처방 또는 훈련은 금지한다.
- e) 선수나 팀 임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규정 및 규정의 조작 유혹에 강력히 대항하도록 한다.
- f) 선수들과 임원들은 다른 모든 선수, 임원들 그리고 스포츠 행위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한다.

2.2.2 모든 팀 임원과 선수들은 대회와 관련된 모든 자세한 정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3 참가 선수단 자격

2.3.1 KAF의 각 시도 연맹은 남, 여 선수 팀을 다음의 조건으로 대회에 참가시킬 수 있다.

- a) 선수의 선발, 추천 및 등록을 다루는 규정을 따른다.
- b) KAF의 재정 의무를 준수한다.
- c) KAF 징계 절차에 따른 판결과 관련된 어떤 결정 또는 그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이행한다.
- d)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당해 연도 대한 체육회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2.4 선수단 등록

2.4.1 각 시도 연맹은 KAF가 승인한 대회 요강에 명시된 선수단/임원 대회 참가 신청 마감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

2.4.2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단은 대회 요강에 따라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 마감 이후 참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지만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2.4.3 대회에 선수단/임원을 등록할 때, 시도 연맹은 모든 선수단/임원의 연락처 및 정보(숙소 세부 사항, 예정된 도착 날짜/시간)를 제공해야 한다.

2.5 (미적용)

2.6 수수료

2.6.1 모든 수수료는 회원단체 연맹의 단독 책임이며, 정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매년 KAF 정책에 발표된다.

2.6.2 대회 참가비는 선수 또는 팀 관계자가 주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6.3 이의신청 수수료: 이의신청 수수료는 이의신청을 접수할 때 심판장에게 직접 지불 하며, 이의 신청은 수수료를 받기 전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이의신청 수수료는 현금 또는 지정된 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2.6.4 모든 수수료(이의신청 수수료 등)의 금액은 매년 KAF가 결정하고 공표한다.
이의신청 수수료는 10만 원이다.

2.7 선수단 정원 - 선수 및 임원

2.7.1 선수: 선수단 정원은 대회의 유형별로 명시되어 있다.

(※예: 전국 선수권, 전국체전 등)

2.7.2 임원: 각 시도 연맹은 경기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선수단 임원을 최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 임원은 팀 등록 양식에 명단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역할 중 하나로 명시되어야 한다.

a) 감독 1명

b) 코치 2명

c) 자격이 있는 의료인 또는 준 의료인 2명

2.7.3 선수단 임원은 선수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격리구역을 출입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의 특별한 승인을 득하면 의료인을 포함한 선수단 임원은 격리구역 및 경기지역 내에 있는 선수에게 접근 및 대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선수는 즉시 실격된다.

2.7.4 팀 임원은 루트 관찰 시간 동안 선수들과 등반 벽에 동행할 수 없다. 팀 임원 또는 출전하지 않는 선수는 공식 루트 관찰 시간 동안 출전 선수와 어떤 방법으로든 의사 전달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선수는 즉시 실격된다. 심판장은 경우에 따라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2.8 선수단 의류 및 장비

2.8.1 등반 장비 및 의류: 각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 및 의류는 UIAA/KAF 장비 및 의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5장 (대회 중징계 절차)에 따른다.

2.8.2 팀 유니폼: 선수 및 팀 임원은 개폐회식에 참석할 때 팀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선수의 경기복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a) 시도연맹의 명칭

b) 시도연맹의 로고 (예, 대산련 로고)

c) a) b) 중 반드시 1개 이상은 표기되어야 하며 최소 크기는 50cm²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전국체전에서는 반드시 착용하며 위반 시 경고 카드가 발행된다.

2.8.3 선수의 등반 장비 및 의류

경기에서 아이스 엑스와 크랩폰을 제외하고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심판장이 특별히 다르게 명시하지 않으면, UIAA 또는 EN/KS 표준을 따른다. 선수는 경기 중에 경기화, 크랩폰, 아이스 엑스 (ICE BOX 규격에 맞아야 함) 및 의류를 다음 규정에 따라 착용한다. ★

a) 필수장비: UIAA공인 안전벨트, UIAA공인 헬멧, UIAA 'ICE BOX' 규격에 맞는 크랩폰 1벌, UIAA 'ICE BOX' 규격에 맞고 끈이 없는 아이스 엑스 2개, 장갑(손 전체를 가리는)과 선수의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의류(반바지 금지)스피드 경기에서는 안전을 위한 추가 보호장비로 눈 보호장비(보안경, 보안면), 팔꿈치 보호대, 무릎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다.

b) 경기복: 조직위가 제공한 경기복(또는 등번호)을 착용해야 하고, 자르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2.8.4 팀 의류 및 장비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회에서 실격된다.

3. 대회 조직 - 일반 규정

3.1 대회 시설

3.1.1 연맹/조직위는 최소한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a) 조직위 사무실: KAF 위원회 임원의 숙박 등 승인된 대회의 모든 측면을 담당하는 책임자와 사무국 책임자로 구성
- b) KAF 위원회 임원, 선수, 팀 임원, 조직 임원 및 기타 승인된 인원 VIP, 기자, TV 등을 위한 등록 시설
- c) 출전 순서 및 경기 결과와 같은 공식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공식 게시판.
- d) 규정에 따른 격리구역 및 시설
- e) 격리구역 등록: 격리구역의 보안과 격리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 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안을 유지
- f) 규정에 따른 격리구역, 준비운동(warm-up)/연습 벽과 관련 시설
- g) 등반 구조물에 인접한 이동 구역
- h) 독립 격리구역: 기술적 사고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반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설치. 동시에 둘 이상의 선수가 독립 격리구역에 있을 때, 선수 간에 엄격한 격리구역 규정을 유지할 대책이 있어야 한다.
- i) 경기구역은 등반 벽 전방으로 대회 임원, 조직위원, 공식 관찰 시간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등반하려는 선수, 승인된 TV 인원 및 기타 심판장이 특별히 승인한 인원으로 입장을 제한
- j) 높이 측정 및 결과 처리
- k) 의료진 및 의무실
- l) 도핑 테스트 시설
- m) 전용 라이브 스트리밍 및 해설 공간
- n)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결과 서비스실
- o) 비디오 재생 시설을 갖춘 대회 임원 사무실
- p) 보도실

3.2 안전

3.2.1 조직위는 격리/이동 구역, 경기지역, 경기장 내의 모든 안전 예방책을 유지하고 대회 진행에 관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3.2.2 심판장은 루트세터장과 협의하여 격리구역 및 경기지역 내의 안전 문제에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는 대회의 중지나 계속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심판장은 공식 요원 또는 다른 인원이 안전 절차를 어기려 하거나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그 임무를 박탈하고 격리구역과 경기지역으로부터 내보낸다.

3.2.3 경기구역 내 모든 사람은 루트 관찰 시간을 포함하여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선수들은 워밍업 벽에서 연습중 일 때에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 3.2.4 심판장, 심판 및 루트세터장은 안전 기준 유지를 위해 각 라운드 시작 전에 모든 루트를 점검해야 한다.
- 3.2.5 심판장, 심판 및 루트세터(장)는 대회 각 라운드 시작 전에 각 루트를 점검하여 안전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특히, 심판과 루트세터는 다음을 해야 한다.
- 모든 안전 장비와 절차가 UIAA/KAF 표준과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
(http://theuiaa.org/safety-standards/certified-equipment_UIAA 표준)
 - 안전을 위해 등반로프는 첫 퀵드로우에 고정되고, 심판은 루트세터와 협의하고 심판장의 승인을 받아 등반로프를 다른 확보 지점에 고정할지를 결정한다. ★
- 3.2.6 심판장 및 심판은 로프의 교환 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 3.2.7 루트를 완등 했거나 추락했을 때, 선수를 바닥으로 내린다. 이때 선수가 어떠한 장비나 구조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3.2.8 심판 및 루트세터는 모든 확보자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심판은 안전 기준을 위협하는 확보자 및 인원의 즉각적인 교체(필요하면 경기를 중지하고 기술적 사고를 선언한다)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3.2.9 심판은 경기 중 어느 때든지 조직위에 확보자의 교체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 교체된 그 확보자는 이후 해당 경기의 어떤 선수도 확보할 수 없다.
- 3.2.10 루트의 장비 설치하는 다음의 안전 조치를 준수한다.★
- 퀵 링크 및 퀵드로우 슬링: 대회의 각 라운드에 사용되는 확보 지점은 ‘퀵드로우’ 슬링과 선수가 로프를 통과하는 카라비너를 갖춘다. 퀵드로우 슬링과 확보 지점 사이의 연결은(중개 카라비너 없이) KAF/UIAA 승인 퀵 링크로 한다.
 - 퀵드로우 슬링 부분의 길이를 조절해야 한다면 퀵드로우 슬링과 같거나 더 나은 강도로 기계로 박음질 된 연속적인 테이프 슬링을 사용한다. 테이프 슬링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도 슬링을 매듭으로 조정하거나 짧게 해서는 안 되며, 퀵드로우를 체인(잠금 또는 비 잠금 카라비너로 서로 연결한) 할 수 없다. 매듭된 로프나 테이프 슬링은 사용할 수 없다.
 - 첫 번째 퀵드로우는 모든 경기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있어야 한다.
- 3.2.11 등반 전 확보자는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등반 로프는 안전매듭이 추가된 8자 매듭을 사용하여 각 선수의 안전벨트에 연결 한다.
 - 선수가 루트에서 시도를 시작하기 전에 확보자는 로프가 선수의 안전벨트에 고정되어 있는지, 안전벨트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되도록 이동 구역에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확보자는 선수가 루트 시작점으로 이동하기 전에 로프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리되었는지 확인한다.

- d) 리드 경기: 심판은 심판장 및 루트세터장과 협의하여 선수가 루트의 하단을 등반하는 동안 선수에 대한 추가 안전 조치를 위하여 확보 보조자를 두어야 할지 결정한다.
- e) 스피드 경기: 톱-로프로 등반하는 선수의 로프를 당기기 위해 확보자와 그 보조자를 두어야 한다.

3.2.12 확보자는 선수가 루트를 등반하는 동안 선수의 진행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을 확인한다.★

- a) 너무 팽팽해진 로프로 인해 선수의 동작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b) 선수가 로프를 확보 지점에 통과하려 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확보 지점에 로프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과도한 여유의 로프는 즉시 당긴다.
- c) 모든 추락은ダイナミック하고 안전하게 멈추어야 한다.
- d) 선수가 과도한 추락하지 않도록 한다.
- e) 선수의 추락을 멈출 때, 선수가 등반 벽의 중첩 부분의 가장자리 또는 등반벽의 형상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더욱 기울인다.

3.2.13 선수가 안전벨트에서 로프를 푸는 동안 확보자는 킥드로우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로프를 빠르게 당겨 내린다. 확보자는 선수가 등반 구역을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도록 한다.
★

3.3 선수 등록

3.3.1 참가 등록을 위해 모든 선수는 참가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마감된 시간에 참가 접수를 해야 하며, 대회 당일 참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2 팀 관계자가 대회에 선수를 등록하는 경우, 팀 관계자는 선수들에게 경기복(등번호)을 전달하고 기술 회의에서 전달된 정보나 특정 규정에 대해 알릴 책임이 있다.

3.4 출전 순서

3.4.1 첫 라운드의 출전 순서는 대회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 회의에서 공지되어야 한다.

- a) 상기 규정 3.8.11항에 열거된 인원에게 발행한다.
- b) 공식 게시판 및 기타 게시판에 게시한다.

3.4.2 출전 순서에는 다음 라운드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다.

- a) 각 선수의 경기 출전 순서(내림차순)
- b) 각 선수의 이름 및 소속시도
- c) 다음 라운드를 위한 격리구역의 개폐 시각
- d) 다음 라운드의 시작 및 종료시간
- e) KAF 위원회 또는 심판장이 승인한 기타 정보

3.5 기술 회의

3.5.1 기술 회의는 대회가 시작되기 전 또는 (일반적으로) 등록 직후에 개최된다.

기술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대회 일정(KAF 웹사이트의 정보에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한다.
- b) 예선 라운드의 출전 순서를 배포한다.
- c) 대회에서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확인한다.
- d) KAF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정보를 전달한다.

3.5.2 기술 회의 참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참석을 권장한다.

선수들은 대회와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완전히 숙지할 책임이 있다.

3.6 대회 루트의 비디오 기록

3.6.1 각 선수의 경기 시도는(경기 과정)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루트당 최소 하나(두대 권장)의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해야 한다. 카메라 운영자는 심판의 도움을 받는다. KAF 관계자 외에는 누구도 대회 영상 녹화의 어느 부분이라도 볼 수 없다.

3.6.2 고정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공식 영상 녹화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TOPO(루트맵)에 기록된 모든 홀드.
- b) 모든 확보 지점.
- c) 등반 표면의 파란색 구역 선과 빨간색 경계선.

3.6.3 이동식 카메라 조작자가 선수를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경우, 녹화 영상에는 시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도와 관련된 위의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3.6.4 모든 경기 녹화물은 대회 (참고, 판독) 및 KAF 교육 과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3.6.5 장비 고장(촬영/기록 없음)의 경우, 심판의 결정에 따른다.

3.7 의료

3.7.1 조직위는 대회 기간 내내(격리구역이 열릴 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참가자가 루트에서 자신의 시도를 완료할 때까지)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의료팀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참가자가 루트에서 시도하는 동안 부상이나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명의(가급적 2명) 자격과 장비를 갖춘 경험이 풍부한 의료팀이 대회 구역 내에 있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의료진은 격리구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7.2 선수, 임원, 일반 관중 및/또는 기타 개인에 대한 심각한 사고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실제로 준비하고 테스트해야 한다.

3.8 결과 처리

- 3.8.1 모든 경기 결과는 실시간 성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간 성적 제공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주최측과 현장 사항에 따라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 3.8.2 대회의 각 라운드가 끝나면 심판과 심판장은 즉시 모든 선수의 순위가 나열된 성적표를 제공한다. 이 사항을 확인 및 필요시 수정하여 심판과 심판장의 공식적인 서명 후에 발표한다.
- 3.8.3 경기 결과는 공식 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경기 결과 게시 사실은 모든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서도 공지되어야 한다.
- 3.8.4 잠정 결과가 발표된 후, 선수와 팀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10분 이내 제출해야 한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의신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의신청이 승인되면 공식 결과로 수정 발표해야 한다.
- 3.8.5 이의신청이 승인되면 심판, 심판장이 승인한 새로운 잠정 결과는 공식 게시판에 게시되고 새로운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데 추가로 10분이 주어진다.
- 3.8.6 성적표는 높이 측정 및 결과 처리팀이 작성하고 심판장이 서명한다. 모든 결과는 인쇄된 양식으로 하며, 수기로 된 결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 3.8.7 대회의 각 라운드의 결과는 KAF가 승인한 성적표 양식으로 인쇄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 a) 승인된 KAF 머리글과 로고
 - b) 대회명(예: 전국 선수권대회)
 - c) 대회 장소(예: 청송군)
 - d) 대회 유형(예: 리드 경기)
 - e) 대회 일자
 - f) 대회의 라운드 명 (예: 남자 결승)
 - g) 대회의 라운드가 하나 이상의 루트에서 진행될 때, 각 루트의 결과는 분명하게 식별되게 한다(예: 루트 A).
 - h) 주관하는 공식 임원(심판장 또는 심판)의 직위/임무, 이름 및 서명
 - i) 순위가 게시된 시각
- 3.8.8 각 라운드가 종료되면 선수들의 결과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 a) 오름차순으로 된 각 선수의 순위
 - b) 각 선수의 성
 - c) 각 선수의 이름
 - d) 각 선수의 소속 시도와 소속팀
- 3.8.9 대회가 종료될 때 최종 결과표에는 상기 규정 3.8.7 항에 열거된 모든 항목과 다음의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

a) 대회 각 라운드의 모든 결과

3.8.10 KAF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이외의 정보는 공식 결과표에 추가할 수 없다.

3.8.11 대회 각 라운드(결승 또는 재결승 라운드 포함) 결과의 승인 후, 모든 결과의 사본을 다음의 인원에게 즉시 발행한다.

- a) 심판장
- b) 심판
- c) KAF사무국 직원
- d) 팀 감독 또는 팀 감독이 없을 때 팀 지명 선수
- e) 보도진 사무실
- f) 공공 정보 안내자

3.9 시상식

3.9.1 대회 종료 후, 시상식은 KAF 의전을 따른다.

3.9.2 심판장의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문 입상자는 시상식에 참가해야 한다.

3.9.3 반려동물이나 어린이는 시상식에 참여할 수 없다.

3.10 경기 비용, 상금 및 상품

3.10.1 조직위는 대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KAF와 조직위 사이의 합의에 명시한 대로 상금 및 트로피의 준비와 시상을 책임진다.

4. 대회 일반 규정

4.1 경기의 종류

4.1.1 정의

- a) 리드-난이도: 선수는 규정에 따라 로프를 순서대로 킥드로우에 통과시키며 선등으로 등반하고, 아래에서 확보되며. 획득한 높이(트래버스나 루프 부분의 경우, 루트의 축을 따라 가장 먼 거리)로 각 라운드의 순위를 결정한다.
- b) 스피드: 선수는 톱-로프로 등반하고, 루트를 완료하는데 소요된 시간으로 각 라운드의 순위를 결정한다.

4.2 라운드의 계획

4.2.1 동일 종목에서 다음 라운드의 시작은 이전 라운드 종료 후 최소 2시간이 지나야 한다. 스피드에서는 라운드 간 휴식 시간을 따로 갖지 않는다.

(주) 조직위 재량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4.3 경기벽-난이도

4.3.1 루트의 수리: 심판의 지시에 따라, 루트세터장은 즉시 수리 작업을 진행한다. 수리가 완료되면, 이를 점검하고 심판장에게 수리 결과가 다음 선수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조언한다. 심판장의 경기 지속, 정지 또는 재개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

4.3.2 루트 세팅을 시작한 시점부터 대회 조직위에서 루트 관찰이 선수/임원에게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릴 때까지 대회전에, 구조물에 접근하거나 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해당 루트에 대한 정보는 공지된 운영 채널로만 해야 한다. 제작된 루트를 본 것이 적발되면 선수/임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4.4 경기벽-스피드

4.4.1 빙질로 인해 경기 진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심판장은 스피드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

4.4.2 스피드월은 얼음으로 구성해야 한다. 얼음이 새것이고 이전에 등반한 적이 없는 경우, 루트 세터에 의해 여러 번 사전 등반하여 얼음에 충분하게 홀(아이스툴을 사용할 수가 있는 구멍) 만들고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제거해야 한다.

4.4.3 시작 패드는 평평하고 단단한 수평 표면에 놓아야 한다. 경기에서는 패드에 얼음이 쌓이지 않게 하고 선수들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주지 않도록 표면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매 시도 전에). 출발 패드는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4.4.4 등반 구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 두께 5cm의 연속적이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빨간색 선을 사용해야 한다.

4.4.5 등반 루트는 얼음벽의 측면이 포함될 수 있다. 심판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측면 벽 사용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면 벽에는 빨간색 선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는 기술 회의에서 공지되어야 한다.

싱글 스피드

4.4.6 등반벽의 높이는 12~18미터로 한다.

4.4.7 단일 속도 등반 벽의 최소 너비는 2.5미터이다.

듀얼 스피드

4.4.8 등반벽의 높이는 12~15미터로 한다.

4.4.9 듀얼 스피드 경기는 길이와 비슷한 난이도로 두 개의 루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4.4.10 듀얼 스피드 클라이밍 벽의 각 레인의 너비가 2.5m여야 하며, 두 레인 사이의 거리는 50cm 간격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광고 배너 또는 색상일 수 있음)

4.4.11 루트는 선수들이 서로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주의를 분산시킬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5 경기벽의 유지보수

4.5.1 루트 세트장은 대회 각 라운드 동안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유지보수팀이 상시 대기하여 심판장(심판)이 지시하는 모든 유지보수 및 수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 절차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4.5.2 등반 구조물(ice/plywood) 청소: 심판장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부서진 얼음 또는 홀드의 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5. 대회 중 징계 절차

5.1 소개

5.1.1 심판장은 경기지역 내 (즉, 대회 등록 구역, 격리구역, 이동 구역, 등반 벽 앞과 등반 벽 등)에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5.2 선수

5.2.1 심판장과 심판은 대회 중 경기지역 내에서 아래에 명시된 대로, 선수가 일으킨 무질서의 문제와 대회 규정의 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권한이 있다.

- a) 비공식적인 구두 경고
- b) 'Yellow Card'를 제시하는 공식 경고

5.2.2 심판장은 다음의 같은 제재를 내릴 권한이 있다.

- a) 대회로부터 실격 - 'Red Card' 제시.
- b) 징계위원회에 즉시 회부되는 실격 - 레드카드 제시와 함께

5.2.3.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 제6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5.2.4 'Yellow Card' 또는 'Red Card' 발행 후 심판장은 신속하게 다음을 수행한다.

- a) 위반 사항 및 이에 대한 추가 제재 이행 여부를 기록한 KAF 징계 조치 양식의 서면 진술서를 심판장이 그 선수의 팀 감독(또는 팀 감독 부재 시 관련 선수)에게 전달한다.
- b) 심판장은 이 KAF 징계 조치 양식 문서의 사본과 규정 위반의 세부 보고, 증거 및 KAF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추가 제재에 대한 의견을 KAF에 제공해야 한다.

(주) 한 대회에서 Yellow Card를 2번 받은 선수는 그 대회에서 실격 처리된다. ★

5.3 팀 임원

5.3.1 팀 임원은 선수와 동일하게 여기며 그에 상응하게 처리한다.

5.3.2 선수 및 팀 관계자가 징계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제재는 누적된다.

5.4 기타 인원

5.4.1 심판장은 규정을 위반한 인원에 대하여 경기지역(격리구역 또는 이동 구역 포함)으로부터 즉시 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 요구가 이행될 때까지 경기를 일시 정지한다.

5.5 징계

경고 (Yellow Card)

5.5.1 ‘경고 카드’는 다음의 규정 위반에 발행한다.

a) 경기중 고의적인 지연 행위

i 리드

- A. 루트 관찰 후 격리구역으로 즉시 돌아가지 않는 행위
- B. 심판의 지시에도 이동 구역에서 경기지역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
- C. 심판의 출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ii 속도

- A. 반복적으로 출발 위치를 잡지 않을 때
- B. 듀얼 경기에서 첫 번째 레인 종료 후 두 번째 레인 이동 시 지나치게 지연할 때

b) 심판의 지시에 따라 출발하지 않을 때.

c) 심판이나 심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d) 비교적 가벼운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언어 또는 행위의 사용

e) 비교적 가벼운 비 스포츠적인 행동

f) 규정에 정한 출전 선수의 공식적인 복장 의무 위반 시

g) 조직위가 제공하는 의류 또는 배번을 훼손 및 수정하거나 미착용 시

h) 공식 행사나 기타 지정된 공식 행사에 불참

l) 경기 중 팀 유니폼에 시도연맹 표시가 없을 때(전국체전)★

5.5.2 미적용

5.5.3 미적용

실격 (레드카드)

5.5.4 다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추가 제재 없이 Red Card를 발급하고 선수는 즉시 경기에서 실격되며 더 이상의 제재는 없다. (모든 Red Card는 심판장이 발행한다.)

a) 허용된 관찰 구역 밖에서 루트 관찰하는 행위

b) 루트 등반 시작 시 올바른 장비 착용 불이행

c) 승인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d) 격리구역 또는 기타 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통신 방법의 사용

e) 장비 제한 상자에 맞지 않는 아이스틀 사용

f) 3위 이내 입상자의 시상식 불참

g) 같은 대회에서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발급

5.5.5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즉시 회부되는 실격

다음의 규정 위반에는 ‘Red Card’를 발행하고 즉시 경기에서 실격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또한, 연속하는 KAF가 승인하는 경기에 1회 출전하지 못하는 추가 제재를 받는다.

★

a) 경기지역, 격리구역 및 이동 구역에서 행해지는 규정 위반

- i.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시도할 루트에 대한 정보 수집
 - ii.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타 선수와의 정보 수집 및 대화
 - iii. 루트 등반을 준비하거나 등반을 시도하는 선수를 괴롭히거나 방해
 - iv. 공식 심판 그리고/또는 조직위 위원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
 - v. 선수 의류에 관한 규정 이행을 거부
 - vi. 위험한 행동 - 예: 경기 벽에서 아이스툴을 의도적으로 던지는 행위 또는KAF 관계자나 선수들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등
- b) 경기지역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위반
- i. 비 스포츠적인 행동 또는 경기에 심각한 방해
 - ii. 관련 위원회 임원, 조직위원, 팀 임원, 타 경기자 또는 일반인에 대한 비 스포츠적인 행동, 심각한 방해 및 독설적,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

6. 이의신청 절차

6.1 일반

- 6.1.1 선수의 판정 및 채점 또는 일반적인 규정 위반과 관련된 모든 이의신청은 다음으로 구성된 이의신청 심판진에 의해 결정된다.
- a) 심판장 및 기술감독관
 - b) 심판장이 판정에 관여한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 않은 심판
 - c)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심판
- 6.1.2 모든 구두 및 서면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공식 답변은 서면으로 한다.
- 6.1.3 모든 이의신청은 심판장 또는 기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6.1.4 모든 서면 이의신청에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 6.1.5 이의신청 심판진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

6.2 이의신청 처리

- 6.2.1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신청 심판진은 이의신청이 유효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 a)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이의신청이 유효하면 이의신청 심판진이 처리한다:
 - i. 이의신청 양식에 따라 선수 또는 팀 관계자가 제출한다.
 - ii. 영향을 받은 선수의 이름, 상황 설명 및 관련 규정 조항을 명시한다.
 - iii. 이의신청 수수료와 함께 제출한다.
 - iv. 해당 라운드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후 10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b)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무효이다. 이 경우 신청서와 수수료가 모두 반환된다.
- 6.2.2 유효한 이의신청은 이의 심판진에 의해 아래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 a) 가능한 한 빨리
 - b) 필요한 경우 공식 영상물 및 공식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용한다. 다른 영상은 사용할 수 없다.
- 6.2.3 이의신청 심판진은 아래의 방법으로 결정된다. (수정)
- a) 수락됨(승인):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결정적이고 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경우 수수료는 반환되고 결과가 수정된다.
 - b) 미확정(보류):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수수료는 반환하고 원래 판결은 유효하다.
 - c) 거부됨(미승인):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결정적이지만 이의신청을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원래 판결은 유효하다.

6.3. 구두 이의신청

- 6.3.1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선수 또는 팀 관계자는 구두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나 수수료를 요구(납부)하지 않는다.
최종 결과 발표 이후 이의신청은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의신청 수수료가 필요하다.

6.4 이의신청 수수료 ★

- 6.4.1 이의신청 수수료는 KAF가 매년 발행하는 수수료 표에 따른다.
※이의신청 수수료는 100,000원이다.
- 6.4.2 이의신청이 승인(수락)되면, 이의신청 수수료는 반환된다. 이의신청이 거부되면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7. 반-도핑 규정

7.1 채택

7.1.1 KAF는 스포츠에서 반도핑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7.1.2 KAF 도핑 관리의 기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스포츠 윤리를 세우고 보호한다.
- b) 선수의 신체 건강과 정신을 보호한다.
- c) 모든 선수가 동등한 기회를 얻도록 한다.

7.1.3 도핑 관리는 KAF경기 결과가 선수 체력의 공정한 반영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7.2 적용

7.2.1 세계 반 도핑 규약은 KAF의 승인 아래 조직하는 모든 경기에 적용된다.

이 경기에 출전하는 인원, 경기 참가를 준비하는 인원 또는 어떤 형태로든 참가하는 인원 (선수, 코치, 트레이너, 공식 요원, 의료 또는 비의료 인원)은 세계 반 도핑 규약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KAF 도핑 정책 및 절차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3 KAF내의 관할 조직체

7.3.1 아이스 클라이밍대회에서 이 규약의 적용을 위한 조직체는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KADA) 및 KAF 스포츠공정위원회이다.

7.4 금지된 물질의 종류 및 금지된 방법

7.4.1 금지된 물질의 종류 및 금지된 방법의 갱신된 목록은 WADA가 발행한 대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7.5 위반에 대한 처벌

7.5.1 도핑 위반은 대한 체육회 반도핑 정책과 절차 그리고 KAF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7.6 제재를 부과할 관할 조직과 이의신청의 권리

7.6.1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KAF 도핑 정책 및 절차의 위반 행동에 대하여 조치하는 전문 조직이다.

7.6.2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선수는 스포츠 중재 재판(CAS) 혹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PART 2 - TECHNICAL RULES

8. 리드(LEAD) 경기 규정

8.1 일반

8.1.1 리드 경기는 선수가 아래에서 확보되는 리드 등반이나 톱-로핑으로 한다.

8.1.2 리드 대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된다.

- a) 예선 라운드는 각 출발 그룹별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루트로 구성되며, 동영상 또는 시범 등반 후 경기를 진행한다.
- b) 결승 및 준결승 라운드는 하나의 루트로 구성되며, 루트관찰 실시 후 온사이트(On-sight)로 진행한다.

8.1.3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 a) 모든 라운드를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
- b) 모든/일부 라운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가 완료된 라운드의 결과로 선수의 순위를 결정한다.

8.1.4 각 라운드의 형식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라운드	루트 수	등반방식	등반 시간(분)	출전 순서	정원
예선	2개 이상	플래시	3:30~5:00	무작위	
준결승	1	온사이트	5:00~8:00	성적 역순	16명
결승	1	온사이트	5:00~8:00	성적 역순	8명

8.2 안전

8.2.1 각 루트는 추락으로 인해 선수 또는 제3자가 부상을 입거나 다른 선수의 활동을 방해할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2.2 선수는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단일 로프를 사용하여 아래에서 빌레이를 받아야 하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 a) 퀵드로우에 로프를 순차적으로 클립하는 리딩 방식
- b) TOP 위치에 고정된 확보물에 로프를 걸어서 선수를 확보하는 톱로핑 방식

8.2.3 등반 로프는 각 로프당 1명의 빌레이어가 확보하며, 확보 보조자를 둘 수 있다.

8.2.4 각 확보자는:

- a) 확보 장비를 사용하여 선수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b) 루트 등반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i. 선수의 안전벨트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 ii. 로프가 선수의 안전벨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 A. 리드 로프를 사용하여 안전 매듭이 추가된 8자 매듭을 사용하고 있는지
 - B. 탑 로프를 사용하여 두(2) 개의 나사식 게이트 또는 셀프락킹 카라비너를 서로 마주 보게 배치하고(로프가 여기에 부착된 상태), 또는 안전 매듭으로 고정된 8자 매듭을 사용하고 있는지
- iii. 루트에서 시도하는 동안 선수가 등반 로프에 적절한 여유를 항상 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로프가 너무 팽팽하여 선수의 움직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B. 선수가 로프를 킥드로에 연결하려고 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로프를 킥드로에 연결하지 못할 경우 로프를 즉시 회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 C. 모든 추락은 다이내믹하고 안전하게 정지되어야 한다.
 - D. 선수를 과도하게 추락하지 않도록 한다.
 - E. 추락 시 모서리나 돌출 부위에 선수가 충돌하여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2.5 안전을 위해 등반 로프는 항상 첫 번째 킥드로에 미리 고정되어야 하며, 루트세터장 과 협의하고 심판장의 승인을 받아 심판은 다른 킥드로를 통해 등반 로프를 미리 고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8.2.6 선수가 안전벨트에서 로프를 푸는 동안 확보자는 킥드로를 과도하게 흔들지 않으면서 최대한 빨리 로프를 당겨 내려야 한다. 확보자는 선수가 등반 구역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8.2.7 킥드로우 슬링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킥드로우 대신 동일 강도(또는 그 이상)의 연속(기계로 꿰맨) 테이프 슬링을 사용해야 한다. 슬링의 고리를 고정하기 위해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매듭을 사용하여 슬링을 줄이거나 조정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킥드로우 체인(잠금식 또는 비잠금식 카라비너로 서로 연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매듭이 있는 로프나 테이프 슬링은 허용되지 않는다.

8.2.8 심판은 안전상의 이유로 언제든지 선수의 등반을 정지시킬 수 있다.

8.3 정원

8.3.1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정원은 다음과 같다.

- a) 준결승 16명
- b) 결승 8명

8.3.2 각 라운드의 정원은 이전 라운드에서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정원이 채워지고 동률인 경우 예선은 모두, 준결과 결승은 카운트 백 절차가 적용된다. 카운트 백을 적용하고도 동률인 경우 모든 선수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

8.4 출전 순서

8.4.1 예선 ★

두 개의 다른 루트에서 열리는 예선전의 경우 선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 a) 대회 첫 라운드가 격리하지 않고 한 루트 또는 비슷한 난이도의 두 루트에서 개최되는 경우, 선수들을 무작위로 루트에 배정한다. 만약 선수들이 두 루트를 등반하는 경우, 무작위 명단은 유사한 수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두 그룹이 첫 루트 등반을 마치면 곧 루트를 바꾼다.
- b) 경기의 첫 라운드는 하나 또는 비슷한 두 개의 루트에서 열린다.
부분 선수의 수가 많은 경우 출전 그룹을 두 개로 나누고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루트를 등반한다. 모든 선수는 두 루트의 시도 사이에 동일한 휴식 시간을 가진다. 심판장과 루트세터장은 다음과 같이 그룹을 배정한다.
 - i. 2개의 출전 그룹으로 배정된 선수들의 출전 순서는 무작위로 정하며 이 순서는 유지된다.
 - ii. 이전 시즌의 코리안 컵 순위 또는 이전 대회 상위 10위는 두 그룹에 균등하게 배정한다 (예: 1위는 1그룹, 2위는 2그룹, 3위는 1그룹, 4위는 2그룹)
 - iii. 그런 다음 ii에서 먼저 배정된 선수들을 고려하여 시도 연맹을 대표하는 선수를 균등하게 나눈다.
 - iv. 선수가 한 명인 시도 연맹은 두 그룹 사이에 고르게 배정한다.
- c) 두 번째 예선 루트의 출전 순서는 첫 번째 루트와 같아야 한다.
- d) 기술 회의 후 예선 진행 순서에 따라 번호표가 배부된다. 선수는 번호표를 수령하고 출발 명단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e) 경기 일정에 따라 예선이 진행될 경우, 선수의 출전 시간이 안내되어야 한다. 공지 시간보다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선수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선수는 심판의 지시에 따라 등반해야 한다.★
- f) 경기가 시작되고 정해진 등반 시간에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다면 그 선수가 나중에 도착하더라도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8.4.2 준결승 및 결승

- a) 출발 순서는 이전 라운드 순위의 역순으로 한다.
- b)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한 후, 이전 라운드에서 동 순위로 진출한 선수가 있는 경우, 이들 간의 출발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한다.

8.4.3 최소 휴식 시간

- a) 2개 루트로 구성된 예선의 경우: 예선의 첫 번째 루트 시작과 동일 선수의 두 번째 루트 시작 사이에 최소 50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b) 2개 이상의 루트로 구성된 예선의 경우: 예선의 첫 번째 루트 시작과 두 번째 루트 시작 사이에 최소 50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단, 경기 일정이 부족한 경우 최소 시간 간격은 30분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 c) 같은 날 여러 라운드가 있는 경우, 라운드와 다음 라운드 시작 사이에 최소 1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8.5 비디오 영상 공개 및 시범 등반(예선)

- 8.5.1 모든 예선 루트의 비디오 기록(시범 등반을 기록한)은 준비운동 지역에서 한 루트 당 한 대의 화면을 통해 그 라운드의 시작 시간 최소 60분 전 또는 준비운동 지역이 개방될 때부터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한다.
- 8.5.2 모든 비디오 시연은 부록 12 - UIAA / KAF 비디오 시연 편집 지침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 8.5.3 예선 루트의 비디오 녹화본은 기술 회의 2시간 전부터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공지되어야 한다. 단 심판장의 판단으로 사전 게시도 가능하다. ★
- 8.5.4 비디오 녹화가 불가능한 경우, 첫 번째 선수가 시도하기 최소 30분 전에 각 예선 루트의 시범 등반을 해야 한다.

8.6. 격리구역(준결승 및 결승)

- 8.6.1 선수들은 주최 측이 제공한 격리구역을 이용해야 한다.
- 8.6.2 선수들이 격리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심판장이 한다.
- 8.6.3. 8.6.4항에 명시된 사람은 누구나 격리구역이 폐쇄되기 전에 격리구역을 출입할 수 있다.
- 8.6.4 격리구역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a) 경기 임원
 - b) 조직위 임원
 - c) 해당(관련) 라운드에 참여 자격이 있는 선수
 - d) 승인된 팀 임원
 - e) 심판장이 특별히 승인한 사람. 이 사람이 격리구역에 머무는 동안, 격리구역의 보안을 유지하고 다른 선수들을 간섭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요원이 동행하며 감독한다.
 - f) 어린이와 애완동물은 격리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 8.6.5 격리구역 폐쇄 후 격리구역 이탈
 - a) 선수는 이동 구역으로 호출될 때만 격리구역을 떠날 수 있으며, 주최 측 관계자와 동행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
 - b) 등록된 팀 임원은 언제든지 격리구역을 떠날 수 있으며, 다시 돌아올 수 없다.
 - c) 주최 측 관계자, 또는 연맹/조직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심판장이 위임한 사람은 언제든지 격리구역을 떠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 8.6.6. 선수들은 격리구역이 폐쇄 후 격리구역에 있는 동안 격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

8.6.7. 격리 규정

- a) 선수는 시도하려는 루트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얻을 수 있다.
 - i. 격리구역이 닫히기 전에 벽을 보고.
 - ii. 공식 관찰 시간 동안.
 - iii. 경기 중 루트를 등반하는 동안.
- b) 선수는 다음 사람들과만 연락할 수 있다.
 - i. 8.6.4에 따라 격리구역에 출입이 허가된 다른 사람들.
 - ii. 종목 심판
 - iii. 심판장
- c) 선수와 등록된 팀 임원은 통신이 가능한 기기(무선/GSM/인터넷)를 휴대할 수 없으며, 스마트 워치, 헤드폰, MP3 플레이어, 전자책 리더기 등 블루투스 연결 기기도 휴대할 수 없다. KAF/주최 측의 승인된 임원은 격리구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기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수/등록팀 임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심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8.6.8 격리 규정이 적용되는 라운드(준결승 또는 결승)에서 등반 중 선수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와 전달할 수 없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a) 루트에 대한 정보 또는 다른 선수의 이전 시도에 대한 정보를 선수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b) 시간을 알려주고 응원하는 것은 허용된다.

8.7 루트 관찰

8.7.1 루트 관찰은 격리구역이 있는 라운드(준결승 및 결승)에만 적용된다.

8.7.2 결승 라운드에서는 관찰 시간 시작 전에 선수들을 관중에게 소개한다.

8.7.3 선수들은 라운드 시작 전에 루트 관찰 시간을 갖는다.

8.7.4 팀 임원은 관찰 시간 동안 선수와 동행할 수 없다.

8.7.5 관찰 구역에 있는 동안 모든 선수는 격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

8.7.6 선수는 해당 루트 심판 또는 루트 세터에게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된 모든 정보는 모든 선수와 공유되어야 한다.

8.7.7 관찰 시간은 8분으로 한다.

8.7.8 선수는 관찰 시간 동안 지정된 관찰 구역 내에 머물러야 한다.

8.7.9 선수는 두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첫 번째 홀드를 만질 수 있다. 등반 구조물에 오르거나 장비 또는 다른 구조물(발판, 사다리 등) 위에 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7.10 관찰 시간 동안 선수는 쌍안경을 사용하여 루트를 관찰하고 손으로 스케치와 메모를 할 수 있다. 다른 관찰 또는 기록 장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8.7.11 관찰 시간 종료되면

a) 처음 두 선수는 즉시 이동 구역으로 이동하여 등반 준비해야 한다.

b) 다른 선수들은 즉시 격리구역으로 복귀해야 한다.

지나친 지연은 즉시 경고 카드(Yellow Card)를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지체하면 징계 절차에 따라 즉시 실격된다.★

8.8 등반 준비

8.8.1 모든 등반 장비와 사용되는 매듭은 선수가 등반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 및 기타 KAF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보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8.8.2 각 선수는 루트에서 등반하는 동안 착용할 장비와 복장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8.8.3 등반 중 선수는 심판이 볼 수 있는 번호표를 착용해야 한다.

격리구역 없는 라운드(예선)

8.8.4 각 선수는 시도 전에 안전벨트, 크랩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8.8.5 시도 호출 후, 선수는 승인된 매듭으로 로프를 묶고 지체 없이 루트에서 시도를 위한 모든 최종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격리구역이 있는 라운드(준결승 및 결승)

8.8.6 격리구역을 떠나 이동 구역으로 이동하라는 공식 지시를 받은 선수는 허가받은 임원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동반할 수 없다. 선수는 격리구역을 떠날 때 모든 휴대품을 지참해야 한다.

8.8.7 선수는 격리구역에서 이동 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기 임원 외 누구와도 의사소통해서는 안 된다.

8.8.8 이동 구역에 도착한 후 각 선수는 안전벨트, 크랩폰, 헬멧을 착용하고, 승인된 매듭으로 로프에 묶고, 루트 등반을 위한 모든 최종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8.8.9 대회 임원과 동행하지 않는 한, 선수는 이동 구역으로 떠난 후 격리구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

8.8.10 각 선수는 지시가 있을 때, 이동 구역을 떠나 벽을 등지고 경기장에 입장할 준비를 해야 한다.

- 8.8.11 이동 구역에서 격리 규정에 따라 등반을 위한 매듭을 묶고 준비를 마칠 수 없는 경우, 선수들은 등반 구역에서 벽을 등지고 준비를 마쳐야 한다.
- 8.8.12 선수가 완전히 준비되면(매듭을 묶고, 복장을 완전히 갖추), 30초 동안 추가 루트 관찰하고 등반을 시작할 수 있다.
- 8.8.13 선수는 이 30초 이내에 언제든지 등반을 시작할 수 있다.
- 8.8.14 선수가 30초의 준비시간이 끝날 때까지 등반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심판은 선수에게 “즉시 등반을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등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알려주고, 선수는 지체 없이 등반을 시작해야 한다.★

8.9. 등반 절차

- 8.9.1 출발 위치는 선수가 두 개의 아이스 엑스 끝을 모두 시작 지점에 두고 두 발이 벽에 닿았을 때(지면에서 떨어져)이다.
- 8.9.2 선수의 신체 모든 부분이 지면을 떠나는 방식으로 루트를 시작하는 경우, 지면과 벽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면과 벽을 구분하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 8.9.3 선수의 시도 및 등반 시간은 선수가 출발 위치에서 있고 아이스 엑스 하나가 출발점을 떠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 8.9.4 선수는 출발 지점에서 아이스 엑스를 들어 올리기(시작) 전에 지면으로 돌아올 수 있다.
- 8.9.5 각 루트에는 루트 세터장이 정한 제한 시간이 있으며, 이 시간 동안 선수는 루트를 시도할 수 있다. 경기 라운드별 최소 및 최대 시간 할당은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다.

라운드	최대 등반 시간
예선	3분 30초 ~ 5분
준결승 및 결승	5분~8분

- 8.9.6 루트 시도 중:
 - a) 선수는 퀵드로우에 순서대로 클립해야 한다(Z-클립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
 - b) 각 퀵드로우의 마지막 클립 위치는 해당 퀵드로우를 클립할 수 있는 마지막 홀드/존이다. 클립을 패스하거나 건너뛰는 경우, 루트세터장이 마지막 클립 위치를 결정한다.
 - c) 선수는 루트 시도 중 언제든지 지면으로 돌아가지 않는 하향 등반을 할 수 있다.
 - d) 선수가 퀵드로우에 로프를 클립하고 Z-클립이 발생한 경우, 선수는 Z-클립을 교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된 모든 퀵드로우(아래쪽 퀵드로우 포함)의 클립을 풀고 다시 클립할 수 있다. 단, 수정 후 모든 퀵드로우는 올바른 순서대로 클립 되어있어야 한다. Z-클립이 수정되지 않으면, 등반자의 점수는 올바른 순서로 클립 된 마지막 퀵드로우와 선수가 도달한 마

지막 홀드/존까지의 점수로 인정된다.

- e) 루트세터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특정홀드(의무 클립 홀드) 또는 (클립 위치보다) 이전의 홀드에서 클립을 해야만 한다,” 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 홀드와 관련된 지점은 명확하게 파란색 십자가로 표시되어야 하며 루트 관찰 시간 동안 언급되어야 한다. 선수가 해당 킥드로우를 클립을 하지 않고 지정한 안전 홀드를 지나면 등반이 종료되고 최종점수는 안전 홀드까지만 점수를 준다.
- f) 안전상의 이유로, 선수는 시도 중 아이스 익스 위에서 맨틀 동작(언더클링 자세에서 아이스 익스를 눌러 몸을 위로 밀어 올리는 동작
 - 설명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shorts/8aT9niS_mPM)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맨틀 동작을 사용하면 시도는 즉시 종료된다.
- g) 선수는 루트 시도 후, 루트 심판에게 루트 점수를 문의할 수 있다.

8.9.7 시도 종료: 선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시도는 성공으로 간주한다.

- a) 8.9.6에 따라 루트를 등반하는 경우.
- b) 리드에서:
 - i. 허용된 시간 내에 마지막 킥드로우(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를 클립하는 경우.
- c) 탑로핑에서:
 - i. 한 아이스 익스로 마지막 홀드 또는 지점(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을 통제 하고 다른 아이스 익스로 터치하는 경우.

8.9.8. 시도 종료: 선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시도는 실패로 간주한다.

- a) 추락
- b) 출발 후 신체 일부 또는 필수장비가 지면에 닿는 경우.
- c) 킥드로우를 순서대로 클립하지 못하는 경우(Z-클립을 수정하거나 루트 세터가 로프 드래그를 피하기 위해 클립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
- d) 관련 킥드로우를 클립하지 않고 의무 클립 홀드(Mandatory Clipping Hold)를 초과하여 등반하는 경우.
- e) 해당 경로에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f) 안전상의 이유로 심판에 의해 정지되는 경우.
- g)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불법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 i. 아이스 익스:
 - A. 벽이나 볼륨을 아이스 익스 피크로 타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B. 벽이나 볼륨의 나사 및 T-너트 구멍을 사용하는 행위.
 - C. 홀드를 타격하는 행위.
 - D. 다른 아이스 익스로 아이스 익스를 타격하는 행위.
 - E. 손 이외의 신체 부위로 아이스 익스를 사용하는 행위.
 - ii. 아이스 익스와 크램폰:
 - A. 패널 사이의 공간을 사용하는 행위.
 - B. 확보 지점을 사용하는 행위.
 - C. 아이스 익스를 서로 연결하거나 크램폰에 연결하는 행위(같은 홀드 또는 위치에서 사용하는 경우 아이스 익스의 피크가 서로 닿거나 교차할 수 있음).

D. 크램폰으로 홀드를 타격하는 행위 ★

iii. 신체 또는 장비의 일부:

A. 킥드로를 잡거나 킥드로에 올려놓거나 로프 및/또는 킥드로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행위.

B. 등반 구역 너머의 영역을 사용하는 행위.

C. 표시된 경로 경계를 벗어난 벽면의 어떤 부분이라도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행위. 실제 적색구역 경계선을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것은 허용된다.

(동영상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EAhG6VoDtGg>)

D. 벽이나 패널의 가장자리를 사용하는 행위.

E. 아이스 엑스나 크램폰으로 로프를 타격하는 행위 ★

8.9.9 표시된 루트 경계선 너머의 벽면은 최소 5cm 두께의 연속적이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벽 가장자리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8.9.10 선수는 루트 시도 중 언제든지 루트 심판에게 남은 시간을 질문할 수 있으며, 심판은 즉시 선수에게 남은 시간을 알려야 한다.

8.9.11 허용된 제한 시간이 종료되면 심판은 선수를 정지시켜야 한다.

8.10 성적

8.10.1 시도가 종료되면 점수가 부여된다.

8.10.2 시도가 성공한 경우, 선수는 TOP 점수를 받고 등반 시간은 중단된다.

8.10.3 시도가 실패한 경우, 선수가 해당 킥드로를 클립하지 않고 마지막 클립 위치를 통과하지 않은 한, 루트를 따라 그리고 루트의 등반 순서에서 아이스 엑스 또는 손으로 도달한 가장 높은 지점을 성적으로 부여된다.

8.10.4 선수가 관련 킥드로를 클립하지 않고 마지막 클립 위치를 통과한 경우, 점수는 8.9.6.b)항에 따라 마지막 클립 위치의 점수로 부여된다.

8.10.5 선수의 점수는 루트세트가 작성하고 루트세터장이 승인한 루트맵(topo)을 기반으로 한 채점 규정에 따라, 선수가 달성한 가장 높은 홀드/존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8.10.6 얼음 구간: 파란색 경계로 표시한 해당된 구역

(얼음 위의 파란 원은 선수들이 식별하기 쉽게 한 것이며 별도의 점수는 없다.)

8.10.7 측정(성적) 기준

a) 홀드: 루트에서 부여된 홀드의 번호

b) 아이스: 루트에서 부여된 존의 번호

8.10.8 홀드/존 점수는 적어도 하나의 아이스 엑스/손이 홀드/존을 통제하고 다른 아이스 엑스/손이 이전 홀드/존에서 제거되었을 때 부여된다.

- a) 선수가 다음 홀드/존 중 하나를 아이스 엑스/손으로 터치하는 경우, 점수에 0.1점이 추가된다.
- b) 선수가 다음 홀드/존 중 하나를 아이스 엑스/손으로 통제하고 하나의 아이스 엑스/손이 이전 홀드/존에 남아 있는 경우, 점수에 0.2점이 추가된다.
 - i. 두 아이스 엑스/손이 모두 이전 존이나 홀드를 벗어나는 점프의 경우, 0.2점은 적용될 수 없다.
- c) 선수가 추락 직전에 아래쪽 아이스 엑스/손을 놓는 경우, 위쪽 아이스 엑스/손의 점수가 인정된다.

★ 추가 설명 ★

- a) 얼음 구간: 파란색 경계로 표시한 해당된 구역의 번호
예) 4번째 구간=>4.0 4.1 4.2로 기록
- b) 드라이틀링 구간: 진행 순서에 의한 홀드 번호
예) 15번째 홀더=>15.0 15.1 15.2로 기록
- c) 두 개의 아이스 엑스/손이 동일한 존 또는 홀드에 있거나, 하나의 아이스 엑스/손만 존 또는 홀드에 있으면서 다른 하나는 이전 존 또는 홀드에서 벗어나면 존 또는 홀드의 점수를 준다.
예) 12번째 홀드 또는 존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12.0으로 기록
- d) 선수가 현재의 존 또는 홀드에 하나의 아이스 엑스/손을 통제하고 다른 아이스 엑스/손으로 다음 존 또는 홀드에 접촉만 했다면 결과에 현재 존 또는 홀드의 결과에 0.1점을 추가한다.
예) 12번째 홀드 또는 존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12.1로 기록
- e) 선수가 현재의 존 또는 홀드에 하나의 아이스 엑스/손을 통제하고 다른 아이스 엑스/손으로 다음 존 또는 홀드를 통제했다면 현재 존 또는 홀드의 결과에 0.2점을 추가한다.
예) 12번째 홀드 또는 존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12.2로 기록

8.10.9 채점은 **설명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Y1aLUWQ2n2s>)에서 확인할 수 있다.

8.10.10 종목 심판이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 경기(대회) 영상을 검토하기로 하는 경우, 선수에게 점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즉시 알리고, 영상을 검토한다.

8.11 순위

8.11.1 등반을 마친 각 선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 루트에서 순위가 부여된다.

- a) TOP을 획득한 모든 선수
- b) 각자 획득한 성적의 내림차순

8.11.2 준결승 또는 결승 라운드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 선수들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 a) 두 명 이상의 선수가 어느 라운드에서든 TOP 도달하는 경우, 시간이 더 빠른 선수가 더 느린 선수보다 앞선 순위가 된다.
- b)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전 라운드 성적으로 카운트백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8.11.3 예선 라운드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 동률이 된다.

8.11.4 모든 라운드에서, 해당 루트를 출발하지 않은 선수는 해당 라운드의 마지막 순위로 하고, 최종 성적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결과는 DNS로 표시된다.

8.11.5 순위 결정 방법

- a) 한 라운드에 모든 선수가 시도한 두(2) 개 이상의 루트가 포함된 경우, 각 등반자의 총 랭크 포인트(TRP)는 각 루트에서 획득한 랭크 포인트(RP)를 곱하여 계산한다.

$$TRP = RP1 \times RP2 \times RP3 \dots$$

- b) 동점이 없을 경우, 선수의 루트 RP는 단순히 순위이다. 예를 들어, 선수가 루트 1에서 3위, 루트 2에서 5위를 차지했다면, 그의 순위 포인트는 $RP1 = 3$ 이고 $RP2 = 5$ 이다.

2개 이상의 루트에서 진행되고 순위를 결정하는 예선전의 경우

: 각 루트에서 선수의 순위는 그 선수가 시도한 높이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예선전 각 루트의 순위를 곱하여 통합 점수가 부여되고, 그 점수에 따라 통합 순위가 결정되고 가장 낮은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위가 된다,

예: 선수가 첫 번째 루트에서 3위를, 두 번째 루트에서 5위를 할 경우
 3×5 로 계산하여 이 선수의 순위 점수는 15점이다.

- c) 루트에서 동점인 경우, 동점인 선수들은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평균 순위를 부여한다. 이 평균은 해당 루트에서 유효 랭크 포인트로 사용한다.

예시 1: 루트 1에서 세 명의 등반자가 동점 1위를 기록했을때

$$\text{평균 순위: } RP1 = 1+2+3/3 = 6/2=2$$

예시 2: 4명의 등반자가 2번 루트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을때

$$\text{평균 순위: } RP2 = 1+2+3+4/4 = 10/4 = 2.5$$

4명의 동률 선수에게 각 2.5점의 조정 순위가 부여 된다.

- d) TRP가 낮은 선수는 자격 순위에서 더 높은 순위가 된다.

★ 추가 설명 ★

하나의 라운드에서 모든 선수가 두 개의 루트를 시도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순위를 정한다.

- a) 기호의 뜻

Pt : 총점수

R1 : 루트 1 에서의 순위

R2 : 루트 2 에서의 순위

b) 순위를 만들기 위한 점수 계산

$$R1 \times R2 \times \dots = Pt$$

총점수가 낮을수록 더 높은 순위이다.

c) 동률 선수들의 순위 계산법

한 라운드에서 두 명 이상의 선수들이 같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선수의 순위는 한 루트에서 동률인 선수들의 평균 순위이다.

d) 예1: 루트 1에서 5명의 선수가 1위로 같은 순위라면

$$(1+2+3+4+5)/5=15/5=3 \text{ 이 5명의 선수의 점수는 모두 3이 된다.}$$

예2: 루트 2에서 3명의 선수가 4위로 같은 순위라면

$$(4+5+6)/3=15/3=5 \text{ 이 3명의 선수의 점수는 모두 5가 된다.}$$

8.11.6 다음이 취소되는 경우

a) 준결승: 예선 순위를 기준으로 결승 진출자가 결정된다.

b) 결승: 이전 라운드의 순위를 기준으로 대회의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8.12 기술적 사고

8.12.1 리드 경기에서의 기술적 사고란, 선수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 선수에게 불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시: a) 로프가 너무 팽팽하거나 느슨하여 선수에게 도움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경우

b) 홀드가 파손되거나 느슨해진 경우

c) 킥드로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8.12.2 얼음이 깨지는 것은 기술적 사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8.12.3 기술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심판이 기술적 사고를 지적한 경우:

i. 시도 중 선수는 등반을 계속하거나 기술적 사고로 인정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ii. 시도가 기술적 사고로 인해 실패했다고 판단될 경우, 루트 심판은 즉시 상황을 조사하고 기술적 사고로 인정할지를 결정한다. 인정될 경우 규정에 따라 재시도를 허용한다.

b) 선수가 기술적 사고를 주장한 경우:

i. 시도 중 선수는 사고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루트 심판은 즉시 판단을 내리고 그 결정은 최종이다. 기술적 사고로 인정되면 선수는 등반을 계속하거나 중단 후 재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인정되지 않으면 등반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재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ii. 시도가 실패하고 기술적 사고가 의심될 경우, 선수는 즉시 별도의 격리구역으로 안내되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 한다.

iii. 기술적 사고 및 홀드 오용 여부를 고려한 심판장의 결정은 최종이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c) 기술적 사고가 확정된 선수는 별도의 격리구역에 머물러야 하며, 주최 측 관계자 외의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격리구역에 들어가기 전, 선수는 기술적 사고 이후 즉시 재시도를

할지, 휴식 시간을 가질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소 휴식 시간은 사고 발생 전 등반한 홀드/존 당 1분이며, 최대 20분까지 허용된다. 정확한 시간은 심판장이 결정한다.

d) 기술적 사고를 경험한 선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 i. 등반을 계속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시도의 결과가 최종 성적으로 인정되며, 이 기술적 사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하다.
- ii. 재시도를 허용받은 경우, 모든 시도 중 가장 좋은 결과가 최종 성적으로 결정한다.

8.12.4 기술적 사고로 인해 홀드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 a) 동일한 홀드로 교체된 경우,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다.
- b) 다른 홀드로 교체되었으나 동작의 난이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라운드는 계속 진행되며, 이후 선수들에게 변경된 홀드에 대해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 c) 동일 난이도의 홀드가 없으면, 심판장이 해당 루트 또는 라운드를 재진행 하거나 취소할지를 결정한다.

9. 스피드(SPEED) 경기 규정

9.1 소개

9.1.1 이 규정은 아이스 클라이밍대회를 다루는 KAF의 일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9.1.2 모든 스피드 대회는 싱글 로프 또는 인증된 자동 빌레이를 사용하여 탑 로프로 등반해야 한다.

9.1.3 스피드 경기는 싱글 또는 듀얼 포맷 중 하나로 방식으로 진행한다.

9.1.4 스피드 경기는 예선전과 결승전의 두 라운드로 구성된다.

9.2 안전

9.2.1 등반 로프는 다음을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 a) 인증된 카라비너를 통한 자동 빌레이 장치.
- b) 게이트가 반대쪽에 배치된 두 개(2)의 나사형 게이트 또는 자동잠금 카라비너, 그리고 등반 로프는 8자 매듭과 안전 매듭을 사용하여 카라비너에 부착해야 한다.

9.2.2 톱로프 확보 방식은

- a) 각 로프당 2명의 확보자를 배치한다.
- b) 확보자는 선수가 등반 중 선수나 장비의 추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기벽 아래 쪽에 위치해야 한다.
- c) 바닥에 얼음이나 눈이 있는 경우, 확보자는 크랩폰을 착용해야 한다.
- d) 자동확보 장비(오토빌레이)를 사용 할 수 있다.

9.2.3 선수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낙빙, 장비와 신체접촉, 얼음 및 구조물과 신체의 충돌 등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9.3 경기 구성

연습경기

9.3.1 예선 라운드에 앞서 모든 선수에게 적어도 1회 이상의 연습경기를 제공해야 한다.

9.3.2 연습경기는 대회 루트 또는 유사한 품질과 난이도의 루트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심판장이 결정한다.

9.3.3 연습경기의 참여 여부는 필수 상황이 아니다. 선수가 연습경기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선수가 연습을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 a) 연습 기간이 시작되면 경기벽에 도착해야 한다.

- b) 연습경기의 출전 순서는 예선 출전 순서와 동일하다.
- c) 연습경기라도 선수는 2.8.3 a)에 명시된 모든 필수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9.3.4 얼음의 상태가 연습경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판장은 연습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적어도 연습경기 시작 1시간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경기 절차

9.3.5 선수들은 각 라운드 시작 전에 경기벽 앞에 도착해야 한다.

9.3.6 각 라운드의 출전 순서에 따라 경기가 진행된다.

9.3.7 선수들은 2.8.3.a)에 명시된 모든 필수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9.3.8 만약에 선수가 출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 선수는 시도할 수가 없고 성적은 DNS로 기록된다.

9.3.9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은 남은 라운드, 시도 또는 라운드 내 단계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에 완료된 라운드, 시도 또는 라운드의 결과로 순위가 결정된다.

9.3.10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은 최종 라운드의 형식을 듀얼방식에서 싱글 방식으로 대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라운드 시작 전에 내려야 한다.. 라운드가 시작된 후에는 형식을 변경할 수 없다.

등반 절차

9.3.11 심판으로부터 출전을 호명받은 선수는 한 발을 바닥(출발 패드/스위치)에 두고 적어도 한 발과 한 손이 얼음에 닿은 출발 자세를 취한다.

9.3.12 선수가 출발 자세에 있을 때, 심판은 “준비“후. 선수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심판은 “차렷!“이라고 외치고, 잠시(1~2초) 멈춘 후 “출발 버튼을 누른다. 수동 계측일 경우 “GO“라 한다.

9.3.13 선수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표시하면, 절차는 9.3.11항으로 재개된다.

9.3.14 싱글 루트일때는 “출발!“이라는 지시를 받으면, 각 선수는 출발 지시 후 3초 이내에, 루트에서 출발해야 한다. 속도 경기에서는 부정 출발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가 3초 이내에 출발 패드를 떠나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는 DNS로 기록된다.

국내 적용 듀얼루트일때는 “출발!“이라는 지시를 받으면, 각 선수는 출발 지시 후 바로 루트에서 출발해야 한다. 부정 출발은 9.3.17에 의하여 부정 출발로 결정되며, 부정 출발일 때 부정 출발한 선수를 제외하고 다시 경기를 진행한다. ★

9.3.15 1초가 지날 때마다 짧고 큰(분명히) 청각 신호를 사용해야 한다.

9.3.16 심판이 “준비(Ready)” 라고 물었을 때 선수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출발 지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9.3.17 부정 출발-국내 경기 규정으로 듀얼경기에만 적용 ★

어떤 레이스든, 출발 지시자가 ‘준비’ 라고 선언한 후에

- a) 한 선수가 0.1초 미만의 반응시간을 가지면, 관련 선수는 부정 출발한 것으로 기록된다.
- b) 두 선수가 0.1초 미만의 반응시간을 가지면,
 - I. 가장 빠른 반응시간을 가진 선수가 부정 출발한 것으로 기록된다.
 - ii. 두 선수의 반응시간이 같을 경우, 부정 출발은 기록되지 않으며 관련 레이스는 재출발한다.

결과

9.3.18 경기 결과는 모든 루트와 모든 라운드에서 선수들이 완등에 도달한 시간으로 기록해야 한다.

9.4 시도의 종료

9.4.1 선수가 “출발!” 지시 후 3초 이내에 출발 패드 떠났을 때 경기 시간이 시작되고, 9.4.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제한 시간 45초 이내에 타이밍 패드를 멈추면 시도는 성공으로 기록된다. (국내 듀얼경기경우 선수가 “출발!” 지시 후 바로 계측이 시작된다.★)

9.4.2 선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시도는 실패로 간주 된다.

- a) 추락: 추락은 등반벽과의 접촉을 1초 이상 잃는 것(공중에 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추락 판정은 심판의 재량에 달려 있다.
- b) 출발 후 신체의 어떤 부분이나 필수장비가 지면에 닿는 경우.
- c) 다음과 같은 불법적인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 i. 로프 또는 자동 빌레이를 사용하여 등반하거나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
 - ii. 루트의 표시된 경계를 벗어난 구역을 사용하는 경우(최소 두께 5cm의 연속적이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됨).
- d) 최대 허용 등반 시간인 45초를 초과하는 경우.
- e) 제9.7조에 명시된 기술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f) 제18조의 빙벽 등반 도구 규정을 따르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g) 국내용 듀얼경기에서의 부정 출발★

9.5 성적

9.5.1 성공적인 시도를 위한 선수의 점수는 아래에 설명된 대로 측정된 선수의 시간으로 한다.

9.5.2 시도에 성공하지 못한 선수의 성적은 DNF로 기록한다.

9.6 루트 시간 측정

9.6.1 두 가지의 성적 측정 시스템을 모두 사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두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루트의 최종 소요 시간은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 a) 0.01초 정확도의 전자계측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계측 시스템이 경기 중 고장 발생 시 경우 기술적 사고가 선언된다.
- b) 수동 계측장비는(백업 시스템) 0.1초 정확도의 수동 타이밍을 사용한다. 각 루트는 3명의 심판이 각각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한다. 선수가 시도를 완료했을 때 심판은 명백한 측정 오류를 제외하며, 측정된 3개 기록 중 중간 시간을 반올림 없는 소수점 이하 첫 자리까지를 선수의 등반 시간으로 기록한다.★
- c) 수동과 기계-전기식 계측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한다. 기계-전기식 계측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재경기 없이 전체 라운드를 수동 계측으로 기록하며 기계/전기식 기록은 무시한다. 즉, 두 가지 방식을 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7 기술적 사고

9.7.1 기술적 사고는 선수가 의도하지 않은 요인으로 인하여 선수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 a) 계측기 고장
- b) 미적용
- c) 자동 릴레이 고장 : 제동이 안 되거나 너무 빠르게 하강하는 현상 발생
- d) 릴레이(확보) 문제 : 로프가 너무 팽팽하거나 느슨하여 선수의 진행에 방해 또는 도움이 되는 경우
- e) 로프의 손상(등반중인 선수에 의한 손상이 아닌 경우)
- f) 자동 릴레이의 테이프 손상
- g) 전기적인 문제
- h) 빙벽에 물 이외의 다른 액체(예: 혈액, 냉각 화학 물질)가 있는 경우.
- i) 기타 안전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

9.7.2 기술적 사고는 아래에 서술된 인원에 의해서 제기된다.

- a) 루트 심판
- b) 공식 팀 관계자
- c) 영향을 받은 선수

9.7.3 기술적 사고의 최종적인 선언은 루트 심판 또는 심판장이 결정한다.

9.7.4 싱글 포맷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사고가 발생 시 재출발의 판정

- a) 기록이 측정되지 않았을 때 다시 출발한다.

b) 기록이 계속되었지만

i 루트 심판이 기술적 사고로 인해 선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면, 선수는 재경기해야 하며, 재경기의 기록으로 유효한 결과가 된다.

ii 루트 심판이 기술적 사고로 인해 선수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선수는 재경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두 번의 시도 중 더 나은 기록이 유효한 결과가 된다.

9.7.5 듀얼 포맷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사고가 발생 시 재출발의 판정

a) 예선에서는

I. 9.7.4항을 따른다.

ii. 루트 심판이 두 선수 중 한 선수에게 기술적 사고의 발생을 선언하면 두 선수 모두가 기술적 사고의 영향을 받는다.

b) 결선 라운드에서는

I. 루트 심판의 기술적 사고의 결정은 두 선수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며, 두 선수 모두 재출발해야 하며 재출발의 결과로 두 선수의 승부를 정한다.

9.7.6 기술적 사고가 발생한 후 재출발까지의 휴식 시간은 최소 5분 이상이거나 기술적 사고가 해결될 때까지이다. 선수들은 휴식 기간 없이 재출발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두 선수가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한다. 경기는 휴식 시간 동안 일시 중단되고, 대회는 기술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선수들과 함께 재개된다.

9.8 싱글 포맷 경기

9.8.1 싱글 포맷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톱 로프 등반으로 가장 빨리 오르려고 시도하는 방식이다. 선수들은 예선 라운드에서 두 번의 시도를 하고 결승 라운드에서 세 번의 시도를 한다.

출전 순서 및 정원

9.8.2 경기는 예선 라운드와 결승 라운드로 두 개의 라운드로 진행된다.

출전 선수가 8명 이하인 경우, 예선 라운드는 열리지 않고 결승 라운드만 진행된다.

9.8.3 출전 순서

a) 예선 라운드의 출전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된다.

b) 결승 라운드에서 선수들은 예선 순위의 역순으로 출전하게 된다.

동률인 선수가 있는 경우 무작위 선택에 따라 순서가 결정된다.

c) 예선전이 열리지 않은 경우, 결승 라운드의 출발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된다.

9.8.4 라운드 내에서 모든 시도의 시작 순서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9.8.5 두 번 또는 세 번의 로테이션이 있고, 각 선수는 로테이션마다 한 번씩 시도한다.

9.8.6 모든 선수는 추가 시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한 번의 시도를 완료한다.

9.8.7 결승 라운드에 출전할 자격이 있는 선수의 수는 예선 라운드에서 유효 시간을 가진 선수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 a) 유효한 기록을 가진 선수가 16명이거나 이보다 많으면 16명이 결승 라운드에 진출한다.
- b) 유효한 기록을 가진 선수가 16명 미만일 경우 유효 시간을 가진 모든 선수가 결승 라운드에 진출한다.
- c) 예선 라운드에서 동률인 선수가 나올 경우, 동률인 선수 모두가 결승 라운드에 진출한다.

9.8.8 선수들은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그 라운드에서 얻은 최고 기록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가장 빠른 선수가 느린 선수보다 더 높은 순위가 매겨진다.

9.8.9 예선 라운드에서 한 번 이상 시도를 성공적으로 마친 선수만 순위가 매겨진다.

9.8.10 결승 라운드에서 각 선수가 얻은 최고 기록에 따라 결승 라운드의 순위가 결정된다. 결승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의 경우, 각 선수의 예선 라운드의 최고 기록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9.8.11 한 명 이상의 선수가 결승 라운드에서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최종 순위에서 최하위에 위치하게 된다.

9.8.12 결승 라운드에서 한 명 이상의 선수가 동률이 나올 경우, 그 선수들 간의 카운트 백은 적용하지 않고 결승전 순위는 동률로 처리된다.

★ 전국체전과 같이 반드시 순위 결정이 필요한 경우 1, 2, 3위 결정을 위해 카운트백 적용하며, 적용 후에도 동률일때는 재경기를 할 수 있다.★

9.9. 듀얼 포맷 경기

9.9.1 듀얼 포맷 경기에서 선수들은 빙벽 위에서 가능한 한 빨리 두 개의 루트를 시도하게 된다. 선수들은 예선 라운드의 각 루트에서 한 번씩 시도하며, 결승전에서는 일련의 토너먼트 대진표에 따라 패자 탈락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출진표와 정원

9.9.2 경기는 두개의 라운드로 진행된다.

- a) 예선 라운드
- b) 결승 라운드는 토너먼트로 구성된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각 토너먼트의 승자는 다음 단계로 진출한다.
- c) 단계 수와 단계별 경기 수는 9.9.4항 및 9.9.5항 정의된 결승 라운드 정원에 따라 달라진다.

9.9.3 예선 라운드의 출진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된다.

9.9.3 예선 라운드의 출진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된다.

9.9.4 결승 라운드의 정원

- a) 결승 라운드에 진출하는 선수의 수는 예선 라운드에서 유효한 시간을 기록한 선수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유효한 기록을 가진 선수의 수	결승전 정원
< 4명	예선전 재경기
4~7명	4명
8~15명	8명
> 16명	16명

9.9.5 토너먼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수에 따라 다음 대진표 중 하나를 따른다.

16 Starters

1/8th Stage

Race Lane Athlete
1 A Qualifier #1 B Qualifier #16
2 A Qualifier #8 B Qualifier #9
3 A Qualifier #4 B Qualifier #13
4 A Qualifier #5 B Qualifier #12
5 A Qualifier #2 B Qualifier #15
6 A Qualifier #7 B Qualifier #10
7 A Qualifier #3 B Qualifier #14
8 A Qualifier #6 B Qualifier #11

Quarter Finals

Race Lane Athlete
9 A Winner Race 1 B Winner Race 2
10 A Winner Race 3 B Winner Race 4
11 A Winner Race 5 B Winner Race 6
12 A Winner Race 7 B Winner Race 8

Semi-Finals

Race Lane Athlete
13 A Winner Race 9 B Winner Race 10
14 A Winner Race 11 B Winner Race 12

Finals - Small Final & Big Final

Race Lane Athlete
15 A Loser Race 13 B Loser Race 14
16 A Winner Race 13 B Winner Race 14

경기 진행

9.9.6 예선 라운드에서 각 선수는 먼저 A 레인에서 등반한다. A 레인 종료 후, 두 번째 등반을 위해 즉시 B 레인으로 이동해야 한다.

- a) 한 선수가 B 레인을 등반 할때, 다음 선수는 동시에 A 레인을 등반한다.
- b) 이 과정은 모든 선수가 두 레인을 모두 완주할 때까지 계속된다.
출천표의 첫 번째/마지막 선수는 혼자서 A/B 레인을 등반한다.

9.9.7 예선 라운드에서는 한 선수가 A 레인을 완주하지 못하더라도, B 레인을 등반하여야 한다.

8 Starters

Quarter Finals

Race Lane Athlete

1	A	Qualifier #1
	B	Qualifier #8

2	A	Qualifier #4
	B	Qualifier #5

3	A	Qualifier #2
	B	Qualifier #7

4	A	Qualifier #3
	B	Qualifier #6

Semi-Finals

Race Lane Athlete

5	A	Winner Race 1
	B	Winner Race 2

6	A	Winner Race 3
	B	Winner Race 4

Finals - Small Final & Big Final

Race Lane Athlete

7	A	Loser Race 5
	B	Loser Race 6

8	A	Winner Race 5
	B	Winner Race 6

4 Starters

Semi-Finals

Race Lane Athlete

1	A	Qualifier #1
	B	Qualifier #4

2	A	Qualifier #2
	B	Qualifier #3

Finals - Small Final & Big Final

Race Lane Athlete

3	A	Loser Race 1
	B	Loser Race 2

4	A	Winner Race 1
	B	Winner Race 2

9.9.8 결승 라운드에서는 선수들이 일련의 토너먼트 대진표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각 선수의 라인 배정(A 라인과 B 라인)은 섹션 9.9.5의 대진표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경주를 완료한 후, 선수들은 가능한 한 빨리 라인을 변경해야 한다.

라인 변경시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추가 회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더 긴 동선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9.9 결승 라운드 - 루트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단계는 아래 표의 구체적인 사례에 명시된 것을 기초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추락(fall)과 부정 출발(f.s), 45초 초과는 같은 개념으로 평가한다(모두 실패이다).

경주 1	경주 2	판정
A선수완등 B선수 완등	B선수 완등 A선수 완등	합산 기록이 빠른 선수가 승
A선수 완등 B선수 실패	B선수 출진 불가 A선수 완등	A선수 승
A선수 실패 B선수 완등	B선수 완등 A선수 출진 불가	B선수 승
A선수 실패 B선수 실패		경주1부터 재경기
A선수 완등	B선수 실패	경주1 기록 유지

B선수 완등	A선수 실패	경주 2만 재경기
A선수 완등 B선수 실패	B선수 출진 불가 A선수 실패	경주 1부터 재경기
A선수 실패 B선수 완등	B선수 실패 A선수 출진 불가	경주 1부터 재경기

9.9.10 재경기 중 표의 마지막 4행에 설명된 시나리오가 다시 발생하면 이전 라운드의 경기로 카운트백하여 결과를 정리한다.

9.9.11 동률 분리

- a) 예선 라운드 - 2명 이상의 선수가 동점일 경우, 동점 선수는 서로 간의 우열이 나누어질 때까지 예선 루트를 다시 시도해야 한다. 이 시도에서 기록된 시간은 결승 라운드 진출할 자격이 있는 선수를 결정하는 데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은 없다.
- b) 예선 라운드 - 예선 라운드에서 동률인 선수가 있는 경우, 동률 분리를 위한 경기 시 라인 배정은 무작위로 결정된다.
- c) 결승전 - 결승전의 어느 단계에서든 두 선수가 동률일 경우, 경주는 다시 진행된다. 만일 두 번째 경주에서도 두 선수가 여전히 동률일 경우, 이전 라운드의 카운트백 방식으로 승자를 결정한다.

9.9.12 결승 라운드의 각 단계는 남자부와 여자부를 번갈아 가며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남자부가 한 단계를 완료한 후, 여자부가 즉시 경기를 시작한다)

만약 어느 부분의 단계의 선수가 더 많은 선수가 있다면, 즉, 더 많은 수의 단계를 먼저 거친 다음 진행된다.

(예 : 남자 16명 여자 4명일 경우 남자 16강=>남자 8강=>여자 4강=>남자 4강 순으로 진행)

9.9B 스피드-듀얼 경기 ★(국내 한정)

9.9.1 스피드 대회는 2개 라운드로 구성된다. - 예선에서 16명 이상의 유효한 시간을 가진 선수들이 나올 경우 16강전을 진행할 수 있다.

a) 예선 라운드

b) 결승 라운드는 16강(준결승)전, 8강전, 4강전, 3, 4위전, 1, 2위전(결승)으로 구성되고 승자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준결승(16강)전에서 동률이 있으면, 관련 선수들은 동률 분리를 위해 재경기한다.

9.9.2 스피드-듀얼 경기는 길이가 같고 형태와 난이도가 유사한 두 루트로 구성된다. 첫 루트를 등반한 선수는 가능한 한 빠르게 두 번째 루트로 이동한다. 회복 시간을 더 갖기 위해 두 번째 루트로의 이동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가 이동을 지연할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9.9.3 선수의 순위는 두 루트에서 득한 시간의 합으로 결정된다.

9.9.4 예선전의 출발 순서는 무작위로 정한다.

각 선수는 먼저 A 레인(또는 1)을 시도한 후 B 레인(또는 2)을 시도해야 한다.

9.9.5 만약 선수가 첫 번째 루트를 완등하지 못하더라도 두 번째 루트로 이동하여 경기해야 하고 이 선수의 성적은 9.9.6에 의해서 결정된다.

9.9.6 예선 라운드의 성적

a) 그룹 A: 두 개의 루트를 모두 완등하여 두 개의 기록이 있는 경우로 두 개의 기록을 합산하여 순위를 정함

b) 그룹 B: 한 루트를 완료했지만, 다른 루트를 완료하지 못한 선수는:그룹 A 다음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i. 하나의 루트만 기록이 있는 선수의 순위는 해당 루트만 완료한 모든 선수의 해당 루트의 등반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ii. 하나의 루트만 기록이 있는 선수의 순위는 해당 루트만 완료한 모든 선수의 해당 루트의 등반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iii. 만일 한 루트만 완료한 선수들이 서로 다른 루트를 완료했다면, 종합 성적표는 각 루트의 순위를 병합하여 작성하고, 각 루트에서 같은 순위 선수들의 순위는 같은 순위로 처리한다.

c) 그룹 C: 두 개의 루트를 모두 완료하지 못했거나 부정 출발한 선수는 순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결과에서 “DNF”(Did Not Finish)로 표시된다.

주의: 추락(fall)과 부정 출발(f.s)은 같은 개념으로 평가한다.

- 그룹A 선수만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다.

9.9.7 최종 라운드 - 정원

최종 라운드의 정원은 예선 라운드에서 유효한 시간을 가진 선수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단, 부정 출발을 기록한 선수는 제외) 다음과 같다.

유효한 기록을 가진 선수	결승 라운드 정원
4 - 7	4
8 - 15	8
>15	16

9.9.8 결승 라운드 - 토너먼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수에 따라 다음 대진표 중 하나를 따른다.

9.9.9 결승 라운드 - 루트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단계는 아래 표의 구체적인 사례에 명시된 것을 기초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추락(fall)과 부정 출발(f.s), 45초 초과는 같은 개념으로 평가한다(모두 실패이다).**

경주 1	경주 2	판정
A선수 완등 B선수 완등	B선수 완등 A선수 완등	합산 기록이 빠른 선수가 승
A선수 완등 B선수 실패	B선수 출전 불가 A선수 완등	A선수 승

A선수 실패 B선수 완등	B선수 완등 A선수 출전 불가	B선수 승
A선수 실패 B선수 실패		경주1부터 재경기
A선수 완등 B선수 완등	B선수 실패 A선수 실패	경주1 기록 유지 경주 2만 재경기
A선수 완등 B선수 실패	B선수 출전 불가 A선수 실패	경주 1부터 재경기
A선수 실패 B선수 완등	B선수 실패 A선수 출전 불가	경주 1부터 재경기

참고-재경기 중 표의 마지막 4행에 설명된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이전 라운드의 경기로 카운트백하여 결과를 결정한다.

9.9.10 동률인 선수는 다음에 따른다.

- a) 예선전 - 2명 이상의 선수가 동점일 경우,
동점 선수는 서로의 우열이 나누어질 때까지 예선 루트를 다시 시도해야 한다. 이 시도에서 기록된 시간은 결승전에 진출할 자격이 있는 선수를 결정하는 데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은 없다.
- b) 결승전 - 결승전의 어느 단계에서든 두 선수가 동률일 경우,
경주는 다시 한번 진행된다. 만일 두 번째 경주에서도 두 선수가 여전히 동률일 경우, 이전 라운드의 시간을 고려하여 카운트백 방식으로 승자를 결정한다.

9.9.11 결과가 확정되면 예비 결과(경기 각 라운드에서 선수의 시간 및 순위)를 관중과 코치에게 제공한다.

- a) 전자 표시기(전광판 또는 스크린)
- b) a)가 불가하면, 게시판

최종 성적표에는 모든 라운드의 모든 루트에서 득한 선수의 시간을 표시한다.

9.9.12 등반 절차

- a) 심판으로부터 출전을 호명받은 선수는 최소한 발은 바닥(출발 패드/스위치) 에 두고 최소한 한 발과 한 손이 얼음에 닿은 출발 자세를 취한다.
- b) 두 선수가 자세를 갖추면, 심판은 “준비(Ready)” 라 묻고 두 선수의 준비가 확인되면, “차렷(Attention)” 이라고 한 뒤 잠시(1~2초) 후 짧고(0.1-0.2초) 큰(분명한) 청각 출발 신호를 주거나 수동 계측일 경우 “Go” 라 한다.
- c) 출발 신호기는 두 선수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 d) 출발 신호 또는 지시에 선수는 등반을 시작한다. 심판이 “준비(Ready)” 라고 물었을 때 준비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출발 지시에 대해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 e) 등반 순서 - 예선전에서는 : 등반 순서 다음 패턴을 따른다.
 - 출발지에 오른 첫 번째 선수는 홀로 A 루트를 등반한다.
 - 그런 다음 첫 번째 선수가 B 루트로 이동하고 출전 순서에 있는 두 번째 선수가 A 루트에서 준비한다.

- 그 둘은 동시에 등반을 시도한다.
 - 이런 과정으로 출발 순서에 있는 마지막 선수가 혼자 B 루트를 시도할 때까지 계속된다.
- f) 등반 순서 - 결승 라운드에서는 : 대진표 및 등반 순서는 듀얼 경기 도표(위 그림 참조)에 의해 결정된다.
- 최초 결승 라운드(16명 진출시 16강, 8명일 때 8강 4명일 때 4강)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록이 좋은 선수는 A 루트로 등반을 시작하고, 상대 선수는 B 루트로 시도한다. 이어서 루트를 변경하여 한 번 더 경기를 시도하여, 합산 시간이 가장 빠른 선수는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고, 합산 시간이 느린 선수는 탈락한다.
 - 그 이후 연속된 토너먼트에서는 대진표에 따라서 출발 순서가 정해지고 같은 방식으로 완전한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경기가 계속된다.

각 라운드 후의 순위

9.9.13 각 선수는 두 레인을 모두 완료한 시간의 합산으로 더 빠른 선수에서 느린 선수의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9.9.14 예선 라운드의 순위

- a) 그룹 A: 두 개의 루트를 모두 완등하여 두 개의 기록이 있는 경우로 두 개의 기록을 합산하여 가장 빠른 선수에서 느린 선수까지 순위를 정함
- b) 그룹 B: 한 루트를 완료했지만, 다른 루트를 완료하지 못한 선수는: 그룹 A 다음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 i. 하나의 루트만 기록이 있는 선수의 순위는 해당 루트만 완료한 모든 선수의 해당 루트의 등반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ii. 만일 한 루트만 완료한 선수들이 서로 다른 루트를 완료했다면, 종합 성적표는 각 루트의 순위를 병합하여 작성하고, 각 루트에서 같은 순위 선수들의 순위는 같은 순위로 처리한다.
- c) 그룹 C: 두 개의 루트를 모두 완료하지 못했거나 부정 출발한 선수는 순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결과에서 “DNF”(Did Not Finish)로 표시된다.

9.9.15 그룹A 선수만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다.

9.9.16 결승 라운드의 순위

- a) 선수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경쟁한 선수들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예를 들어, 결승 단계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이 예선 라운드만 경기한 선수들보다 위에 순위가 매겨진다.)
- b) 같은 단계에서 승자가 패자보다 더 높은 순위가 매겨진다.
- c) 같은 단계 내에서 패자는 9.9.14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예: 같은 단계에서 패한 모든 패자 중 합산 기록이 가장 빠른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다음으로 한 레인만 기록이 있는 선수 중 가장 빠른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두 레인 모두

기록이 없는 순으로 패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d) 만약 다음 단계가 취소될 경우,

마지막으로 완료된 단계의 승자는 9.9.14 그룹A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e) 출전하지 않은 선수(DNS)는 그 단계의 마지막 순위가 부여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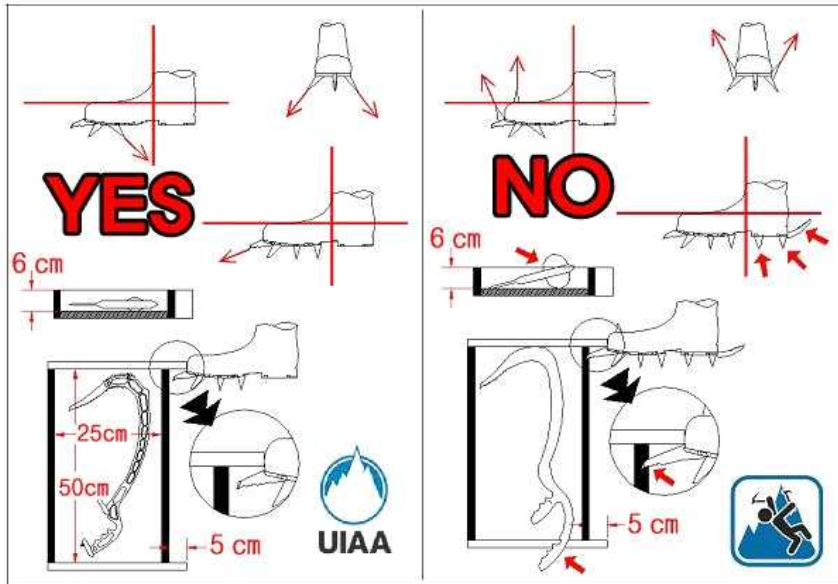
10~17 (KAF 미적용)★

18. 아이스 클라이밍 장비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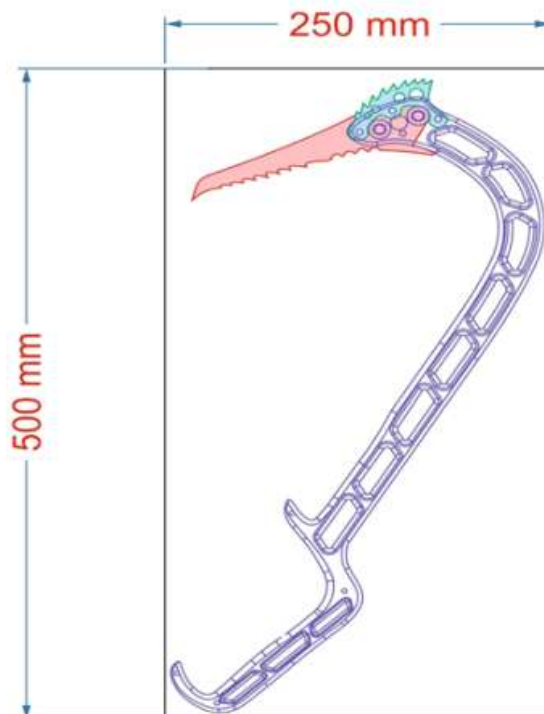
18.1 크랩폰과 아이스 엑스

18.1.1 아래의 그림1과 그림2는 허용되는 틀과 허용되지 않는 틀의 치수를 나타낸다.

18.1.2 리드 경기에는 어떤 종류의 뒤쪽 돌출(spur)도 허용되지 않는다.



- 그림 1 -



- 그림 2 -

[별첨 1] WORLD CLIMBING 부적격 표

부적격 표(경기 임원 자격 부여 체크리스트)



TABLE OF INELIGIBILITY

10/02/2021

	Chief Routesetter	Routesetter	Jury President	IFSC Judge	Aspirant Routesetter/Judge	Classifier
Competitor	No	No	No	No	Yes	No
Team Official	No	No	No	No	Yes	No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No	No	No	No	Yes	No
Member of a Continental Council Board	No	No	No	No	Yes	No
Member of a Commission/Committee	Yes	Yes	Yes	Yes	Yes	Yes
First Degree Relative of an athlete (1)	No	No	No	No	Yes	No
Member of a National Federation Board or National Federation Representative	No	No	No	No	Yes	No

(1) The ineligibility is only for the competitions with category where the athlete competes.

No – Incompatibility of duties
Yes – Compatibility of duties

	세터장	세터	심판장	종목 심판	심판	연수생 (심판/세터)
선수	N	N	N	N	N	Y
해당 대회팀 임원	N	N	N	N	N	Y
대산련 임원	N	N	N	N	N	Y
관련 위원회 위원	N	Y	N	Y	Y	Y
직계존비속	N	N	N	N	N	Y
국가대표 지도자	N	N	N	N	N	Y

※ 관련 위원회 (심판-심판위원회 세터-클라이밍위원회)

※ 부적격 표는 대산련 주관/주최 대회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대회에는 권장한다.

19. 용어집

19.1 본 규정 전반에 걸쳐 다음의 정의를 적용해야 한다.

해야 한다 : 필수요건을 명시한다.

할 수 있다./없다. : 선택적인 상황이다.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 금지규정을 명시한다.

19.2 본 규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

이의신청은 보통 선수의 성적과 관련된 판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 홀드란 나사 또는 볼트를 사용하여 등반 표면에 부착하기 위하여 제작된 등반 홀드를 의미한다.

시도란 선수가 라운드, 스테이지 또는 레이스 중 지정된 루트에서 한 번만 등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문이란 성별(남성, 여성) 또는 연령대(예: U16, U18, U20)에 따라 대회에서 선수들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들은 같은 부문의 선수들과 순위를 정한다.

등반 표면은 등반 벽이나 얼음의 사용 가능한 표면을 의미한다.

a) 표면에 영구적인 불규정성이나 질감이 있는 형상, 또는 표면의 막힌 가장자리를 포함

b) 사용할 수 있는 표면에 부착된 볼륨이나 임시 구조물, 인공 홀드; 또는 상층부를 제외한 얼음통은 제외된다.

경기는 특정 분야(예: 난이도 또는 속도)에 의해 정의되고 다양한 부문별을 별도로 조직된 이벤트 내의 경쟁 단위를 의미한다.

경기지역(Competition Area)은 경기장의 일부를 스포츠 활동에 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모든 격리구역(Isolation Zone)/준비운동 지역(Warm-up Area)

b) 모든 대기 구역(Call Zone)/트렌짓존(Transit Zone)

c) 경기구역(Competition Zone)

경기 결과는 경기가 끝난 후의 일반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경기구역(Competition Zone)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대회의 모든 라운드에 사용되는 등반 표면

b) 등반 벽 바로 앞과 옆 지역

c) 비디오 녹화 또는 재생에 필요한 추가 영역과 같이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 수행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다른 영역

통제란, 판정 및 채점을 목적으로 선수가 홀드 또는 존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신체 위치를 달성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Controls통제하다”, “Controlled통제된” 및 “Controlling통제하고 있는”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현재 순위는 해당 시즌 동안 선수권대회, 체전, 컵대회 시리즈대회의 순위를 의미하며, 해당 시리즈에서 완료된 대회 결과도 포함된다.

출발하지 않음 또는 DNS의 의미는:

- a) 대회의 어떤 라운드 또는 단계에서 어떤 특정 볼더, 루트 또는 레이스에서 선수가 루트 또는 레이스의 시도를 실패한 것이다. “출발하지 않음”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다.
- b) 경기의 라운드 또는 단계와 관련하여, 선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DNS이다:
 - I. 해당 라운드가 격리 조건에서 진행된다면, 해당 라운드의 출전 표에 명시된 시간까지 격리구역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격리구역 내에 없을 때
 - II. 그 라운드 또는 단계를 위해 호명했으나 트랜짓 존으로 가기 위한 응답 없음, 또는
 - iii. 그 이외에도 이 규정 2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IRM 출발하지 않음으로 기록된 선수를 관련 결과에 그렇게 기록한다. 어떤 라운드 또는 단계에서 출발하지 않음으로 기록된 선수는 같은 대회의 연속하는 다음 라운드 또는 단계로 진출할 자격이 없다.

종료하지 않음 또는DNF는 선수가 루트를 완등하지 못했거나 스피드 경기 중에 추락하거나 허용된 등반 시간을 초과한 사유로 DNF로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실격 또는 DSQ는 이 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경기에서 실격됨을 의미한다.

행위 실격 또는 DQB는 경기에서 다음의 실격을 의미한다. 반도핑규정 위반, 또는 대한산악연맹, 대한 체육회와 관련하여 발표된 다른 해당 규정 위반

- a) 심각한 비 스포츠적인 행위 또는 기타 심각한 방해 행위에 국한되지 않음
- b) 어떤 사람에게도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또는 모욕적인 행위

이벤트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조직 체제(예: 월드컵) 하에서 열리는 일련의 대회를 의미한다.

완등 포인트는 난이도 종목의 탑로프 방식에서 루트의 마지막 홀드/존으로, 여기에 도달해야 완등(TOP)으로 판정한다.

아이스 익스 픽은 아이스틀의 홀드에 걸거나 얼음을 찍기 위하여 헤드에 볼트로 고정된 칼날을 의미한다.

아이스박스는 참조 그림에 표시된 상자를 의미한다. 이 상자는 빙축과 크립톤의 크기를 제한하는데 사용된다. 상자의 내부 크기는 25cm x 50cm x 6cm이다. 또한 크립톤을 측정할 수 있는 5cm 연장이 있다.

격리 규정은 선수들이 격리구역에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보, 통신, 전자 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이 포함된다.

격리구역은 현재 등반 중인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없도록 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격리 구역을 의미한다.

실시간 성적 게시란 KAF가 대회 또는 해당 대회의 루트/라운드에 대한 예비 성적을 발표하기 전에 선수나 팀 관계자, 관중들이 성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중 실시간으로 발표하거나 배포한 모든 성적을 의미한다. 이것을 참고하여 예비 성적이 나오기 전 구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필수장비는 안전벨트, 헬멧, 두 자루의 아이스 액스, 한쌍의 클램폰, 장갑, 긴팔 상의, 긴바지(반바지 안됨)를 말한다.

맨틀 동작이란 아이스툴을 아래로 두고 팔을 눌러서 체중을 지탱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식 성적의 의미는 경기(또는 해당 경기의 어떤 라운드) 종료 후에 KAF가 발행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 결과지에는 KAF 임원의 서명과 “공식“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예비 성적이 게시되고 10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예비 성적이 공식 성적으로 발표된다. 공식 성적이 발표된 후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종합 순위란 해당 시리즈에 포함된 모든 대회가 끝난 후 코리안컵의 최종 순위를 의미한다..

보호 지점(또는 퀵드로우라고도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조합을 의미한다:

- a) 경기벽의 하중 지지 구조에 고정된 볼트에 연결된 퀵 링크 커넥터
- b) 선수가 등반할 때 로프를 고정할 수 있는 카라비너. 이 카라비너의 방향은 가급적 일정한 방향이어야 한다.
- c) (a)와 (b)를 연결하는 적절한 길이의 단일 연속 기계 봉제 슬링(루트세터장에 의해 결정됨). 또는 KAF가 승인한 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다.

경주는 스피드 경기의 한 단계에서 두 선수가 맞붙는 경쟁을 의미한다.

라운드는 선수들이 다음 단계로 진출하거나 최종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경쟁하는 경기의 단계를 의미한다 (예: 예선, 준결승, 결승).

표준은 UIAA, KAF, CE 또는 EN을 포함하여 필요한 필수 표준을 의미한다.

출발 지점은 제8.9.1조에 설명된 대로 선수들이 출발 위치를 설정해야 하는 난이도 루트의 첫 번째 홀드/존을 의미한다. 이는 파란색 박스로 표시되어야 한다.

기술적 사고란 선수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선수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난이도 8.12항과 속도 9.7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터치는 판정 및 채점을 목적으로 특정 존이나 홀드에 선수의 아이스 액스의 날이나 손이 접촉한 것이다.

이동 구역은 선수들이 루트에 대한 시도를 준비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경기구역 내의 특정 구역을 의미한다.

구두 이의신청은 공식 결과 발표 전에 구두로 제기하는 이의를 의미한다.
이의신청 양식이나 이의신청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다.

구역은 파란색 경계로 구분되는 얼음의 일부를 의미한다.
오해가 없도록, 블루 홀은 구역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Z-Clip은 등반 로프가 두 개의 클립점의 통과를 역순으로 연결된 상황을 의미한다.

참고 동영상 자료

UIAA Rules Videos - Height measurement
(www.youtube.com/watch?v=Y1aLUWQ2n2s)

UIAA Rules Videos - Dynamic Movement scoring
(www.youtube.com/watch?v=qNFLvFdivGo)

UIAA _ Rules Videos - Red line rules
(www.youtube.com/watch?v=EAhG6VoDtGg)

UIAA Rules Videos - Special Cases
(www.youtube.com/watch?v=4_SJH3anfks)
주의: 동영상 1분13초 부분의 판정은 7.0 이다.

부 칙 (2020.08.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6.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6.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3.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7.0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6.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 1)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국제대회(WORLD CLIMBING, UIAA)는 1급, 2급 루트세터로 선임한다.
- 2) 각 시도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1급, 2급, 3급 루트세터로 한다.
- 3) 2급 루트세터 연수생은 루트세터 연수 책임자를 파견하는 대회에서 2급 루트세터 실기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4) 국제 루트세터는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할 시 1급 루트세터에 준한다.

3.2 루트세터의 임무

모든 대회루트와 워업벽등은 대회 중 위험 요소가 없도록 세팅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가) 루트세터장

- 1) 주최측과 대회 운영 및 루트세팅이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의하며, 루트세팅 과정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 2) 대회 중 기술적 사고 발생 시 세터장은 세터에게 수정 복구를 지시한다.
- 3) 경기 중 심판 또는 심판장에게 판정에 관하여 기술적 도움을 준다.

나) 루트세터

- 1) 루트세터장을 보좌하며 대회 루트를 설치한다.
- 2) 세팅 및 경기 중 루트세터장이 부여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3) 루트맵을 작성하여 심판에게 전달하고 시범 등반 영상을 제작한다.
- 4) 루트세터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3 루트세터는 1급, 2급, 2급 연수생, 3급, 국제 자격을 둔다.

가) 1급 루트세터

각종대회에서 루트세터장 및 루트세터로 선임 될 수 있다.

나) 2급 루트세터

각종 대회에서 루트세터로 선임될 수 있다.

다) 2급 연수생

- 1)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2급 루트세터 자격 과정 중인 연수생
- 2)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보조루트세터로 활동 할 수 있다.
- 3) 시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서는 루트세터로 활동 할 수 있다.

라) 3급 루트세터

- 1) 본인이 소속된 시, 도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자격과정에 합격한 사람.
- 2) 소속 시, 도연맹이 주최하는 지역대회에 한하여 루트세터 업무만 수행 할 수 있다. 단, 타 시도 선수들이 출전하는 지역대회에는 출장할 수 없다.

마) 국제루트세터는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할시 국내 1급 루트세터에 준하는 자격이 인정된다.

제4장 의무사항 및 제재

- 4.1 루트세터는 대회 규정에 관해 대회 전, 대회 중, 대회 후에도 공정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 4.2 클라이밍위원회가 선임한 루트세터장과 루트세터는 대산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각종 대회에 참가한 결과 보고서를 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대산련 및 클라이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시 6개월간 루트세터장으로 선임 될 수 없다. 단, 세터로는 선임 될 수 있다.
- 4.3 루트세터는 대산련에서 승인 하지 않은 대회에 루트세터로 참가할 수 없다.
- 4.4 대산련 및 각 시·도연맹이 주최하는 각종행사 등(지역대회, 교육, 연수 등)에 출장할 경우 클라이밍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4.5 비공인 루트세터의 루트세팅 참여 금지
대산련이 공인하지 않은 루트세터를 각종 대회의 루트세팅에 참여시킨 자는 본 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 4.6 대산련이 승인하는 지역대회에는 2급 이상의 루트세터를 포함해야 한다.

제5장 징계

5.1 업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

가) 루트세터 또는 루트세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클라이밍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조사후 징계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대산련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따라 자격 정지,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1) 대회 및 루트세팅 중 지시된 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경기 중 또는 경기 직전에 무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한 경우
- 3) 루트세터장 또는 대회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루트세터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언행을 한 경우
- 6) 제4장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나) 제 가)항의 징계 절차는 대산련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되며, 루트세터장 및 루트세터를 포함한 해당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제6장 자격부여

6.1 1급 루트세터

- 가) 2급 루트세터 자격 부여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 나) 각종 대회에서 루트 검증 및 세팅한 경험이 있고, 루트를 기획하고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다) 대산련 주최, 주관 대회 6회 이상, 지역대회 6회 이상(전국규모)을 출장해야 한다.
- 라) 루트세팅 이력에 대한 평가가 우수해야 한다.
- 마) 경기 및 루트세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전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루트세터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조건을 충족한 2급 루트세터 중에서 1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6.2 2급 루트세터

2급 연수과정을 합격 한 사람

6.3 2급 연수생

-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2급 루트세터 연수생 검정과정에 응시할 수 있다.
 - 1) 대한산악연맹 가맹단체의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 2) 만 20세 이상인 자
 - 3) 5.13a, V7 이상의 난이도를 동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4) 클라이밍 대회의 선수 또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제 5.3 가)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는, 대산련이 주최하는 2급 루트세터 연수생 검정과정을 이수하고 평가 점수 80% 이상을 획득하여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 다)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루트세터 연수평가 후 대산련 또는 위원회가 선임한 루트세터 연수 담당의 평가에 의하여 루트세터 심사 위원회에서 2급 루트세터 자격을 부여한다. 연수 참가 일수는 최소 8일에서 최대 12일 이내로 나누어서 참가할 수 있다

라) 자격검증 및 2급 연수생 연수 평가 점수 부여 방법

총점	필기	수행능력					안전	팀워크	태도평가
		장비사용	구상설치	검증교정	표식지도	해체보관			
100	10	10	15	20	10	10	15	10	±5

- 마) 2급 연수생 연수 평가
 - 1) 연수 평가는 스포츠클라이밍(리드, 볼더, 스피드) 종목과 아이스클라이밍(리드, 스피드)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2) 각 종목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2종목 합산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3) 60점 미만의 종목은 과락으로 처리되며, 해당 종목에 한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 4) 2종목 합산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루트세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5) 연수생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모든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 바) 루트세터 심사 위원회의 구성은 클라이밍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루트세터 분과 위원 약간 명으로 한다.

사) 클라이밍위원회에서 선임한 루트세터 연수담당은 2급 루트세터 연수생 연수 평가 결과를 클라이밍위원회에 제출하고, 루트세터 심사 결과를 대산련에 보고한다.

아) 3급 루트세터 자격 취득 과정은 시도연맹에서도 실시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1) 대산련 감독관 파견

(가) 보고서 제출

(나) 파견 비용은 개최 시도 연맹이 부담한다.

2) 클라이밍위원회가 지정한 필수 교육과정 및 일수 준수

3) 시도연맹과 감독관은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자격취득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대산련에 제출한다.

6.4 루트세터 심사위원회 개최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다.

제7장 국제루트세터 교육 추천

7.1 국제루트세터는 UIAA/WORLD CLIMBING/ACC 루트세터 지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클라이밍위원회 및 대산련이 추천한다.

7.2 국제루트세터 지원자는 영문규정의 이해 및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제8장 자격의 유지

8.1 루트세터는 대산련이 년 1회 실시하는 루트세터 보수 교육에 2년 중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하고 대산련이 승인 또는 운영 하는 대회에 2년중 1회 이상 참가하여야 루트세터로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8.2 위 가)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루트세터는 충족이 될 때까지 자격이 정지 된다.

8.3 자격이 정지된 루트세터는 루트세터 자격부여 과정에 2일간 자격검정 과정을 이수하여야 루트세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8.4 대산련 회원 탈퇴 시 루트세터 자격이 정지된다.(6개월 이내 대산련 회원 자격 회복 시 정지된 루트세터 자격은 바로 회복된다. 단 6개월 이상 대산련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회원 자격 회복 시 신규 과정을 통해 루트세터 자격을 복원 할 수 있다.)

8.5 자격 정지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2018년부터 적용)

8.6 루트세터 자격유지자 중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선수와 그 선수의 직계존비속, 대산련 임원 등 직무 상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산악연맹 규정에 의해 루트세터 업무배정을 받을 수 없는 루트세터는 그 직무가 해제 될 때 까지 그 자격은 유지된다.

제9장 출장인정 범위

- 9.1 대산련이 주최 또는 승인한 각 시도 연맹 주최의 공식 대회의 모든 대회 출장을 자격 유지를 위한 출장으로 인정한다.
- 9.2 위 모든 출장의 승인은 대회 종결 후 루트세터장의 출장 보고서에 준하여 인정되며 보고서가 없는 대회는 출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 9.3 루트세터장이 없는 대회는 출장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제10장 대회중 역할

10.1 루트세터

- 가) 루트세터장 - 대회 각 루트 제작에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술적 기준 및 안전을 점검 하고 경기 지역 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심판장에게 조언 할 의무가 있다.
- 나) 루트세터 - 대회 루트세팅의 모든 사항을 맡아 루트세터장을 보좌한다. 루트세팅은 루트세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다. 루트세터는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루트세터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받고 수행한다.
- 다) 2급 루트세터 연수생은 독단적인 세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2급 이상 루트세터의 지도를 통하여 각 대회에서 보조 루트세터로 활동 할 수 있다

제11장 자격검정 및 보수교육

- 11.1 자격검정은 2년, 및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한다.

제12장 대회 출장여비

- 12.1 루트세터의 교통비, 숙식비등의 비용과 수당은 주최 측이 지급한다.

제13장 루트세터의 복장

- 13.1 루트세터는 대회장에서 임무 수행 중,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대산련 또는 주최 측이 지정한 공식 의류를 착용할 의무가 있다.
- 13.2 루트세팅 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가. 작업시 헬멧, 안전벨트 및 보호장구 착용
- 나. 업무 중 세터와 주변인의 안전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고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14장 기타

14.1 대산련은 루트세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4.2 자격검정 최종합격 날로부터 자격이 부여되며 출장이 인정된다.

제15장 발 의

본 규정은 2023년 제정 되었으며 대산련 루트세터는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위의 규정은 대산련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된다.

부 칙(2023.06.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7.0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6.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스포츠·아이스클라이밍 심판 운영 규정

제정. 2023. 06. 22.

개정. 2024. 03. 20.

개정. 2026. 06. 10.

제1장 목 적

1.1 본 규정은 (사)대한산악연맹(이하 ‘대산련’ 이라 한다.) 스포츠클라이밍&아이스클라이밍 심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우수한 심판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 요

2.1 본 규정은 심판 자격과 역할 및 교육에 관련하여 규정한다. 심판의 자격증 부여는 심판 위원회(이하 ‘위원회’ 로 한다.)의 요청에 의해 대산련이 한다.

2.2 심판위원회는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판의 각종 교육 및 대회 중 심판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3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써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경기 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장 선임과 임무

3.1 대산련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심판장은 공정한 방법을 통해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단. 대산련에서 승인한 전국단위 지역대회 및 지역대회는 대회 개최 최소 3주 전 시,도 연맹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산련에서 승인한 지역대회는 대회 개최 최소 3주 전 시,도 연맹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가) 심판장 - 대산련이 승인한 대회에서 심판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 .

- 1) 1급 심판으로 한다.
- 2) 당해년도 심판등록 및 보수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 단. 당해년도 보수교육이 늦어 질 경우 전년도 보수교육을 기준으로 한다.
- 3) 스포츠클라이밍 및 아이스클라이밍 해당 대회에서 심판 경험이 있어야 한다.

3.2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심판은 공정한 방법을 통해 위원회에서 모집한다.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2조 1항, 대산련 심판위원회 규정 제21조 1항)

단, 대산련에서 승인한 지역대회는 최소 2주 전 위원회에서 선임한 심판장이 추천한 심판명단을 위원회에 보낸다. 위원회는 추천명단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대산련이 승인한 전국단위 지역대회 심판은 위원회에서 직접 모집 할 수 있다.

3.3 심판명단 공지는 최소 3일전에 대산련이 한다.

- 단. 대산련 승인 전국단위 지역대회 및 지역대회는 지역연맹 홈페이지 또는 대회 공식 게시판에 최소 3일전에 지역연맹이 공지한다

- 가) 심판 - 대산련에서 승인 또는 운영하는 국내 및 국제대회에서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나) 기타 - 심판등록 및 보수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심판은 대산련에서 승인 또는 운영하는 대회의 심판 배정에서 제외한다.(단 당해연도의 신규 심판은 합격과 동시에 심판 출장이 가능하다)
- 단. 당해년도 보수교육이 늦어 질 경우 전년도 보수교육을 기준으로 한다.
- 단. 신규 심판은 합격과 동시에 당해년도 대회에 심판 출장이 가능하다.

3.4 심판의 등급은 3급, 2급, 1급, 국제심판으로 구분한다. 3급과 2급 및 국제심판 실습(실기)과정에 있는 사람을 심판 교육생으로 칭한다.

- 가) 국제심판
- 나) 국제심판 교육생
- 다) 1급 심판: 심판장 및 종목심판장 업무를 할 수 있다.
- 라) 2급 심판: 대산련 주최/주관 대회 및 대산련 승인 지역대회에서 심판 업무를 할 수 있다.
- 마) 2급 심판 교육생: 대산련이 주최,주관하는 2급 심판 자격취득 과정에서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실기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
 - 1) 2급 심판 교육생은 대산련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서 보조 심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바) 3급 심판: 3급 심판은 시도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3급 심판 자격취득 과정을 합격한 사람.
 - 1) 3급 심판은 소속된 지역의 대산련 승인 지역대회에서만 심판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단. 지역대회는 주최 주관 하는 시도연맹 선수만 출전하는 대회를 말한다.

제4장 의무사항

4.1 심판은 공정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4.2 심판장은 대회에 참가하는 심판명단을 대회 시작일 3일 전까지 대산련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판장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각종 대회에 참가한 결과 보고서를 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대산련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3 대산련 승인 지역대회는 1급(심판장)과 2급 이상(종목별 최소 2명) 심판을 포함해야 한다.

4.4 심판은 대산련에서 승인하지 않는 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할 수 없다.

4.5 4.2항의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심판장은 6개월 동안 심판장 역할 권한이 정지된다.(심판 역할 수행 가능)

4.6 4.4항에 따른 규정 1회 위반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출장이 정지되며, 징계가 확정된 시점에서 최대 1년간 출장 금지, 2회 위반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될 수 있다.

4.7 자격 정지 중에 4.4항 위반시 또는 4.4항에 따른 대회에 심판 참여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4.8 대회 중 심판은 대산련에서 발급한 카드형 심판증을 패용해야 한다.

- 단. 대회 주최측에서 제공한 명찰(ID카드)로 대체 할 수 있다.

4.9 심판은 매년 갱신되는 경기규정을 숙지 해야한다.

4.10 심판은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지정된 공식 의류를 착용한다.

4.11 심판은 대회 중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며 심판장은 경기 시작 전 심판이 부상 혹은 질병 등 어떤 이유로든 판정을 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심판을 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4.12 심판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대회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

나) 대회 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

- 단. 대회 직후 오심 및 판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차 후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다.

4.13 심판은 대회 중 다른 심판의 판정에 간섭할 수 없다.

- 단. 담당심판 및 심판장(종목심판장)의 요청에 의한 도움은 가능하다.

4.14 대회 중 각 루트(볼더) 심판석에는 조건에 알맞은 심판만 착석 할 수 있다.

가) 담당심판과 심판장 및 종목심판장

나) 담당루트에 필요한 운영(촬영) 및 루트세터, 전산(심판)

다) 대기심판(판정심판 부재 시 대체 및 보조)

4.15 심판은 대회 중 심판장(종목심판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가) 심판장(종목심판장)의 지시에 불이행시 심판장은 즉시 심판배정에 제외 할 수 있다.

나) 심판배정에 제외된 심판은 제외된 대회 출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5장 자격부여 및 승급/지원자격

5.1 국제심판 지원자격

가) 국내 1급, 2급 심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로 영문 규정의 이해 및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 국제연맹의 추천기준을 충족하고,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2 1급 심판 승급

가) 2급 심판 자격 부여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나) 대산련 승인 대회 30회 이상 출장하고 그 중에 대산련 주최, 주관하는 대회 10회 이상 심판으로 출장해야 한다.

다)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심판 출장 경험이 있어야 한다.

라) 심판 이력에 대한 평가가 우수해야 하며, 승급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단. 승급시험은 위원회에서 출제하고, 해당년도의 상황에 맞게 출제되어야 한다.

마) 심판 심사위원회에서 위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하여 승급 된다.

5.3 2급 심판

가) 2급 심판 자격취득 과정은 대산련 가맹단체 3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만 20세 이상 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산련에서 실시하는 2급 심판 자

격취득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80% 이상을 득해야 2급 심판 교육생 자격을 부여한다.
(단 24년도는 3급 심판자만 응시가능)

- 1)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3년 이상인 자.(시험 응시년도 미포함)
 - 2) 대산련에서 운영(코리아컵 시리즈 대회 포함) 하는 대회에 10회 이상 선수로 참가한 자.
- 나) 2급 심판 교육생 실기 평가
- 1) 실기평가는 스포츠&아이스 전 과정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한 후에 심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2) 최초 실기교육을 포함한 2년의 실기평가과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2년 초과시 2급 심판 교육생 자격이 상실된다.
- 다) 2급 심판 교육생 실기 평가 점수 부여 방법

총점	확보	장비 사용	규정 숙지	규정 적용	실기 1	실기 2	준비 상태	태도	순발력	임의평가
100	5	5	15	15	15	15	10	10	10	±5

- 라) 심판 심사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연수부장,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마) 심판 심사 위원회 개최 시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바) 자격은 대산련에서 공인하며 대산련에서 발급한다. 심판 관리는 위원회에서 한다.
- 사) 심판 교육 책임자는 심판 교육생들의 실기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대산련에 보고한다.

5.4 3급 심판

- 가) 시도연맹 가맹단체 2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만20세 이상 남녀로 시,도연맹에서 주최하는 3급 심판 강습회 교육 과정을 수료 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3급 심판 자격을 부여한다.
- 나) 3급 심판 평가
- 1) 이론 70점 이상 + 실기 70점 이상이며 둘 중 하나라도 70점 미만시 불합격된다.
 - 2) 실기평가는 경기벽에서 현장 평가 또는 실내에서 영상으로 대체하여 평가한다.
- 다) 3급 심판 교육 책임자는 시,도에서 지정한
- 주장사 (1급 심판 자격소지자) 1명 이상과
 - 보조강사(2급이상의 심판자격 소지자) 1명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 라) 심판 교육 책임자는 심판 교육생들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대산련에 보고한다.
- 마) 자격은 대산련에서 공인하며 당해년도에 대산련에서 발급한다. 심판 관리는 시도연맹에서 한다.

제6장 자격의 유지

- 6.1 심판은 매년 대한체육회 심판 등록해야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6.2 심판은 대산련에서 년 1회 열리는 심판 보수교육에 2년 중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하고, 대산련에서 승인 또는 운영하는 대회에 2년 중 1회 이상 출장하여야 심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6.3 위 6.1 6.2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심판은 충족이 될 때까지 자격이 정지 된다.
- 6.4 자격이 정지된 심판은 심판 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이 복원된다.
- 6.5 심판이 직무 수행 중 부적합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 후 스포츠공정 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징계(박탈 또는 정지)를 받을 수 있다.
- 6.6 국제심판은 국내 심판규정에 따라 보수 교육에 참가 하여야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의 심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 6.7 대산련 회원 탈퇴 시 심판 자격이 정지된다.(6개월 이내 대산련 회원 자격 회복 시 정지된 심판 자격은 바로 회복된다. 단 6개월 이상 대산련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회원 자격 회복 시 신규 과정을 통해 심판 자격을 복원 할 수 있다.)
- 6.8 자격 정지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제7장 출장 인정범위

- 7.1 대산련이 주최 또는 승인한 각 시도 연맹 주최의 공식 대회의 모든 대회 출장을 자격 유지를 위한 출장으로 인정한다.
- 7.2 대회에 심판으로 신청한 자만 출장으로 인정된다.
- 7.3 위 모든 출장의 승인은 대회 종결 후 심판장 출장 보고서에 준하여 인정되며 보고서가 없는 대회는 출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7.4 심판장이 없는 대회는 출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심판장이 질병, 재해 등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심판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상벌

8.1 상벌에 대한 시행령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정하여 대산련에 보고하고 위원회 운영에 준용한다.

8.2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상벌을 결정할 상황이 발생할 때 상벌 심의 소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8.3 상벌 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심판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결정된다.

- 1)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오심을 할 경우
- 2) 경기중 대산련, 심판진, 선수단 등에 언행으로 인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킬 경우
- 3) 심판으로서 기본적인 품위유지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때
-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대외적으로 명예를 실추할 경우
- 5) 제4장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6) 기타

8.4 상벌 심의 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의결할수 있고 결과는 대산련과 당사자에게 공지한다.

- 1) 권고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관련된 조직이나 인원에 파급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차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권고한다
- 2) 스포츠 공정위 회부 :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포츠 공정위에 징계 회부한다

8.5 매년 심판 평가 및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연맹 또는 체육회 등에 표창이 상신되며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제9장 강습회 개최

9.1 기존 심판 보수교육 - 매년 실시

9.2 2급 심판 자격 취득 과정 - 중앙 연맹에서 2년마다 1회 실시(짝수년도)

9.3 3급 심판 자격 취득 과정 - 시,도연맹에서 매년 실시

가) 개최

- 1) 시도연맹에서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 2) 지역간의 합의로 통합 개최 및 교육이 가능하다.

나) 감독관 파견

- 1) 강습회에서 교육품질 안정화 및 교육 지원을 위해 대산련 공인 1급 심판으로 위원회에서 파견한다.
- 2) 파견된 감독관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파견 비용은 시도연맹에서 부담한다.

9.4 3급 심판 강사 자격

- 가) 대산련 공인 1급, 2급 심판 중 주최하는 시도에서 지정한 자
- 나) 주장사: 대산련 공인 1급 심판 자격 소지자
- 다) 보조강사: 대산련 공인 2급 이상 심판 자격 소지자

제10장 대회 참가비용

10.1 심판의 교통비, 숙식비, 수당 등의 대회 참가비용은 대회 주최 측이 지급한다.

10.2 심판의 대회 참가비용은 위원회에 미리 제시하고 부적절한 비용을 제시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판 파견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장 발 의

본 규정은 2023년 제정 되었으며 대산련 스포츠·아이스클라이밍 심판은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단. 6.1항과 6.2항은 매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심판모집일이 12월일 경우 모집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부 칙(2023.06.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6.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체육인 인권보호 규정

가. 제정. 2024. 03. 20

나. 개정. 2026. 06. 10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체육인 인권침해 행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단체”는 다음과 같다.
 - 가. (사)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 나. 연맹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이하 “연맹 관계단체”라 한다)
3. “체육인”은 다음과 같다.
 - 가. 연맹 관계단체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이하 “경기인”) 및 동호인 등
 - 나.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임직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체육단체
2. 체육인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수립 및 정보공개) <삭제 2026.06.10.>

제6조(스포츠인권의 날) ① 연맹은 체육인 인권의식 고취, 인권존중 및 인권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인권의 날로 지정한다.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인권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인권 중심 환경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에 노력한다.

제2장 체육인 인권침해 대응

제7조(체육인 인권침해 행위의 금지) ① 체육인은 다른 체육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체육단체는 체육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8.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10. 피해자, 신고자에게 협박, 회유 등 2차 가해를 하는 행위
11.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

제8조(인권침해 피해의 신고) ① 체육인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체육인이 인권침해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은폐하거나 신고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체육단체는 피해자 및 신고자가 협박, 회유 등 2차 가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치요구가 있을 시 피신고자의 직위해제(직원), 직무정지(임원), 물리적 공간 분리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치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물리적 공간 분리를 요청하였을 시 분리조치 등을 즉시 이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 인권침해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제1호에서 제6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 ④ 체육단체는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피해자·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3. 그밖에 신고와 관련된 비밀
- ⑤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체육단체 및 체육인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치 및 징계)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제조치나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발방지) ①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체육단체는 과거 인권침해사례 및 대응결과 등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연맹 관계단체에 인권침해 재발방지 계획 및 이행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인 인권 존중 기반 조성

제12조(인권친화적 훈련환경 조성) ① 체육단체는 정기적으로 소속 경기인의 훈련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실시, 상담일지 작성 등 훈련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체육인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람 또는 체육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연맹의 개선요구, 시정조치 요구,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연맹 관계단체에 대해 예산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3조(훈련지침) ① 체육단체는 소속 경기인의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지침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장은 훈련참여자의 휴식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며,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훈련 환경을 조성한다.

2. 단체장은 합숙훈련 진행 시 훈련 참여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② 훈련 참여자는 제1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소속 단체장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대회운영지침) ① 체육단체는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회운영 지침에 다음의 내용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단체장은 대회 기간 중 참여자의 휴식시간을 지정하여 휴식권을 보장한다.
2. 단체장은 19세 이하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 운영 시 주중 대회를 지양하며, 주말 대회 확대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3. 단체장은 인권교육을 통해 소속 체육인에게 인권침해 방지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 ② 대회 참여 선수는 제1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장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체육단체는 전국단위 대회 개최 시 대회 참여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체육인 인권교육)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대상은 매년 스포츠윤리센터가 제공하는 체육인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소속된 체육인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체육인인권위원회

제16조(위원회 설치) 연맹은 체육인 인권보호에 관한 자문을 위해 체육인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 기능) [<삭제 2026.06.10.>](#)

제18조(위원회 구성) [<삭제 2026.06.10.>](#)

제19조(위원회 운영 등) [<삭제 2026.06.10.>](#)

부 칙(2024. 03.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6.1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사무처 규정

가. 제정	1986. 12
나. 개정	1995. 3. 17
다. 개정	1999. 12. 27
라. 개정	2010. 11. 27
마. 개정	2013. 3. 30
바. 개정	2013. 12. 27
사. 개정	2014. 8. 29
아. 개정	2014. 12. 23
자. 개정	2016. 12. 22
차. 개정	2017. 03. 17
<u>카. 개정</u>	<u>2026. 06. 10</u>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맹 정관 제54조에 의거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장 채용 및 승진

제2조(적용) 직원의 채용, 보직, 승진, 승급 및 면직에 관한 인사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공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채용절차) 직원의 채용 고시는 회장이 관장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구비서류) ① 직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서 (본 연맹 소정양식)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6. 경력증명서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8. 기타 연맹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②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및 경력, 병력, 신원관계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제7조(보직) 연맹의 필요에 따라 각자의 직급과 기능,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제8조(승진) 직원의 승진 임용은 회장이 한다.

제9조(승진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자,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제외)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 전책: 6개월
 - 나. 감봉: 12개월
 - 다. 정직: 18개월
 3. 징계처분(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 전책: 12개월
 - 나. 감봉: 18개월
 - 다. 정직: 24개월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제한 기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① 직원의 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
 3.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제3 장 직 제

제11조(직능분류) ① 직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일반직
 2. 전문직
 3. 일급직
- ② 전문직은 연맹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③ 일급직은 필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 제12조(기구)** ① 필요에 따라 사무처에 팀, 과를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사무 형편상 필요에 따라 사무처 기구를 신설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정원) 사무처의 정원은 회장이 정한다.

제14조(임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제4장 복 무

제15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복무자세) ①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품위유지)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한다.

②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간외 및 야간근무) ① 사무처장은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속 직원에게 시간외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중 시간외근무시간은 특정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1개월에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휴일 및 당직 근무(출장 포함)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휴가로 수당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근태) 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는 지각으로 하며, 오후 1시 이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공제한다.

제22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정부에서 정하는 휴일

② 제1항제1호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휴일근무) ① 사무처장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휴일의 경우에도 소속직원에게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 연봉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제24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차휴가
2. 공가
3. 병가
4. 특별휴가
5. 보상휴가
6. 하계휴가

② 휴가 시 소정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제25조(연차 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

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가일수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가일수 중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직원 연봉에 의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⑤ 연차휴가 기간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무단결근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한다. 단, 공무상 병가 및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의 연가일수의 가산은 당해 직원의 최초 임용일이 당해연도 1월 3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연도부터, 1월 4일이후인 경우에는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 연차일수의 계산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른다.

⑧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2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정직, 직위해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②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1. 병역검사, 근무소집, 연습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동원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출석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6. 연맹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8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특별휴가) ① 직원이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와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임공임실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③ 여성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점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5조의 연차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 또는 장애인인 자녀(이하 “자녀”라 한다)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자녀돌봄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 상담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⑪ 근로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1년 중 최대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다.

⑫ 회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 5일

2.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 7일

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1(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회장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

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회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에게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⑤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0조(보상휴가) ① 초과 근무수당 지급대상자의 주중 초과 근무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되 8시간마다 1.5일의 보상휴가로 수당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출장 또는 업무로 인해 공휴일 및 휴무일 근무를 했을 시 제1항과 별도로 이를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한다.

③ 보상휴가는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248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3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3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 이 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 (출장명령) 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출장자의 의무) 출장 직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목적지 외에 여행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출장복명) ① 출장 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출장 명령자에게 복명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복명서(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 할 수 있다.

② 보고서 등은 관련부서 및 자료실, 유관기관 등에 송부하여 동일 목적사업에 활용케 할 수 있다.

제37조(대외활동) ① 직원은 연맹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외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할 수 있다.

- 1. 연맹 직원으로서 각종 자문에 응하는 행위
- 2. 연맹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활동하는 행위
- 3. 각종 교육기관 등에 출·수강하거나, 방송에 출연하는 행위

제38조(출·수강 제한) ① 제37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출·수강하는 자는 근무시간 중 주1일(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출강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한한다. 단, 수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확인서 제출) 출·수강자는 개강 후 15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복무담당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 장 급 여

제40조(급여구분) 연맹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연봉
- 2. 각종 수당
 - 가. 업무추진비
 - 나. 기타수당(성과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제41조(급여계산) ① 급여는 임명, 전보, 승진,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급여의 지불기간 계산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으로 계산한다.

③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해직될 때에는 그 월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42조(지급일) ①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퇴사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4일 이내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연봉) 직원의 연봉 및 지급 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제44조(업무추진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기타수당) 직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기타수당(성과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봉외 수당

제46조(초과근무수당)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일 초과근무는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 지급기준 = 임금×1.5/209×근무수당

제47조(연차수당) ① 직원에 대하여는 복무규정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② 연차수당은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 통상임금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통상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연차수당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통상임금 × 1/209 × 연차보상일수 × 8시간

○ 연차보상일수 = 연차 미 사용일수 × [12월-제외기간(월)]/12월

③ 제 2항의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다만, 출장,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가, 공무상 병가 기간은 연차 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 기간
2.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 기간
3. 연간 통상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4. 휴직(공무상 질병휴가 제외)

④ 제2항의 제외기간의 계산은 제3항의 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연차 보상일수 계산 시는 절상한다.

⑤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 장 상 별

제48조(표창)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과 업무 개선을 창안하여 대외적으로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
3. 이사회 결의에 따라 표창키로 된 자

②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한 때에는 표창 종류별로 각각 표창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연맹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연맹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품행, 근무성적, 연맹에 기여한 공적, 개선의 정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집단행동으로 연맹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경우와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부패행위와 관련된 징계처분결과는 부패 관행 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5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을 말한다.

제51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③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제9조의 규정이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제9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단축(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최대 승진임용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이 규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을 그 처분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징계처분 또는 직위 해제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정직처분 기간 중 보수는 연봉월액 100분의 30과 기타수당의 3분의 1을 감하고 지급한다. 단, 연차수당은 예외로 한다
2. 감봉처분 기간 중 보수는 1개월(회)당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고, 감봉 기간이 2개월(회) 이상일 경우에도 총감봉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직위해제된 자의 보수는 연봉월액 100분의 10을 감하고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 100분의 30을 감하고 지급한다.
4. 제3호의 기간 중 기타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연차수당은 예외로 한다. 다만, 월중에 직위 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향응수수 및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7 장 퇴 직

제53조(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이다.

② 직원이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55조(퇴직금)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56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퇴직금 지급액 = 1개월분 평균 임금 × 근속일수/365

1.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재직기간 동안 1회로 한정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직원에 대하여는 중간 정산 기준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퇴직금 중간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정, 비리, 사고, 법령 및 제 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처리가 진행 중인 자
2.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률 및 평균임금 등 퇴직금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퇴직적립금 조성) ① 퇴직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연맹 및 체육회에서 기여하는 퇴직적립금의 원금과 이자로서 조성하며 이를 별도 계정으로 한다.

② 퇴직금은 매 회계연도 각 계정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며 계상금액은 체육회 정원에 의한 각 계정별 보수 총 예산의 1개월분의 평균 보수로 한다.

제58조(지급액의 계산) ① 퇴직금은 근속년수에 1개월분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9조(근속년수 계산) ① 근속년수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

②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속일수/365로 계산한다.

③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60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 장 여 비

제61조(여비) 연맹의 임원 및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9 장 보 칙

제6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7일 본 연맹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장 직제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부 칙 (2010.11.27.)

이 규정은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3.30.)

이 규정은 2013년 3월 30일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7.)

이 규정은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8.29.)

이 규정은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3.)

이 규정은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2.)

이 규정은 이사회 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7.)

이 규정은 이사회 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6.10.)

이 규정은 이사회 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	<u>20</u>
	(한번의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u>25</u>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3</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u>3</u>

※ 경조사별 휴가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별표 2]

경조사비

<u>구 분</u>	<u>대 상</u>	<u>금 액</u>
<u>축의금</u>	<u>본인 결혼</u>	<u>500,000</u>
	<u>자녀 결혼</u>	<u>300,000</u>
	<u>자녀 출산</u>	<u>300,000</u>
<u>조의금</u>	<u>본인의 부모</u>	<u>500,000</u>
	<u>배우자의 부모</u>	<u>300,000</u>
	<u>배우자 및 자녀</u>	<u>500,000</u>
	<u>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u>	<u>300,000</u>

재무·회계 및 계약규정

가. 제정	2010. 11. 27
나. 개정	2012. 8. 31
다. 개정	2012. 9. 1
라. 개정	2013. 3. 30
마. 전면개정	2016.12.22
바. 개정	2017. 03. 17
사. 개정	<u>2026. 06. 10</u>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칭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① 연맹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맹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2. 모든 회계정보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증빙으로 하고 전표에 의한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3. 회계처리기준과 절차는 매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4. 회계처리관정에서 둘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는 체육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연맹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

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출납기한) ① 연맹의 출납은 회계년도 종료와 함께 폐쇄한다.

② 매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년도 종료 후 1월안에 완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국가재정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의 구분) ① 연맹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연맹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기금을 보유하고 운영 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 이사회 의결로써 설치한다.

제7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연맹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전자문서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8조(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9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지침) ① 예산은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3. 자체예산 편성기준

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연맹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연맹의 장이 편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이사회 관계 회의록의 사본

제13조(준예산) ①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연맹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맹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연맹의 유지 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안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추가경정예산) 연맹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예비비) 연맹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연맹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0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연맹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예산에 이월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 연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비는 그 총액과 연간부담액을 정하여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 연도에 걸쳐 지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속비의 지출년한은 당해 회계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연맹의 장은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예산 중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액은 당해 계속비사업 완성년도까지 제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연맹의 장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손익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21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2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연맹의 장은 연맹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연맹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연맹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연맹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연맹의 장이 임면한다.

제24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연맹의 규모와 실정에 따라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절 수입

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당해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제27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28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지출의 특례) ①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과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공거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②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과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 계약

제31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맹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재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대상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계약의 방법) 연맹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수의계약 대상 등) ① 연맹의 장은 제32조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시설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일반 공사
 2.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0백만원 이하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계약담당자) ① 계약담당자는 연맹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 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제35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을,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37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연맹은 공사·제조 또는 물품구입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직접구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2. 품질 및 신선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농축수산물 및 제조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39조(다른 법령의 준용) 연맹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물품

제40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연맹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② 연맹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연맹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2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43조(재물조사) 연맹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불용품의 처리) ① 연맹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해당회계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5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서식 등

제45조(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

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6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및 그 부속서류
3. 세입·세출에 대한 장부
4. 예산결산서
5.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6.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제4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① 연맹의 장은 제46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 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기타 서식) 연맹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연맹의 회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직원은 회계 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연맹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보칙

제50조(채무보증 금지) 연맹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51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연맹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2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5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연맹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0.11.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9.0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3.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6.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생활체육 심판규정

제정. 2026. 06. 10.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생활체육 경기대회의 심판자격과 그에 대한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각종 생활체육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요

1.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대산련’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있어 심판의 자격과 책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대산련 생활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는 이 규정에 따라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운영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2. 본 규정은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3. 생활체육대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공인대회: 대산련이 주최하는 생활체육 대회기준을 갖추어 대산련 회장으로부터 대회 전년도에 승인을 받아 각 시·도산악연맹의 소속회원을 참가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체육대회
 - 나. 지방대회: 각 시·도산악연맹이 자체 사정과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는 대회로 대산련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등산대회

제3조 책임심판의 임명과 임무

1. 심판장은 해당대회의 부문별 책임심판을 임명한다.
2. 책임심판은 1급 심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책임심판의 자격
 - 가. 심판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 나. 당해 연도 보수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 다. 공인대회에 4회 이상 심판으로 출장해야 한다.(단, 시·도대회는 8회 이상 참가)
 - 라. 생활체육대회 경기 전 종목에서 심판 경험이 있어야 한다.
 - 마. 심판이력에 대한 평가가 우수해야 한다.
4. 심판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각종대회(대산련 승인을 득하지 않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포함)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단, 공인을 받지 않은 대회에 심판출장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심판 보수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심판은 공인대회의 심판배정에서 제외한다.

제4조 자격의 종류

1. 1, 2급 심판의 자격부여는 대산련에서 한다.
2. 심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 가. 심판 1급 : 공인대회 일반심판 및 책임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나. 심판 2급 : 공인대회에서 심판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시·도 대회는 책임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다. 심판 3급 : 1) 각 시·도산악연맹 생활체육위원장의 주관으로 위원장이 승인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하고 육성할 수 있다.
 2) 심판자격 교육에는 대산련 생활체육 1급 심판이 참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심판자격 부여는 위원장이 승인하고 대산련 회장 명의로 발급한다.
 4) 시·도 자체 생활체육대회의 심판 및 심판보조나 진행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자격부여

심판의 자격부여는 다음과 같다.

1. 2급 심판자격

가. 각 시·도산악연맹의 회원으로 3년이상 활동한자로 각 시·도산악연맹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산련이 주최하는 심판강습회 전 과정 수강 후 필기시험 및 실기평가에 응시하여 80점 이상을 득한 자로 실습평가 후 심판위원장의 서면보고로 자격을 부여한다.

나. 점수의 부여는 다음과 같다.

- 1) 필기평가: 80점
- 2) 실기평가: 80점
- 실기평가

운영능력	장비점검	응급처치	산악안전
30점	30점	20점	20점

2. 1급 심판자격

가. 2급 심판자격을 소지하고 공인대회 심판으로 6회 이상 참가한 자

나. 심판평가가 우수한 자

3. 심판자격 부여 관련 심사위원회 구성

가. 2급 심판자격: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나. 1급 심판자격: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 심판위원회 강사 및 심판자격부여 평가자는 위원장이 선임하며, 모든 평가결과는 심판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를 대산련에 보고한다.

제6조 심판자격의 유지 및 상벌

1. 모든 심판은 매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다음의 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단, 특정한 사유 발생시 1년간 유예한다. :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제출 시)

가. 심판강습회(보수교육)에 참가 하여야 한다.

나. 공인대회 심판으로 1년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심판이 직무수행 중 심판으로서 부적절한(음주, 폭행 포함) 행위를 하였을 때는 심판장이 현장에서 퇴장 등의 선 조치 후 상별 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자격박탈 또는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상별 심의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4. 대산련 회원 탈퇴 시 심판 자격이 정지된다.(6개월 이내 대산련 회원 자격 회복 시 정지된 심판 자격은 바로 회복된다. 단 6개월 이상 대산련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회원 자격 회복 시 신규 과정을 통해 심판 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5. 자격 정지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6. 상별 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심판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결정된다.
 - 1)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심을 할 경우
 - 2) 경기중 대산련, 심판진, 선수단 등에 언행으로 인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킬 경우
 - 3) 심판으로서 기본적인 품위유지를 지속적 으로 하지 않을 때
 -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대외적으로 명예를 실추할 경우
 - 5) 기타
7. 상별 심의 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의결할 수 있고 결과는 대산련과 당사자에게 공지한다.
 - 1) 권고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관련된 조직이나 인원에 파급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차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권고한다.
 - 2) 스포츠공정위원회 회부 :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8. 매년 심판 평가 및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연맹 또는 체육회 등에 표창이 상신되며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제7조 책임과 의무

1. 대회 중 심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심판장

- 1) 대회장(경기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내에서 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대회운영 및 제반 활동과 결정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 2) 관련대회의 심판 회의를 주재하고 관리의 책임을 진다.
- 3) 심판장은 대회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대산련 및 심판위원회에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4) 책임심판위원과 심판위원의 판정이 상이할 때는 책임심판위원의 판정에 준하며, 심판장이 최종 판정한다.

나. 책임심판

- 1) 제3조 2항에 명시한 자로 구성한다.
- 2) 대회의 각 부문별 세부종목을 관장 주관한다.
- 3) 2차 판정의 모든 사항을 맡아 심판장을 보좌한다.

다. 심판위원

- 1) 2급 심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구성하며 책임심판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 2) 해당 대회 제반 경기규정과 규칙을 숙지해야 한다.

2. 심판의 의무

가. 모든 심판은 규정에 따라 대회전, 대회 중, 대회 후에도 공정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심판명단 공지는 최소 대회 3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제8조 강습회 개최

1. 기존심판 보수교육 : 매년 실시
2. 2급심판 신규 자격취득과정: 매년 실시
3. 3급심판 신규 자격취득과정: 대산련의 승인을 받아 시·도연맹에서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 가. 개최
 - 1) 시·도연맹에서 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최한다.
 - 2) 지역간의 합의로 통합 개최 및 교육이 가능하다.
4. 3급 심판 강사 자격
 - 가) 대산련 공인 1급, 2급 심판으로 위원회에서 파견한 자
 - 나) 주장사: 대산련 공인 1급 심판 자격 소지자
 - 다) 보조강사: 대산련 공인 2급 이상 심판 자격 소지자

제9조 대회 심판비용

1. 심판경비(심판의 교통비, 숙박비, 수당 등)는 대회가 끝난 직후 대회 주최측에서 지급한다. (단, 대산련에서 주최한 생활체육대회의 심판비용은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10조 심판의 복장

심판은 대회장에서 임무 수행중 대회가 종료 될 때까지 대산련이 지정한 공식 심판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제11조 심판 제재

심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대산련 및 생활체육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심판규정의 상기 사항 이외에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은 대산련이 정한 규정에 준한다.

부 칙(2026.06.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생활체육 대회규정

제정. 2026. 06. 10.

제1조 목적

본 대회는 생활체육 등산 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 지역 간 화합 및 등산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대회는 대한체육회 국내종합경기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및 정부명칭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등산대회), 전국규모 국내대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대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각 시도 산악연맹이 주관한다.

제4조 참가자격

본 대회 참가는 시도 산악연맹에 가입된 등산단체(클럽)에 속한 동호인으로 대회요강에 따라 참가신청을 필한 선수에 한한다.

가. 연령 기준 (*연령은 하향하여 출전 가능, *당해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나이(연나이))

부		기준	비고
일반부	50세이하부	50세이하	남자/여자
	60세이하부	51~60세	남자/여자
	70세이하부	61~70세	남자/여자/혼성
	71세이상부	71세이상	남자/여자/혼성

제5조 행동

선수는 경기규정 준수 및 대회본부 및 심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포스트 통과 시 코스 통과 표시를 포스트 심판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제6조 표시

참가 선수는 대회본부에서 지급한 번호표(배번)를 지정 위치에 부착하고, 등산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배낭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조 경기방법

참가선수는 각 포스트 통과 시 심판의 평가, 질문 및 행동, 장비, 복장, 대회장 질서 환경, 단합 질서, 이론평가 등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규정 시간 내 완주한 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붙임1 참조)

이론평가는 100문항을 선 배포하고 평가는 전원평가로 대회장에서 실시하고 개인장비, 공동장비 역시 대회장에서 전원 평가한다.

제8조 채점방법

팀 순위는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제한 시간 내에 완주한 팀으로 포스트(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100점 만점)하여 팀 순위를 결정한다.

1. 팀 순위는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제한 시간 내에 완주한 팀으로 포스트(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팀 순위를 결정한다.
2. 종합시상 시 총점이 같은 경우 1위 입상수가 많은 시도를 상위로 하고, 1위 입상수도 같은 경우 2위 입상수가 많은 시도를 상위로 하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3. 부문별 우승은 점수가 같은 경우 나이를 총합산하여 많은 팀, 최고령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9조 확인사항

각 포스트 통과 시 심사위원의 확인과 최종 도착지점의 시간을 심사위원장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한시간 내 완주확인)

제10조 긴급사항

경기 중 참가선수의 부상은 대회본부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부상 및 위험요소를 발견 즉시 인접한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에게 통보하며, 본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산행을 금한다.

제11조 실격사항

다음 사항이 발견되거나 인정 될 때에는 즉시 실격처리 한다.

1. 지정 포스트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
2. 대회본부 및 심판(평가위원) 지시 불이행
3.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의 지시 불이행
4. 지정 번호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5. 고의로 다른 선수에게 3회 이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때
6. 팀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7. 제한(지정) 시간을 초과하여 끝인 하였을 때
8. 인화물질 반입(흡연, 취사), 음주행위 및 자연훼손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 상벌규정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시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등산대회 및 각종 행사에 참가를 제한 및 금지한다.(개인 및 시·도 단체)

1. 음주 및 대회 분위기를 저해한 자
(과음, 폭언, 기물파괴, 난동, 단체행동, 기타)

제13조 대회특별규정

본 대회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본부에서 추가로 결정하여 적용토록 한다.

부 칙(2026.06.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전국생활체육 등산대회 평가표

○ 평가내역

NO.	평가항목	평가규정	점수
1	팀 구성 (참가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및 연령기준에 따른 8명 1팀(50세 · 60세이하부), 6명 1팀(70세이하부, 71세이상부) 충족필수 교체선수 미비 등으로 경기 당일 인원 미 충족시 번외 참가(시상 제외)만 가능 	10
2	이론평가	예시 문제 100문항 중 10문제 출제 A, B, C 구분 (전원평가)	20
3	대회장 질서 및 환경	팀 접수 시부터 심판의 통제 시 순응 여부 및 부스 정리	10
4	산행 시 질서 및 단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및 노약자 보호 대오(열) 선두자 외의 평균 거리 7m 이하 타 선수 및 제삼자의 산행에 방해 여부 	10
5	복장	산행에 필요한 복장, 등산화, 모자, 배낭 등	10
6	공동장비	팀별 공동장비 <붙임2> 참조 (연령별 인솔자 1인 평가)	10
7	개인장비	개인장비<붙임3> 참조 (개회식 전, 전원 평가)	20
8	운영시간	팀별 출발 시간 기준 3시간 이내는 동일 점수 부여	10

※특별 감점 요인(건당-5점)

운영 중 음주, 흡연, 지정된 등산로 이탈(사진 촬영)

○ 장비평가

- 팀별 공동장비

NO	준비물	수량(개)	배 점
1	시·도 연맹기(크기 무관)	1	2
2	나침반	1	2
3	대회지도(지도케이스)	1	2
4	구급키트(상비약 및 응급처치 세트)	1	4
합 계		4	10

○ 개인장비 (등산복장 평가사항 외)

NO	준비물	수량(개)	배 점
1	필기도구	1	2
2	다용도 칼	1	2
3	우 의	1	2
4	신분증(사본인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공인 신분증	1	2
5	헤드램프(예비 건전지포함) ※휴대폰 손전등 불인정	1	2
6	등산 스틱	1SET	2
7	수통(식수 포함, 생수병 불가)	1	2
8	행동식	1	2
9	시계(휴대폰 시계 포함)	1	2
10	예비의류(재킷, 티셔츠, 바지) 및 예비양말	1	2
합 계		10	20

성희롱·성폭력 예방내규

제정 2026. 06. 1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대한산악연맹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대한산악연맹 전구성원(회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적용되며, 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내규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회장의 책무) ①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협회의 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협회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회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6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

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또는 관계기관 등에서 고충상담원의 전문교육 이수기한에 관한 예외를 인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

제8조(예방교육) ①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협회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위기관에게 통보한다.

② 협회의 장과 협회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협회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외부 전문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되는 피신고인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조사 이관) ① 피신고인이 회장 또는 임원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내규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위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위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회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회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어떠한 경우로든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합의 및 중재를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또는 중재에 의한 종결을 원할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 또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를 당하거나 궐위한 때 또는 제척사유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외부 위원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조사 결과
2. 제15조제4항의 심의 결과

제17조(징계) ① 회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회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대책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상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회장은 이 내규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2026.06.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담당부서장

출석 통지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 급	
	④ 주 소				
⑤ 출 석 이 유					
⑥ 출 석 일 시					
⑦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심의)위원회 개최 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000 인(서명 생략)					
000 귀하					

(고충심의위원회 피신고인) 서약서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연락처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p> <p>① 조사위원회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p> <p>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p> <p>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p> <p>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p> <p>※ 조사 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div>	

합 의 서

신 고 인 :

피신고인 :

상 담 원 :

본 합의서는 신고인의 요청에 의한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성희롱 사건의 처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 합의내용 ① 피신고인이 작성한 각서의 이행
② 신고인에 대한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③
④

피신고인 ○○○은(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고인 □□□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사건의 비밀유지 및 추후 본 사건에 대한 다른 방법에서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제정 2026. 06. 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이란 (사)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18조(임원)에서 정하는 임원(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과 직제규정 제4조(직원)에서 정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법 제2조(정의)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정의) 제6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및 시행령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회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임직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연맹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임직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회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회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이 회장인 경우, 부회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임직원은 신고·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⑥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회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

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회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회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연맹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연맹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맹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1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임직원(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회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회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6조(위반행위 신고) ① 임직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연맹 소속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회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

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1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3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회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징계양정 기준) 회장은 소속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회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26.06.10.)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72조제2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감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제2항 위반 /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제20조의2의 특별보호 조치 결정 미이행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참고자료	[] 개인의 [] 법인 [] 단체 [] 임직원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대한산악연맹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 는 직원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 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 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임직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 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작성방법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들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청인	성명	소속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임직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임직원과 관계 <input type="checkbox"/> ②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피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업무 담당 직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한산악연맹회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임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 는 직원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 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 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 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 직 위 (직 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직 임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 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 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대한산악연맹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비용부담자
	[] 골프 [] 여행 [] 사행성 오락	[] 신고인 [] 퇴직 직원 [] 기타()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	--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한산악연맹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전자우편 [] 전화 [] 방문 [] 기타()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input type="checkbox"/>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고위직 임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input type="checkbox"/> 가족 채용 제한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체결 제한 <input type="checkbox"/>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input type="checkbox"/>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